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규모·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MERCOSUR,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보고서 아메리카 편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20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 경제 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2월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기후 대응 조직을 강화하였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하여 36건의 반덤핑 관세와 9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 철강·금속 관련 품목이다.

브라질은 세계 5위 수준의 인구와 영토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2022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

했으며, 2023년 1월 출범한 신정부는 정부 적자 개선, 세제 개혁, 신 산업화, 기후 변화 대응, 공공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을 추구, 최근에는 MERCOSUR-EU 재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WTO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체제 참여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우루과이의 통상환경은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이 특히 그러하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인식하는 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칠레는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보리치 정부가 출범했으나, 2022년 9월 신헌법안 국민투표 부결 이후 친시장적 및 실용적 성향으로 변화해 왔고, 2023년 12월 17일 국민투표 역시 부결되었다. 칠레는 2021년 들어 코로나 19 팬데믹 충격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수출 증가로 11.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금속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총 12건이며, 여러 조치에 대해 규제가 연장되거나 연장이 예상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4위 규모의 경제 및 3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광업, 농축산업 등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광물·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농·목축·수산 분야의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서 벗어나며 각각 10.6%,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1% 초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하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물류, 항공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외환 통제가 전무하고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 다국적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하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이며, 내수시장이 작고 제조업 및 인적자원 역 부족해 외국인투자자의 진출 유인이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투자진흥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 중으로,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23 세계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4개국 중 76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의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허가 및 등록 없이 내·외국인 동일하게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시 별도 요구 조건을 두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페루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동등대우, 외국인재산권 보호, 투자금·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12월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성장률은 10.4%로 반등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국제적인 가격상승에 힘입어 5.2% 성장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IMF와 440억불 규모 구제금융 협상, 파리클럽과 20억불 규모 파리클럽 채무조정협상 등을 타결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2022년말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출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9%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역시 사상 최소치인 200억 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2022년 94.8%, 2023년 10월 기준 142.7%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정 등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12월



아메리카

www.motie.go.kr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과테말라	003
니카라과	046
도미니카공화국	071
멕시코	092
미 국	128
베네수엘라	181
볼리비아	196
브라질	213
에콰도르	242
엘살바도르	267
온두라스	282
우루과이	299
자메이카	329
칠 레	377
캐나다	384
콜롬비아	415
파나마	452
파라과이	508
페 루	531
아르헨티나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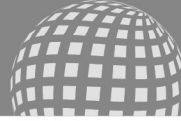
2023 외국의 통상환경



www.motie.go.kr



IV^{Part}



아메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우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멕시코	칠레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나마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 MCCA)¹⁾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²⁾의 중미관세제도(SAC)³⁾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무관세화 수준이 낮다. 영국의 EU탈퇴 이후, 영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중미 6개국간 FTA가 2019년 7월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총 9차례의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여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

1)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으나,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분야 등에서의 이견으로 2017년 3월 가서명에 불참하였다. 한편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2018년 2월 정식 서명을 마친 후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2019년 10월, 코스타리카는 2019년 11월, 엘살바도르는 2020년 1월, 파나마는 2021년 3월 FTA가 발효되어,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모두 FTA가 발효된 상황이다. 과테말라는 한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한-중미 FTA에 가입을 위한 협상 타결을 2023년 9월 5일자로 완료하였고, 연내 정식 서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 세관 전산망 통합 및 통합 세관청사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양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세관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온라인 통관 시스템(FyDUCA) 적용으로 세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관세행정상 기술적 진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엘살바도르 또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간 관세동맹에 정식 편입하였는데, 3국 정상은 2018년 8월 20일 3국 관세동맹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중미 경제통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2019년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양국만 국경 인프라 통합 등 우선적으로 실무 조치가 진행되어 양국의 교역이 7% 성장하였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실무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무조치가 마무리되면 중미 북부 3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역내 인구의 73%(3천2백만명), GDP의 63%(1,260억불)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2019년 5월부터 유럽-중미협력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준수의 일환으로 중미 회원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SIECA 서버를 공동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중미 단일세관신고서 양식(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DUCA)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관세동맹 실무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세관신고서를 사용되던 FyDUCA의 명칭은 DUCA-F로 변경되었다.

DUCA-F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① (수출자) DUCA-F 양식 작성·제출 (수출국 관세청 접속)	② SIECA 서버를 통해 수입국 관세청과 DUCA-F 공유 (관세율·VAT납세액 결정·전송)	③ (수입자) 부과세액 납부 (온라인 납부 가능)	④ (수출자) DUCA-F 인쇄, 통관 시 제출 (QR코드로 통관절차 신속 진행)
--	---	--------------------------------------	--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증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껌(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1년 2월 기준 최신 자료)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3.33% 수준이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년 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되었다.

관세율은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관세율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스페인어)

- <https://www.aduanas.sieca.int/aci> > BUSQUEDA DE ARANCELES 클릭 후, 1번의 INCISO를 선택 하고 2번 박스에 검색을 희망하는 HS

Code를 입력하거나 CODIGO를 클릭해서 하위 분류로 이동 > 중미 대외
공동관세의 경우, 세율이 하나만 안내되며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로 안내됨 > 원어 설명 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관세율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 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 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 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HS코드 8자리로 입력)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율을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가세(12%)

2017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 제17부 운송 장비: 0~20%
-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⁴⁾에 근거, 마킬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⁵⁾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킬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킬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킬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입법인 긴급 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6년 2월말 국회 통과하여 3월말 공식 발효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동 법은 마킬라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지원조건 중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한하여 수출과 내수기업의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WTO 보조금협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최빈개도국(1인당소득 1천 달러 이하)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예외 허용

5)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과테말라는 2014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는 사실상 수입관세나 수입부과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기초해서 산정되므로 수입가격이 훨씬 높은 신차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신차 수입을 억제하고 중고차 수입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 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 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 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이 상업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 ~ 20%로 크게 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⁶⁾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⁷⁾
- 선적 서류⁸⁾
- 포장명세서⁹⁾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¹⁰⁾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¹¹⁾의 경우에는 재수입 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국세청(SAT)¹²⁾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산정된다.

6) Poliza de Importacion

7) Factura Comercial

8)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9) Lista de Empaque

10) Importacion Temporal

11) Reimportacion

12)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궤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토토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궤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 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토토마스항에서 과테말라 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해상운임은 부산-과테말라 시티 기준 \$2,600 (2019년 10월 기준)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금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 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ONE(舊.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2018년 4월 일본의 NYK, MOL, K-LINE 등 3대 해운사 통합법인인 ONE(OCEAN NETWORK EXPRESS)이 본격 출범하면서 아시아와 중미 간 직항로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ONE의 직항노선은 매주 수요일 태평양 연안의 궤찰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정기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다. 과테말라 현지 파트너는 TRANSMAR INTER-NACIONAL社이다.

화물이 계찰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¹³⁾ \$150~210, 내륙운송비용(In-land) \$450~500, 도착지 Local Charge \$75~230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노조나 농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의 시위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항만 봉쇄 등이 빈발하는 반면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이어서 이로 인한 수출입 및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ección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물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 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류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13)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자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차 수입 급증으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고차수입자조합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을 밝히는 등 조만간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마킬라법과 자유무역지대법 적용대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내국물품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 ¹⁴⁾
AM	무기/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위원회 ¹⁵⁾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EM	에너지/ 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 ¹⁶⁾
LE	환경규제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 ¹⁷⁾
MD	폭발물 규제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 ¹⁸⁾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 ¹⁹⁾
PF	화약류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 ²⁰⁾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 (식품부) ²¹⁾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의약품부) ²²⁾

14)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5)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7)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8)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19)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0) Ministerio de Economía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 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터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 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21)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2)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 9)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 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국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2019년 9월 9일 WTO에 철강제품(HTS 7225.91.00, 7225.92.00, 7225.99.00, 관세율 0%)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통보한 바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도금 판재류가 이에 속한다. 사용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쿼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가격 고시제

2014년도에 확정된 ‘육상/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대신하여 내국세인 최초등록세(Impuesto

a la primera Matricula)를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의 5%~ 20%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이 없거나 저가신고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등록세를 부과한다.

수출세

과테말라 정부는 커피수출에 대해 100파운드(45.3592kg)마다 FOB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세는 전국커피협회(ANACAFE)가 징수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²³⁾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²⁴⁾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나 부과사례는 없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 상품 또는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Invoice 가격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의적인 통관행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3)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4)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²⁵⁾이며 표준 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²⁶⁾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²⁷⁾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 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²⁸⁾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25)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6)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7)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8) Certificado de Libre Venta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가계약법²⁹⁾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³⁰⁾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 금액이 9만케찰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케찰에 비해 입찰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³¹⁾ 입찰세부내역,³²⁾ 세부기술내역³³⁾ 및 공사 계획서³⁴⁾(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 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9)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0) Municipalidad

31) Bases de Licitacion

32) Especificaciones Generales

33) Especificaciones Tecnicas

34) Planes de Construccion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³⁵⁾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입찰내용을 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³⁶⁾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의 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 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 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들로 한정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입찰자격의 제한이 어려워 졌으며, 제한적 입찰을 위해서는 차관 도입 승인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35)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36) Junta de Licitacion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³⁷⁾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년 11월 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³⁸⁾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케찰에서 최고 50만케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 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7) Decreto 57

38) Ley de Propiedad Industrial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³⁹⁾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20년 (2020년 4월 29일 발표)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 WTO, WIPO⁴⁰⁾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⁴¹⁾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케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3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4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1)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 협약⁴²⁾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⁴³⁾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제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⁴⁴⁾ 상업상표⁴⁵⁾ 및 서비스상표⁴⁶⁾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42)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3)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4) Marcas Industriales

45) Marcas de Comercio

46) Marcas de Servicios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 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 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

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킬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 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섬유산업 및 콜센터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징수가 1년간 유예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⁴⁷⁾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⁴⁸⁾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⁴⁹⁾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 지역 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했던 상당수의 외국기업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 문제까지 발생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바, 이를 대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4일부터 대서양 부근 산토 토마스항 내에서만 보세구역을 허가하던 기존의 교역자유지역(ZOLIC) 제도를 확대하여

47) Ventanilla Agil Plus

48) Ventanilla Unica Municipal

49)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특별경제발전지대(Zonas de Desarrollo Económicas Especiales Públicas 이하 'ZDEEP')를 제정하였다. ZDEEP은 허가 공단 내 입주 가능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업에게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공단 내 수입 및 상거래 활동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 전력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법부의 판결(Amparo 인용)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과테말라에 대한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초에는 원주민들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Oxec 수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중단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6월말에는 San Rafael 광산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과테말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협약에 따른 원주민들과의 협의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인데, 과테말라 정부와 국회는 원주민협약에 가입한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이행을 위한 국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동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왔다. 문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2018년 9월 3일 과테말라 헌법 재판소(CC)는 판결을 내렸는데, 기존의 운영중지결정은 유지하되 시민단체와 인근지역 원주민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협의 절차 방식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또는 지침 없이 판결을 내려, 에너지광업부(MEM)등 관계기관에서도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사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었던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합의 불발로 인해 조업을 재개하지 못해 매각, 2019년 1월에 캐나다계 회사인 Pan American Silver Corp.에서 동 광산을 인수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견 또는 분쟁 발생 시 사법체계에서의 판결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판결 결과는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해외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201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과테말라의 투자자 보호수준은 전체 137개국 중 131위로 최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진출 제한 분야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2017년 10월 상법 개정(법령 18-2017) 통해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 회사가 과테말라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최소 설립 자본금이 5천케찰에서 200케찰로 낮아졌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과테말라 소재 상업등기소들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문이 아닌 상업등기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 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 또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 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차량절도 2,816건, 인구 10만명당 연간 피살자수 22.1명, 상해자수 24.3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들어서는 5월 누계 기준 피살자수는 21.8명, 상해자수는 22.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나,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피살자수가 61명으로 여전히 높아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경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과테말라의 범죄와 폭력에 따른 사업비용은 수준의 전세계 137개국 중 134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 신뢰수준은 1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인상된 임금 수준, 과테말라 깨찰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케찰항과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서양에 접해있는 산토토마스(SANTO TOMAS)항은 열악한 항만시설, 미흡한 운영 역량 등의 문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요 선사들이 온두라스 코르테스(CORTES)항 등 인근 대체지로의 기항지 변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대달러 환율 하락)되어온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재산성을 악화시켜온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8월 7.27케찰로 최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5월 이후로는 상승세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도 들어 둔화되었다. 최근의 평가절하 원인으로는 가족송금 증가세 둔화,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 추세, 국제유가 인상/구매력 상승에 따른 수입지출 증가, 수출 감소 등이 언급된다. 참고로 환율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외국민 가족 송금은 전년도에는 둔화세를 보이다, 금년에는 미국 내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로 인해 추방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저축보다는 송금을 택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되어 연말까지 전년 대비 13억불 이상 성장, 총 103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0월 현재 중앙은행 발표 기준 환율은 7.75케찰이다.

정부 측면에는 2016년 Morales 정부 출범이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정한 이권청탁 등 부패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성 행정이 만연하여 통관 및 각종 인허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2019년 Morales 정부가 CICIG의 임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관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미 만연화된 책임회피성 행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예컨대 과테말라 경제단체연합회(CACIF)가 실시한 2018년 기업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부패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를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어

일자리 부족(22%), 공공치안(15%), 빈곤(13%) 등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과테말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 이들은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d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200	◦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⁵⁰⁾ : 무한 책임, 연대 책임 ◦ 유한책임사원 ⁵¹⁾ :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 (소유주)	Q 2,000	◦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2017년 10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부터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200케찰로 인하되었다. 더불어 수주일이 걸렸던 설립절차도 이제는 4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었고, 등기 절차도 과거와는 달리 ‘minegocio.gt’라는 전자정부 포털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하다.

50) Comanditados

51) Comanditarios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내국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2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이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S\$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⁵²⁾되며 등록증⁵³⁾을 내준다.

그러나 2017년 10월 상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립공고도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⁵⁴⁾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⁵⁵⁾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52) Inscripcion Definitiva

53) Patente

54)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55) Registro Mercantil

투자 형태별

- 1) 현지법인 :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 2) 지사 :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법인 설립절차와 양식 등은 경제부 소속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가족송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과도한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막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시중의 달러를 매입해 왔다. 2020년 과테말라 외환보유고는 16,33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9월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하였는데, 2017년부터 유지하던 금리를 2020년에는 2%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12~13% 수준이 보통이며, 신용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도 6~7%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많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 거래규정⁵⁶⁾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하여(2011년 1월 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국세청법 및 조세법, 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은행의 금융정보 조회권을 갖게 되었고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은행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은행거래 시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화 20달러 지폐의 수취를 극도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이다.

56)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사업자는 순이익의 25%(중소기업의 경우 5~12%)를 사업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자산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0%,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세는 순이익방식외에 총수입방식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순이익 방식 : 31%(2012년)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매출 총이익률이 4%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단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단결세와 법인세는 상호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과테말라의 조세부담률은 10.2%였고, 2019년 기준 12.5%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 및 자원개발권(금속광물)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조세 회피율은 총GDP대비 4%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길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보호법 시행 시 고용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섬유업체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내수용 물품을 수입한 밀수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면세나 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중인 회사와 개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 최저임금은 6월부터 산업별 임금위원회 및 국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노사 간에 인상안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으로, 보통은 매해 연말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약 3%~5% 내에 인상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경기 침체, 수출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금 동결을 결정하여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무기준) 82.46케찰, 농업/비농업부문은 90.16케찰로 유지되었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시에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는 자유로운 편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 고발 및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점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노동법 제13조는 전체 고용인원 중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과테말라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경영자와 이사 및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양식은 노동부(일반고용과)에서 수령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들은 노동허가서 기한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 무허가 상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많은 수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EU와의 FTA 체결시 약속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2017년 10월까지 처리되지 못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도 경쟁법이 없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등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서 외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페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범죄조직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선불리 진입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업종별 산업현황 및 경쟁실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년 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년 10월 4일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⁵⁷⁾의 외국인국⁵⁸⁾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⁵⁹⁾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⁶⁰⁾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⁶¹⁾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⁶²⁾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민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현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57) Direccion General de Inmigracion

58) Departamento de Extranjeria

59) Residencia Temporal

60) Antecedentes Policiacos

61) Residencia Permanente

62)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수료 지불하고 영수증 제출
-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금품 갈취,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살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 등의 민생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강탈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절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한국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밀수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

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 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한 밀수가 만연하여 정상적인 국내 생산자나 수입자들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밀수로 인한 세수차질 추정액이 국세징수 목표액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밀수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담배, 식용유 등 식품류 및 의약품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니카라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큰 국토면적(130,373km², 한반도 3/5 크기)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경제규모(2022년 GDP 약 156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2022년 2,255달러)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환율·투자제도 자유화 포함)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⁶³⁾(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 및 해외투자 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임업으로 2022년 기준 GDP의 1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소고기, 커피, 콩, 유제품, 설탕, 새우, 땅콩 등이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 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길라(Maquila) 산업(조립가공무역)을 통해서 섬유 제품, 자동차 케이블, 시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4월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사회 불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World Bank 기준 2018년 경제성장률 -3.4%, 2019년 -3.8% 등 경기불황이 이어졌다.

63)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한-중미: 한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 2021.12월 대만과 단교 이후, 2022.7월 이후 대만과의 FTA도 중단

2020년에는 정국 불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쳤으나, 역내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강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경기안정에 도움이 되어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도에는 우호적 경기 상황(주요 수출 품목의 국제시세 상승, 코로나19 상황 안정 등) 및 광업, 건설업, 호텔·요식업, 제조업, 어업·양식업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본국 송금 급증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미·카리브 지역 경찰위원회(Comisión de Jefes y Directores de Policía de Centroamérica)의 각국 살인 발생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으로 중미·카리브지역에서 살인율이 낮은 국가중 하나다. 2018년 4월 발발한 반정부 소요사태 이후 치안이 한동안 악화되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지자 생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치안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니카라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높은 대외원조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과중한 에너지 비용(중미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의 문제들을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 자원 뿐만 아니라 자국 내 민간 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주요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 등 전반 과정에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2016.10월 민관협력 법안(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민관협력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2021년에 걸쳐 약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년 국가발전투자 계획(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2017~2021년)을 마련, 국내외로부터 투자 증대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Ortega 정부가 2018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폭력 진압하고 야권 인사에 대해 탄압을 지속하자, 국제사회는 니카라과 정부에 인권탄압 중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니카라과에 대한 원조 및 투자를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 또한 미국, EU 등은 인권탄압, 민주주의 및 법치 훼손, 부패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 고위인사와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0월~11월 두 차례 니카라과를 강타한 허리케인(Eta, Iota) 피해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러 국가들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니카라과 교역은 1980년대 이후 무역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2019.10월 한-중미 FTA(니카라과 기준)가 발효⁶⁴⁾된 이후 니카라과로부터 농산물(주로 설탕) 수입이 급증하며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면 2019년 수출 70.23백만불, 수입 20.18백만불에서, 2020년 수출 78.9백만불, 수입 70.71백만불, 2021년 수출 79.15백만불, 수입 50.49백만불, 2022년 수출 79.14백만불, 수입 78.5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기기, 편직물 등이며, 니카라과로부터는 설탕, 커피, 고철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수출입은행 통계 2022년말 누계 기준 총 93백만불로 집계되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Zona Franca)에는 30여개의 우리나라 섬유·봉제업체가 진출하여 현지인 3만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니카라과 섬유 수출의 절반 가량)중이며,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년 6월 발효)이 체결

64) 2015년 6월 18일 니카라과를 포함한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고, 같은 해 9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에 제7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다. 2018년 9월 12일 니카라과 국회가 한-중미 FTA를 비준하였고,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되어 있고, 2014년 4월에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9. 10월 한-중미 FTA(니카라과 기준)가 발효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년)에 따라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 가량이 무관세로,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터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펫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달러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packing list
- ② original invoice
-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 authorities
-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 보관이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입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의 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의 세관절차(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지투자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으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⁶⁵⁾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많지 않다. 다만 농산물, 섬유·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⁶⁶⁾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가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하며,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66) 예를 들어 육상운송법(2005/524)에 따라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종교단체 등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약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보건부(의약품실)에 제출해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년)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축산물안전검역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 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해서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물 통관을 위한 검역 및 검사는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도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보통신(ICT) 제품, 무선통신 제품, 케이블TV 장비, 전화교환 장비, 상업용 방송장비 등 의 통관 및 수입허가증은 우정통신청에서 발급한다.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발급하며, 소형 화기·탄약·폭발물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시행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

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이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관련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촉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 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양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⁶⁷⁾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67)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2006/580), ‘신품종 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 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⁶⁸⁾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분야(전기, 통신, 우편, 유류 및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 및 WTO, CAFTA-DR 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개방을 추진중이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금지된다. 사회보장연금(INSS)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영기업체이지만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석유공사(Petronic) 등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을 둔다. 가급적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것과, 정식 파트너 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를 직접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68)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1)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품 및 장비, 농목축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2023년까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산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생에너지 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21.7월 개정된 동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산업용 자본재(기계, 장비 재료 등) 수입에 대해 각종 면세(관세,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 혜택을 제공한다.

(4)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5)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c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 달러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투자(10만 달러 이상) 금액에 차이를 두어,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6)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新 항구 건설 진흥을 위해 2013년 5월에 제정된 동 법률에 따라, 항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을 수입시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7)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절차(각종 인허가, 등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8)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9) ‘외국인 은퇴자 및 거주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주자는 월 소득이 600~750 달러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 주택의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Managua주(22개 자유무역공단)를 포함 10개주에 설립된 51개 자유무역공단에서 215개 기업이 12.6만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2년 총 41.2억 달러를 수출하고, 30.2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73개), 담배(39개), 아웃소싱 서비스(31개), 농가공업(28개), 자동차부품(5개) 등이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0여개, 한국 30여개, 니카라과 30여개 등이다.

자유무역공단의 최저임금은(2023년도 기준) 약 225달러로서 중미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다른 산업분야는 최저임금 조정이 매년 실시되는 반면, 자유무역공단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매5년마다 인상률을 결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2018~2022년까지는 연 급여 인상율을 8.25%로 합의하였고, 2023~2027년까지의 연 급여 인상률은 8%, 8%, 7%, 6.7%, 6.7%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44달러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역 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 mabarca@cnzf.gob.ni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인세 면제 등이 있다. 조세 혜택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섬유·의류 산업으로, 많은 업체들이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중미 지역 중 인건비가 저렴한 니카라과의 자유 무역공단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는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 이후 10년간 특혜 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evels)⁶⁹⁾ 혜택을 받았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동 혜택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공단의 섬유 제품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

69) TPL (Tariff Preferential Levels):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향을 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에 따른 사회 불안, 미국 정부의 對니카라과 경제제재, 그리고 코로나19 발발 등으로 다시금 영향을 받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주요 바이어들이 중미 지역에 대한 의류 주문을 대폭 축소하면서 섬유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은 자유무역공단 내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자,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⁷⁰⁾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 공단 설치 지역 (2023년 기준)
전국 10개주에 51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30여개 중소 섬유업체 및 협력사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 Jinotepe
 - Granada주 : Diriomo
- 고용 창출 (2023년)
- 직접고용 12.6만여명
-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6만명), 자동차부품(1.9만명), 담배(2.2만명), 아웃소싱(1.4만명), 농축산물(6.4천명)
-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22년 기준)
- 41.2억 달러, 미국·멕시코에 80% 이상 집중

2020년 3~4월경 코로나19 발생의 타격으로 자유무역공단 내 섬유제품

70) 개정안 주요 내용

- △ 자유무역공단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권한·기능 강화
-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

수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마스크·방호복 등 방역물품으로 생산품목에 변화를 주어 매출 회복을 도모하였고, 2021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호황을 이루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동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및 미국 내수시장 침체 등을 겪으며 주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2023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여러 한국 섬유·봉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니카라과 내 ①내·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한 대우, ②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 내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⑦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⑧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⑨현지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 그리고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정치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과의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고, 2021.11월 이후 미국의 對니카라과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시,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통신 분야 등)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자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다만, 공공 질서·공중 보건·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일부 존재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내에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 달러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 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 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마나과 시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업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한 경우 신설 기업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일이다.

니카라과에 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통상부(MIFIC)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 데에 최대 5일이 소요된다.

※ One-Stop Shop을 통한 신규 기업 설립 절차

- 1단계 :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 2단계 :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rporate books- 1일
- 3단계 :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 4단계 :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주소 :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전화 : + 505 2277-3860, 3871, 9820
홈페이지 :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청으로부터 체류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를 시행할 때 라이선스 계약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 추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제외하면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취득 및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2006/587)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니카라과 내 부동산 구입 등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 중계 및 금융기관법’(2005/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할 수 있으나,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⁷¹⁾ 또한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미 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해왔으나, 2019년 11월부터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을 연 5%에서 3%로 축소하여 운용중이다. 니카라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현지화의 급속한 가치하락 억제 및 급속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예방 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71) ‘은행·금융기관 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기관법’(2006/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 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충인제도법’(2005/551)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 예금보증 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 달러를 보증해 주고 있다.

니카라과의 소득세는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⁷²⁾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 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는 기술 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제는 복잡

72)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고 실효성이 약하며, 법원 조직 또한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⁷³⁾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가치분금지 명령(amparos)을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더욱 지체되기도 한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 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 및 경제 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카라과 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③고용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에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을 통해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경쟁촉진법 제정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효성 부족, △독과점적 내지

73)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기업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⁷⁴⁾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한다.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에서는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근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 ~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가 퇴직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⁷⁵⁾가 있을 때만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74)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75)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매년초 발표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분야별 최저임금

분야	인상률	월 최저임금액
농축산업	10%	C\$ 5,196.34 (약 U\$ 143.09)
어업	10%	CS 7,901.21 (약 U\$ 217.57)
광업	10%	C\$ 9,332.44 (약 U\$ 256.98)
제조업	10%	C\$ 6,987.06 (약 U\$ 192.40)
영세 수공업 및 관광업	10%	C\$ 5,474.77 (약 U\$ 150.75)
상업, 요식업, 교통, 통신 등	10%	C\$ 9,531.14 (약 U\$ 262.45)
건설, 금융보험	10%	C\$ 11,628.95 (약 U\$ 320.22)
사회복지 서비스	10%	C\$ 7,284.71 (약 U\$ 200.5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10%	C\$ 6,480.04 (약 U\$ 178.43)
자유무역공단	8%	C\$ 8,098.46 (약 U\$ 223.00)

그러나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에서만 제대로 준수되고 있을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에 대해 정부당국이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10% 인상하였으나 니카라과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중미국가 중 가장 낮다. 니카라과 노동부에 따르면(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농업으로서 약 143달러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과 금융보험업으로서 약 320달러이다.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23달러이다.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

수당을 더 있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 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 되는 경우도 있다.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영업자,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사회보장 연금(IN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가 등 3자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혜택을 제공한다. 분담금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고용주가 22.5%(50인 이상 사업체) 또는 21.5%(50인 미만 사업체), 피고용인이 7%, 국가가 1.75%를 부담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 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995년 4월 8일 한-니카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높은 에너지 비용

니카라과는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한다. 과거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 대부분을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저렴하게 수입 하였으나, 베네수엘라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최근 미국과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는 유류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전력인프라 취약 등으로 중미에서 전기료와 유류비가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9년 전기료를 매월 평균 1.45% 인상하여 연간 총 20%를 인상하였다.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약화 및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면 불만을 지속 제기하고 17%의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0년 7월 3% 만을 인하하였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 내에서도 열악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2018년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9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42위(190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80개 조사대상국 중 159위를 차지하여 중미에서는 최하위를, 중남미 전체에서는 베네수엘라, 아이티에 이어 세 번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공공분야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 발주 각종 입찰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뇌물 수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조사 대상 141개국 중 109위를 차지(전년대비 5단계가 하락)하여 중미지역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노동력의 질, 규제, 취약한 인프라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6년에 발간한 전세계 물류종합지수보고서에서 102위를 기록했던 니카라과는 2018년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인 총 160개국 내에도 들지 못해 물류경쟁력이 심각하게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의 행정처리 및 통관 과정 지연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12월 미 정부는 Ortega 일가 및 주요 정부 관계자의 자산 통제 및 비자 발급 제한,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니카라과 차관 공여 제한 등을 규정하는 니카라과 투자제한법(일명: Nica Act)을 발효하였다.

2021년 11월 니카라과 대선을 앞두고 Ortega 정권이 야권 주요 대선 후보를 구속하고 주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등 반민주주의적 행위를 지속하자 美 Biden 행정부는 니카라과 대선 직후 Renacer Act(니카라과 선거개혁 조건 강화법)를 시행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니카라과의 DR-CAFTA 지속 참여 검토,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제한 및 감독 강화, △민주 선거 촉진을 위한 제재 강화, △Ortega 일가 및 정부 주요 관계자의 부패 관련 조사, △니카라과 내 러시아 활동 동향 조사, △인권 탄압 관련 조사 등이다.

2022.10월 美 Biden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명령 13851호를 수정하여, △동 행정명령 제재 대상 재산·권리 소유자, △니카라과 금 산업 관계자,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니카라과 특정 경제 분야·니카라과産 제품의 對美 수출·미국産 제품의 니카라과 수입 및 판매·對니카라과 신규 투자·對니카라과 재정지원 및 보증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협정당사국간 모든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입 면세, 계약의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거의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도 면세 혹은 쿼터 프리가 적용되었다.⁷⁶⁾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혜택을 받고 있다.⁷⁷⁾ 한편, 캐나다⁷⁸⁾, 멕시코⁷⁹⁾,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76) 2020.3월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행한 "2020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141

77) 도미니카공화국 무역 협정 리스트
<https://cei-rd.gob.do/2017/10/17/6-acuerdos-comerciales-disponibles-para-los-exportadores-de-rd-cei-rd/>

78) FTA 협상 중
<https://listindiario.com/economia/2018/10/11/536864/print>

79) 투자협정 추진 중
<https://embamex.sre.gob.mx/republicadominicana/index.php/relacion-bilateral>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2014년 이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8%이다.⁸⁰⁾ 2003년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년 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년 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⁸¹⁾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산업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80) 도미니카공화국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2023)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r_e.htm

81) WTO, 세계무역기구
https://www.wto.org/spanish/thewto_s/countries_s/dominican_republic_s.htm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ITBIS)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도한 관세 부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관세청의 내부 평가 규정(2011년 제정), WTO의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품목분류/관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2019년 기준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66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시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0시간(15미불), 국경 준수 16시간(488미불)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시간 및 비용은 서류 준수 14시간(40미불), 국경 준수 24시간(579미 불)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⁸²⁾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대통령령 431-17에 따라 2017년 12 월 WTO 무역축진협정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인 ‘국가무역축진위원회(Comité nacional de facilitación del comercio)’를 설립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³⁾

82) 세계은행 도미니카공화국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3) 중 “통관절차” 부문 (2019.5월 데이터 자료 기준),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ublic/DOM.pdf>

83) “2019년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6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세표준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시스템(SIGA)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⁸⁴⁾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100도미니칸페소이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밸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84) <https://www.aduanas.gob.do/noticias/aduanas-anuncia-ajuste-al-valor-de-la-dua-de-importaci%C3%B3n/>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⁸⁵⁾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2017년 기준 2011년 이하 제조 차량 수입 금지)의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85)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2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년 12월 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 등 3개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막대(철근)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터키는 2026년 6월 15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막대(HS Code 72142000, 72141000, 72132090)에 14%, 중국은 2027년 1월 26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막대(HS Code 72141000, 72142000, 72143000, 72149100, 72149900)에 43%, 코스타리카는 2025년 1월 6일까지 콘크리트 보강용 파형 철강 막대(HS Code 721410, 721420, 721430, 721491, 721499)에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22년 말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전국 32개 주, 84개 단지, 774개 회사로 구성된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단지 중 50.0%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 인근에 25.8%가 분포해있다. 수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부분별로 서비스업 23.4%, 담배 및 파생 상품 16.8%, 의류 및 섬유 12.8%, 농산업체품 7.4%, 마케팅 6.3%, 의료 및 제약 제품 4.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만 2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50.6%, 공영이 15.5%, 혼합형이 10.9%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자유구역 특별기업이 15.8%, 수출자유구역 서비스가 7.2%를 차지하고 있다.⁸⁶⁾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22년 9.1%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약품 관련업은 1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78.3억불로 국내 총 수출의 56.9%를 달성하였다. 의약품과 시가 수출액이 각각 22.5억불과 12.2억불로 수출자유구역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2022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각각 자유무역지대 수출 9.1%, 자유무역지대 외 수출이 12.0%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은 금, 의료 기기, 회로 차단기, 시가, 페로니켈, 플라타노, 바나나, 보석류, 코코아 콩, 자외선 장치 등이다. 또한 동기간 주요 수출 목적지는 미국 62억 4천 5백만 불, 아이티 10억 4천만 불, 스위스 10억 3천 6백만 불, 푸에르토리코 6억 7천 9백만 불, 네덜란드 4억 4천 2백만 불이다.⁸⁷⁾

86) 수출자유지대국가위원회 2022년 통계 보고서(Informe Estadístico 2022 del Consejo Nacional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ón) p.7

87) Banco Central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外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 환급 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에 필요한 허가, 라이선스 및 인증 단일화 창구(La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인 VU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⁸⁸⁾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미니카 농업부는 민감한 상품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하고 있다.⁸⁹⁾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88) <https://www.vucerd.gob.do>

89)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 143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및 중고의류의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

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한편 미국은 DR-CAFTA 하에서 미국 중고차 수출시 우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과 협상 중이다.⁹⁰⁾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₂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Co₂ 120g 미만-Km, 0%

Co₂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₂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₂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

90) 2023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2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수출보조금이 철폐 되며 수출자유구역 법이 개정되어 전에는 수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20%만 도미니카공화국 시장에 판매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판매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 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CAFTA-DR에 따라 미국 공급 업체는 도미니카 공급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 부처 및 국영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미니카 정부 기관의 조달에 입찰할 수 있다).⁹¹⁾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입찰 방식을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²⁾ 공공 조달 총국에서는 매년 초 공공조달법 340-06 제 17항을 따라 임계값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⁹³⁾

구분	재 화	용 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5,958,474.82 이상	RD\$5,958,474.82 이상	RD\$390,784,602.00 이상
제한 입찰	RD\$5,362,627.34 ~ RD\$5,958,474.81	RD\$5,362,627.34 ~ RD\$5,958,474.81	RD\$293,636,069.87 ~ RD\$390,784,601.99
추첨	-	-	RD\$176,181,641.92 ~ RD\$293,636,069.86
견적 비교	RD\$1,761,816.42 ~ RD\$5,362,627.33	RD\$1,761,816.42 ~ RD\$5,362,627.33	RD\$46,981,771.18 ~ RD\$176,181,641.91
소액 구매	RD\$234,908.86 ~ RD\$1,761,816.41	RD\$234,908.86 ~ RD\$1,761,816.41	-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91) 2020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44

92) 공공조달법 제340-06 p.14 제 17항

93) 공공 조달 총국 <https://www.dgcp.gob.do/sobre-nosotros/marco-legal/umbrales/>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되며 산업 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게 얻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관련 담당 기관은 산업통상부 산하 특허청(ONAPI)이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11월 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년 8월 28일의 Doha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의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관심국가(Watch List)로 등재되어있다.⁹⁴⁾ 지적재산권 국가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4) 2023 대외무역장벽 보고서 p.133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9.1%, 상업 대출 12.4%, 주택 대출 12.4%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기준 56.9%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ProDominicana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금과 과실 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2년 FDI는 40.10억 불을 기록, 2021년 기록한 31.97억불 보다 25.5% 증가하였다.⁹⁵⁾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

95) Banco Central

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 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 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세금납부지표 통계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7번의 세금납부를 해야 하며, 317시간 소요, 총 조세부담률(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48.8%, 사후절차지수(Postfiling index)는 10.7로 나타났다.⁹⁶⁾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96)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2024.1월)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 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TBIS), 특별소비세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상의 제한

현행 노동법 제135조는 회사 전체 근로자 수의 최소 80%는 도미니카인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투자기업이 도미니카공화국에 법인 설립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80% 이상이거나 최소한 총임금의 80%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때 관리직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인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벽은 아니나,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시 중남미 특유의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d/dominican-republic/DOM.pdf>

관료주의와 행정 지연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엔지니어 등 투자기업이 필요로하는 숙련·기술 인력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여 투자 진출이나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90일을 경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출국시 벌과금을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민국(공항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불법 체류 후 출국시 벌과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재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⁹⁷⁾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취업비자 등)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 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 체류일 30일 경과 시 도미니카공화국 법령에 의해 국내 체류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 외국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이며 30~90일 이내의 경우 RD\$2,500를 부과한다.

97) 이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상세

http://overseas.mofa.go.kr/do-ko/brd/m_5871/view.do?seq=13465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멕시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212억 달러(전년대비 수출 12.1% 증가, 수입 8.7% 증가)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0위 수출 대상국, 18위 수입 대상국이다. 최근 5년간('18~'22)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3%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23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바 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7월 발표에서 2.6%였으나, 10월 발표에서는 3.2%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상품가는 2022년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재촉하였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한해 동안 8% 내외 유지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점차 하락하여, 2023년 9월 기준 4.45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 안정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준금리도 2023년 3월 이후 11.5%로

동결되었다. 주요 경제기관은 멕시코의 '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다.

멕시코는 코로나 기간에도 멕시코 정부의 공공부채 감소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이후 니어쇼어링의 본격화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수출 126억 달러, 수입 86억 달러로 4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는 2022년 기준 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22.5%, 아연도금강판 -6.4%, 합성수지 -8.3%, 냉연강판 -0.3%, 평판디스플레이 42.8%로 전년동기대비 평판디스플레이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멕시코 수입은 수출에 비해 다소 적은편이나, 2022년기준 약 86억 달러로,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광물, 자동차 부품 등이며 원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⁹⁸⁾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

98) 2018년 9월 회원국은 NAFTA에서 USMCA로 협정명을 변경하기로 합의, 2020년 7월 1일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됨

되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 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고 자동차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내 부품 사용, 특히 핵심부품(core parts) 사용비율과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인정조건(제선·제강 역내) 및 사용비율 등이 강화됨에 따라 역내 주요 공급망 및 생산거점으로 멕시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3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 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USMCA 시장진출 및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75억 8,535만 달러에 이른다. 연도별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2022년 6억 8,615만 달러, 2023년 상반기 2억 8,695억 달러이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VW 등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기지를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고, 코로나 19 확산 및 미-중간 갈등확산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Ally-shoring)쇼어링 등과 같이 소재부품 업체들의 현지진출이 확대 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현재 리오, 포르테, 엑센트 생산).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USMCA 원산지 조건 충족 시 미국과 캐나다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및 현대차는 최대 3만 대까지 멕시코에 무관세 수출도 가능하다. 2021년 기아 몬테레이 공장은 누적 생산량 120만대를 돌파했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시에서 1991년부터 벤트레일러·엔진·변속기 등 상용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티후아나시 인근 로사리토시에 신규공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티후아나시에 TV 생산공장, 게레파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고급형 가전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코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 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 북미지역내 가전수요 확대로 삼성전자 등은 생산라인 확충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쓰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는 연간 LNG 380만톤 처리규모인 터미널을 20년간 운영하고 연매출을 10억 달러로 예상하였으나, 멕시코 가스수급구조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산 PNG(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미국산 PNG의 일시적 수급차질(2020년 초) 등 비상 상황하의 LNG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엘 엔시노에 노르페 II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등 3개 지역에 설비용량 총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상반기중 모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 및 송전 허가·계약 연장과 준공허가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전 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9년 8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멕시코 동부 타바스코주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하루에 34만 배럴의 원유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

젝트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39억 4천만 달러(4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수주액을 확보하였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칼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최대 연산 9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바하캘리포니아수르주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서 동광 채굴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이 볼레오 동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은 멕시코 정부 통계상으로는 2,100여개사('23.09 기준)이나, 식품·식품점·식음료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민기업과 폐업기업 등이 포함된 수치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현지에 투자 진출한 기업은 약 496개(한국수출입은행 '23.09 기준)로 확인된다. 주요 진출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관련 부품업체이며 주로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 레온 등 국경지역을 포함하여 멕시코주가 위치해있는 중부지역 및 계레파로 지역에 진출해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매우 큰 국가로 부유층은 고가 수입품을 선호하나 다수 국민은 가격을 우선시하는 상반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저가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을 중시한다. 특히 최상류층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시즌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유사한 부엔 핀(Buen Fin, 11월 중순)과 크리스마스(Navidad, 12월 24,25일) 전후로 소비재 판매 특수 기간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 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2022년 기준 수출 80%와 수입 44.2%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 세계 50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및 중미 5개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 니에도 대통령과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16년 11월 양국은 통상차관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 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국이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국-멕시코 양자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한국과 FTA 미체결국은 멕시코가 유일하다.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관련하여 AMLO 정부는 식량, 에너지 분야의 멕시코 비교우위가 크다고 판단하고 협상 중단 14년 만에 재개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활성화 계획'에서 무역협정 목표 4개국 중 하나로 한국 명시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과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12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CPTPP) 협상에 공식서명하였다. CPTPP는 공산품 이외에도 서비스·노동·지식재산권·경쟁·투자정책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어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명목 GDP 비중은 약 12.9%로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세계경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와중에,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서명에 이른 것이다. 미국 탈퇴 선언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로 합의 후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기존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8년 12월 30일 CPTPP 일부 회원국들이 먼저 동 조약을 발효하였으며 회원국 간 자국 수입 품목의 95~100%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철저히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 11개국 이외에 영국이 2021년 1월에 공식 가입신청을 하여, 2023년 7월에 가입승인되었고 중국과 대만이 2021년 10월에 가입신청 의사를 표명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다.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새롭게 합의한 3국 간 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지적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시장국과 FTA 체결 시 회원국에 미리 통보,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조작

등을 지양하기 위한 환율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년 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관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조사관, 관세운영과, 관세법률과, 전자정보 처리과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49개 세관이 설치되어 있다. 2021년 7월 멕시코 국가 관세청(ANAM)을 재무부 산하의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개편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출입 허가 관리, 관세 추정 등 세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멕시코는 2020년 12월 수출입 일반세법(LIGIE)을 개정하여, 상업식별번호인 니코(NICO)를 적용하였다. 기존 8자리에 제품 세부 분류기준을 표기하는 2자리를 추가하여, 제품별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된다.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Advalorem :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45%까지

정해져 있음.

- DTA :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352
페소(약 17.5달러)
- IVA :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 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6%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
(25~160%)이 상이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0% :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quil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4)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5) 20~4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quil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터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년 6월 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008년 10월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년 12월 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되었다.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한편, 정부는 운송 분야 청정기술 발전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9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기차 관련 관세 항목에 대한 수정조치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10인승 이상의 전기자동차와 중고 전기경차에 대한 관세항목이 새로 생겼고, 10인승 이상 전기차·경전기차·화물용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년 이상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자담배의 수입은 2008년부터 담배규제법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나 수출입법에 의거해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2020년 2월 20일 정부는 전자담배 수출입 금지조치 법령을 발표하여 법적인 단속규제가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입일반 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주로 섬유, 의류, 신발, 철강 등 일부 항목의 관세를 조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2023년 8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취약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미체결국가대상 392개 수입품목 (철강, 섬유, 플라스틱, 유리 제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2022년 5월 및 10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물가 통제 방안인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Paquete Contra la Inflacion y Carestia)'를 발표 및 시행하였고 10월 3일 2차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 (APECIC, Acuerdo de Apertura Cotra la Inflacion y la Carestia)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정 기본 장바구니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된다.

2019.4.10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0%	6405.90.02
10%	5513.12.02, 5513.12.99, 5513.13.02, 5513.13.99, 5513.19.02, 5513.19.99, 5513.23.03, 5513.23.04, 5513.23.91, 5513.29.02, 5513.29.99, 5513.31.02, 5513.31.99, 5513.39.04, 5513.39.05, 5513.39.06, 5513.39.91, 5513.41.02, 5513.41.99, 5513.49.04, 5513.49.05, 5513.49.91, 5515.11.02, 5515.11.03, 5515.11.99, 5515.12.02, 5515.12.03, 5515.12.99, 5515.19.01, 5515.19.02, 5515.21.02, 5515.21.03, 5515.21.99, 5515.29.01, 5515.29.02, 5515.91.02, 5515.91.03, 5515.91.99, 5515.99.03, 5515.99.04, 5903.90.03, 5903.90.04, 5903.90.05, 6001.21.02, 6001.21.99, 6001.22.02, 6001.22.03, 6001.22.99, 6001.91.02, 6001.91.99, 6001.92.02, 6001.92.03, 6001.92.99, 6002.40.02, 6002.40.03, 6002.40.04, 6002.90.02, 6002.90.03, 6002.90.04, 6005.31.02, 6005.31.99, 6005.34.02, 6005.34.99, 6401.10.02, 6401.10.99, 6402.99.24, 6402.99.25, 6402.99.30, 6402.99.31, 6402.99.32, 6403.19.91, 6404.20.02, 6404.20.03, 6404.20.99
15%	9404.90.03, 9404.90.04, 9404.90.05, 9404.90.06
20%	6103.42.04, 6103.42.91, 6103.42.92, 6104.44.03, 6104.52.02, 6104.52.99, 6104.62.06, 6104.62.91, 6104.62.92, 6107.22.02, 6107.22.99, 6110.12.02, 6110.12.99, 6110.19.01, 6110.30.04, 6110.30.05, 6110.90.03, 6110.90.04, 6110.90.05, 6110.90.06, 6110.90.91, 6207.21.02, 6207.21.99, 6208.21.02,

적용 관세	HS Code
	6208.21.99, 6208.22.02, 6208.22.99, 6208.92.03, 6208.92.91, 6213.90.03, 6217.10.02, 6217.10.99, 6402.99.22, 6402.99.23, 6404.11.20, 6404.11.21, 6404.19.13, 6404.19.14, 6404.19.15, 6404.19.17, 6404.19.91, 6405.20.91
25%	6101.30.03, 6102.30.02, 6102.30.03, 6103.43.91, 6103.43.9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6.10.03, 6106.10.04, 6107.21.02, 6107.21.99, 6110.20.94, 6110.30.06, 6110.30.07, 6110.30.92, 6110.30.93,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203.42.10, 6203.42.96, 6203.43.10, 6203.43.11, 6203.43.95, 6203.43.96, 6204.33.93, 6204.43.03, 6204.62.10, 6204.62.96, 6204.63.09, 6204.63.10, 6204.63.94, 6204.63.95, 6207.11.02, 6207.11.99,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12.10.08,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402.91.07, 6404.19.16
30%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4.11.18, 6404.11.19, 6404.11.22
항목 삭제	5513.12.01, 5513.13.01, 5513.19.01, 5513.23.01, 5513.29.01, 5513.31.01, 5513.39.01, 5513.39.02, 5513.41.01, 5513.49.01, 5515.11.01, 5515.12.01, 5515.21.01, 5515.91.01, 5903.90.02, 6001.21.01, 6001.22.01, 6001.91.01, 6001.92.01, 6005.31.01, 6005.34.01, 6103.42.99, 6103.43.99, 6104.52.01, 6104.62.99, 6104.63.99, 6105.10.01, 6106.10.01, 6107.21.01, 6107.22.01, 6110.12.01, 6110.30.01, 6110.30.02, 6111.20.02, 6111.20.03, 6111.20.06, 6111.20.10, 6111.30.02, 6111.30.03, 6111.30.04, 6111.30.06, 6203.42.03, 6203.43.03, 6203.43.07, 6204.62.03, 6204.63.03, 6204.63.06, 6207.11.01, 6207.21.01, 6208.21.01, 6208.22.01, 6208.92.99, 6209.20.02, 6209.20.03, 6209.20.06, 6209.30.02, 6209.30.03, 6217.10.01, 6302.21.01, 6302.22.01, 6302.31.02, 6302.31.03, 6302.31.04, 6302.31.05, 6302.32.02, 6302.32.03, 6302.32.04, 6302.32.05, 6401.10.01, 6402.99.05, 6402.99.06, 6402.99.15, 6404.11.06, 6404.11.12, 6404.19.03, 6404.20.01, 9404.90.91

2019.10.28일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섬유 및 신발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25% (‘20. 10.1~)	6101.30.03, 6101.30.91, 6101.30.92, 6102.30.02, 6102.30.03, 6102.30.99, 6103.43.02, 6103.43.03, 6103.43.04, 6103.43.05, 6103.43.91, 6103.43.92, 6104.63.02, 6104.63.03, 6104.63.04, 6104.63.91, 6104.63.92, 6105.10.03, 6105.10.04, 6105.10.99, 6105.20.02, 6105.20.99, 6106.10.03, 6106.10.04, 6106.10.91, 6106.10.92, 6106.20.91, 6106.20.92, 6107.11.02, 6107.11.99, 6107.12.02, 6107.12.99, 6107.21.02, 6107.21.99, 6108.21.02, 6108.21.99, 6108.22.02, 6108.22.99, 6108.31.02, 6108.31.99, 6108.32.02, 6108.32.99, 6109.10.02, 6109.10.99, 6109.90.03, 6109.90.91, 6110.20.02, 6110.20.03, 6110.20.04, 6110.20.91, 6110.20.92, 6110.20.93, 6110.20.94, 6110.20.99, 6110.30.03, 6110.30.06, 6110.30.07, 6110.30.91, 6110.30.92, 6110.30.93, 6110.30.99, 6111.20.04, 6111.20.05, 6111.20.07, 6111.20.08, 6111.20.09, 6111.20.11, 6111.20.13, 6111.20.14, 6111.20.15, 6111.20.16, 6111.20.17, 6111.20.18, 6111.20.19, 6111.20.20, 6111.20.91, 6111.20.92, 6111.20.99, 6111.30.05, 6111.30.08, 6111.30.09, 6111.30.10, 6111.30.11, 6111.30.12, 6111.30.13, 6111.30.14, 6111.30.15, 6111.30.16, 6111.30.17, 6111.30.18, 6111.30.19, 6111.30.20, 6111.30.91, 6111.30.92, 6111.30.93, 6111.30.99, 6112.12.01, 6112.41.01, 6115.95.01, 6115.96.01, 6201.11.01, 6201.12.91, 6201.12.92, 6201.13.91, 6201.13.92, 6201.92.91, 6201.92.92, 6201.93.99, 6202.11.01, 6202.12.91, 6202.12.92, 6202.13.91, 6202.13.92, 6202.92.91, 6202.92.92, 6202.93.91, 6202.93.92, 6203.11.01, 6203.12.01, 6203.31.01, 6203.32.02, 6203.32.99, 6203.33.91, 6203.33.92, 6203.41.01, 6203.42.07, 6203.42.08, 6203.42.09, 6203.42.10, 6203.42.91, 6203.42.92, 6203.42.93, 6203.42.94, 6203.42.95, 6203.42.96, 6203.43.04, 6203.43.05, 6203.43.08, 6203.43.09, 6203.43.10, 6203.43.11, 6203.43.91, 6203.43.92, 6203.43.93, 6203.43.94, 6203.43.95, 6203.43.96, 6203.49.01, 6204.32.02, 6204.32.99, 6204.33.91, 6204.33.92, 6204.33.93, 6204.42.91, 6204.42.92, 6204.43.03, 6204.43.91, 6204.43.92, 6204.44.91, 6204.44.92, 6204.52.02, 6204.52.99, 6204.53.91, 6204.53.92, 6204.62.06, 6204.62.07, 6204.62.08, 6204.62.10, 6204.62.91, 6204.62.92, 6204.62.93, 6204.62.94, 6204.62.95, 6204.62.96, 6204.63.04, 6204.63.05, 6204.63.07, 6204.63.08, 6204.63.09, 6204.63.10, 6204.63.91, 6204.63.92, 6204.63.93, 6204.63.94, 6204.63.95, 6204.69.04, 6204.69.05, 6204.69.99, 6205.20.91, 6205.20.92, 6205.30.91, 6205.30.92, 6205.90.99, 6206.30.02, 6206.30.03, 6206.40.91, 6206.40.92, 6206.90.99, 6207.11.02, 6207.11.99, 6209.20.04, 6209.20.05, 6209.20.08, 6209.20.09, 6209.20.10, 6209.20.11, 6209.20.12, 6209.20.13, 6209.20.14, 6209.20.15, 6209.20.91, 6209.20.92, 6209.20.99, 6209.30.04, 6209.30.06, 6209.30.07, 6209.30.08, 6209.30.09, 6209.30.10, 6209.30.91, 6209.30.92, 6209.30.99, 6211.11.01, 6212.10.02, 6212.10.03, 6212.10.04, 6212.10.05, 6212.10.06,
20% (‘24. 10.2~)	

적용 관세	HS Code
	6212.10.08, 6212.20.01, 6212.30.01, 6301.40.01, 6302.21.02, 6302.21.03, 6302.21.04, 6302.21.05, 6302.21.06, 6302.21.07, 6302.21.08, 6302.21.09, 6302.21.99, 6302.22.02, 6302.22.03, 6302.22.04, 6302.22.05, 6302.22.06, 6302.22.07, 6302.22.08, 6302.22.09, 6302.22.99, 6302.31.07, 6302.31.08, 6302.31.09, 6302.31.10, 6302.31.11, 6302.31.12, 6302.31.13, 6302.31.14, 6302.31.99, 6302.32.07, 6302.32.08, 6302.32.09, 6302.32.10, 6302.32.11, 6302.32.12, 6302.32.13, 6302.32.14, 6302.32.99, 6302.60.02, 6302.60.03, 6302.60.04, 6302.60.05, 6302.60.99, 6304.19.99, 6402.91.03, 6402.91.04, 6402.91.05, 6402.91.07, 6404.11.07, 6404.11.08, 6404.11.10, 6404.11.11, 6404.19.02, 6404.19.08, 6404.19.16
30% (20.1 0.1~) 20% (24. 19.2~)	6402.19.01, 6402.20.02, 6402.20.03, 6402.99.04, 6402.99.07, 6402.99.08, 6402.99.09, 6402.99.10, 6402.99.11, 6402.99.12, 6402.99.26, 6402.99.27, 6402.99.28, 6402.99.29, 6403.91.09, 6403.91.10, 6403.91.11, 6403.99.03, 6403.99.04, 6403.99.07, 6403.99.08, 6403.99.09, 6403.99.10, 6403.99.11, 6404.11.04, 6404.11.05, 6404.11.13, 6404.11.14, 6404.11.15, 6404.11.18, 6404.11.19, 6404.11.22

2016.09.20.일 신설 및 삭제된 HS Code(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

신 설
7208.10.04, 7209.18.02, 7209.18.99, 7210.70.03, 7210.70.04, 7210.70.05, 7210.70.91, 7210.90.91, 7211.14.04, 7213.99.02, 7215.90.01, 7219.31.02, 7219.31.99, 7221.00.02, 7221.00.99, 7222.40.02, 7222.40.99, 7224.10.91, 7224.90.03, 7225.30.08, 7225.30.91, 7225.40.07, 7225.40.91, 7225.50.08, 7225.50.09, 7225.50.10, 7225.50.11, 7225.50.12, 7225.50.91, 7226.91.08, 7226.91.09, 7226.91.10, 7226.91.11, 7226.91.12, 7226.91.91, 7226.92.07, 7227.20.02, 7227.20.99, 7227.90.02, 7227.90.03, 7228.30.03, 7228.60.03, 7228.70.02, 7228.70.99, 7302.10.03, 7304.19.91, 7304.31.91, 7304.39.10, 7304.39.11, 7304.39.12, 7304.39.13, 7304.39.14, 7304.39.15, 7304.39.16, 7304.39.91, 7304.39.92, 7304.51.91, 7304.59.11, 7304.59.12, 7304.59.13, 7304.59.14, 7304.59.15, 7304.59.16, 7304.59.17, 7304.59.91, 7304.59.92, 7305.31.91, 7306.19.01, 7306.30.03, 7306.30.04, 7306.30.05, 7306.30.06, 7306.30.91, 7306.50.03, 7306.50.04, 7306.61.02, 7306.61.03, 7306.61.99, 7306.69.01, 7306.69.02, 7616.99.91, 7616.99.92
삭 제
7209.18.01, 7210.70.01, 7219.31.01, 7221.00.01, 7222.40.01, 7225.30.01, 7225.50.01, 7225.50.05, 7226.91.01, 7226.91.02, 7226.91.06, 7227.20.01, 7228.70.01, 7304.39.05, 7304.39.06, 7304.39.07, 7304.59.06, 7304.59.07, 7304.59.08, 7306.30.01, 7306.61.01

2019년 11월 6일 정부는 고도로 위험한 살충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관세를 신설 및 삭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였다.

2019.11.06.일자로 변경 및 수출입금지된 HS Code

신 설	
0304.44.02, 0304.44.99, 0304.49.02, 0304.49.03, 0304.49.04, 0304.52.02, 0304.52.99, 0304.53.02, 0304.53.99, 0304.59.01, 0304.59.02, 0304.59.03, 0304.74.02, 0304.74.99, 0304.89.02, 0304.89.03, 0304.95.02, 0304.95.99, 0304.99.01, 0304.99.02, 0304.99.03, 0304.99.04, 0305.32.02, 0305.32.99, 0305.39.01, 0305.39.02, 0305.39.03, 0305.39.04, 0305.39.05, 0305.49.02, 0305.49.03, 0305.49.04, 0305.49.05, 0305.49.06, 0305.59.02, 0305.59.03, 0305.59.04, 0305.59.05, 0305.59.06, 0305.59.07, 0305.69.01, 0305.69.02, 0305.69.03, 0305.69.04, 0305.69.05, 0305.72.03, 0305.72.04, 0305.72.05, 0305.72.06, 0305.72.07, 0305.72.08, 0305.72.99, 0305.79.02, 0305.79.03, 0305.79.04, 0305.79.05, 0305.79.06, 0305.79.07, 1604.13.03, 1604.16.03, 1604.19.03, 1604.20.04, 1604.20.05, 1604.20.06, 1604.20.07, 1604.20.08, 1604.20.09, 3808.91.05	
신설 및 수출입 금지	
2903.81.04, 2903.82.04, 2903.92.04, 2920.11.03, 2920.90.18, 2924.12.03, 2924.29.49, 2930.50.03, 2930.90.74, 2931.90.22, 2932.99.17, 2933.99.49, 3808.50.02, 3808.50.99, 3808.91.06, 3808.93.05, 3808.99.03, 3808.99.04	
삭 제	
0304.44.01, 0304.52.01, 0304.53.01, 0304.74.01, 0304.95.01, 0305.32.01, 0305.72.01, 2903.81.01, 2903.81.02, 2903.81.99, 2903.82.01, 2903.92.02, 2920.11.02, 2920.90.03, 2924.29.32, 2930.50.01, 2930.90.27, 2931.90.21, 2932.99.10, 2933.99.13, 3808.50.01, 3808.91.01	

2023.8.16일자로 관세 조정된 제품의 HS Code(철강, 섬유, 신발 및 타이어 부문)

적용 관세	HS Code
5%	6405.90.02
10%	8708.22.01, 8708.29.99
15%	5208.11.01, 5208.19.91, 5208.21.01, 5208.39.91, 5208.41.01, 5209.19.91, 5209.39.91, 5209.49.91, 5210.59.91, 5211.19.91, 5211.32.01, 5211.42.04,

적용 관세	HS Code
	5211.43.91, 5407.61.06, 5512.19.99, 5512.91.01, 5513.13.91, 5513.29.91, 5513.39.91, 5513.49.91, 5514.23.91, 5514.29.91, 5515.19.99, 5515.21.01, 5515.91.01, 5515.99.99, 6005.23.01
20%	7009.91.99, 7220.20.03
25%	2827.20.01, 2836.20.01, 2836.30.01, 3405.20.02, 3907.61.01, 3907.69.99, 3923.30.02, 3926.90.06, 4011.10.10, 4011.20.06, 4817.30.01, 4823.90.11, 4901.99.91, 4905.90.01, 4905.90.02, 4906.00.01, 4908.90.99, 4911.91.03, 6102.90.91, 6103.31.01, 6103.39.91, 6104.19.91, 6104.32.01, 6104.41.01, 6104.51.01, 6106.20.01, 6106.90.91, 6110.12.01, 6110.19.99, 6110.90.91, 6112.19.91, 6114.90.91, 6115.30.91, 6201.20.99, 6201.30.01, 6201.90.91, 6202.20.99, 6202.30.01, 6202.40.01, 6202.40.02, 6202.90.91, 6203.19.91, 6203.39.91, 6203.42.01, 6204.23.01, 6204.29.91, 6204.39.91, 6204.41.01, 6204.42.01, 6204.59.91, 6206.40.01, 6210.20.91, 6211.49.91, 6301.20.01, 6302.29.91, 6302.39.91, 6302.40.01, 6302.91.01, 6303.12.01, 6303.19.91, 6303.91.01, 6303.99.91, 6304.91.01, 6305.32.01, 6306.19.91, 6306.29.91, 6306.40.02, 6402.12.01, 6403.40.91, 6403.51.05, 6403.59.99, 6404.11.09, 6405.90.99, 6504.00.01, 6505.00.04, 6811.40.91, 6811.40.99, 6812.99.02, 6812.99.03, 6812.99.05, 6812.99.06, 6812.99.99, 6907.21.02, 6907.22.02, 6907.23.02, 6907.30.01, 6907.40.01, 7003.12.02, 7003.19.02, 7003.20.01, 7005.10.02, 7005.21.03, 7005.29.01, 7005.29.99, 7006.00.04, 7007.11.99, 7007.21.99, 7010.90.99, 7013.22.01, 7013.33.01, 7013.41.01, 7013.91.01, 7104.10.01, 7104.91.01, 7104.99.99, 7118.10.01, 7208.10.03, 7208.25.02, 7208.26.01, 7208.27.01, 7208.36.01, 7208.37.01, 7208.38.01, 7208.39.01, 7208.40.02, 7208.51.04, 7208.52.01, 7208.53.01, 7208.54.01, 7208.90.99, 7209.15.04, 7209.16.01, 7209.17.01, 7209.18.01, 7209.25.01, 7209.26.01, 7209.27.01, 7209.28.01, 7209.90.99, 7210.30.02, 7210.41.01, 7210.41.99, 7210.49.99, 7210.61.01, 7210.70.02, 7210.90.99, 7211.13.01, 7211.14.91, 7211.19.99, 7211.23.03, 7211.29.99, 7211.90.99, 7212.20.03, 7212.30.03, 7212.40.04, 7212.50.01, 7213.10.01, 7213.20.91, 7213.91.03, 7213.99.99, 7214.20.01, 7214.20.99, 7214.30.91, 7214.91.03, 7214.99.99, 7215.10.01, 7216.10.01, 7216.21.01, 7216.22.01, 7216.31.03, 7216.32.99, 7216.33.01, 7216.40.01, 7216.50.99, 7216.61.01, 7216.61.02, 7216.61.99, 7216.69.99, 7216.91.01, 7216.99.99, 7217.10.02, 7217.20.02, 7217.90.99, 7219.32.02, 7219.33.01, 7219.34.01, 7219.35.02, 7219.90.99, 7225.19.99, 7225.30.91, 7225.40.91, 7225.50.91, 7225.91.01, 7225.92.01, 7225.99.99, 7226.19.99, 7226.91.07, 7226.92.06, 7226.99.99, 7227.10.01, 7227.20.01, 7227.90.99, 7228.30.99, 7228.70.01, 7229.20.01, 7229.90.99, 7304.11.03, 7304.19.01, 7304.19.02, 7304.19.03, 7304.19.99, 7304.22.04, 7304.23.04, 7304.24.91,

적용 관세	HS Code
	7304.29.99, 7304.39.09, 7304.39.10, 7304.39.11, 7304.39.12, 7304.39.13, 7304.39.14, 7304.39.15, 7304.39.16, 7304.39.91, 7304.39.92, 7304.39.99, 7304.59.09, 7305.11.02, 7305.12.91, 7305.19.99, 7305.20.01, 7305.20.99, 7305.31.01, 7305.31.03, 7305.31.04, 7305.31.05, 7305.31.06, 7305.31.91, 7305.31.99, 7305.39.01, 7305.39.03, 7305.39.04, 7305.39.05, 7305.39.99, 7305.90.99, 7306.19.99, 7306.29.99, 7306.30.02, 7306.30.03, 7306.30.04, 7306.30.99, 7306.40.99, 7306.50.99, 7306.61.01, 7306.69.99, 7306.90.99, 7307.22.02, 7307.23.99, 7308.20.02, 7308.30.02, 7308.90.02, 7308.90.99, 7310.21.01, 7310.29.99, 7312.10.01, 7312.10.05, 7312.10.07, 7312.10.08, 7312.10.99, 7313.00.01, 7314.19.03, 7314.19.99, 7314.20.01, 7314.31.01, 7314.39.99, 7314.41.01, 7314.42.01, 7314.49.99, 7314.50.01, 7315.12.91, 7315.81.03, 7315.82.91, 7315.89.99, 7315.90.91, 7317.00.02, 7317.00.04, 7317.00.99, 7318.11.01, 7318.12.91, 7318.13.01, 7318.14.01, 7318.15.04, 7318.15.99, 7318.16.06, 7318.19.99, 7318.22.91, 7318.23.02, 7318.24.03, 7318.29.99, 7321.11.01, 7321.11.91, 7321.90.99, 7322.19.01, 7322.19.99, 7322.90.99, 7323.10.01, 7323.93.05, 7323.94.05, 7323.99.99, 7324.10.01, 7324.21.01, 7324.29.99, 7324.90.91, 7325.99.99, 7326.11.03, 7326.90.99, 7410.12.01, 7411.21.05, 7419.20.03, 7419.20.06, 7508.10.01, 7613.00.99, 7616.99.15, 8207.50.07, 8207.60.06, 8207.80.01, 8207.90.01, 8207.90.99, 8208.20.02, 8215.91.01, 8302.10.99, 8302.50.01, 8308.20.01, 8311.90.01, 8416.90.02, 8419.50.03, 8431.49.99, 8433.90.04, 8539.29.99, 8707.90.02, 8712.00.05, 8714.91.01, 8716.39.04, 8716.39.99, 8716.40.91, 8804.00.01, 9201.90.99, 9202.10.01, 9202.90.02, 9202.90.99, 9205.10.01, 9205.90.02, 9205.90.03, 9205.90.04, 9207.10.02, 9208.10.01, 9208.90.99, 9209.91.99, 9401.39.99, 9401.52.01, 9401.71.01, 9403.10.03, 9403.20.91, 9403.60.01, 9403.60.02, 9403.89.99, 9404.10.01, 9405.61.01, 9603.90.01, 9620.00.03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칼리포니아수르

(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 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코(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키타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 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며, 기존 세관외에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SNICE)에서도 수출입시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 경제부 : <http://siavi.economia.gob.mx/>

- 대외무역부 국가정보 서비스 :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ico.ligi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년 11월 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 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2020년 3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최저 수입가격 고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였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 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 (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 생산 자동차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자동차

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바 있다.

USMCA에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를 면제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ti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된 바 있다. 한편 현대 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2015년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시코 국경지대 및 일부 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고차 수입 규제령을 수정

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중고차는 북미에서 제조를 보장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연방관보를 통해 일명 초콜릿 자동차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산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가되었다. 대상 지역은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 데 사라고사(Coahuila de Zaragoz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두랑고(Durango) 등 북부 지역이며, 약 2500페소 납부 및 소정의 서류 제출 시 경제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III)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 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8개국 57개 품목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36건, 미국 9건, 인도 7건, 우크라이나 4건, 한국 4건, 러시아 3건, 일본 3건, 스페인 3건 등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유지되었다.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량 조절(쿼터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그 후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쿼터를 확대하는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6월 13일, 2017년과 2018년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쿼터를 확대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한편, 수입쿼터에 대한 행정재심이 201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포스코에 대해 수입물량 확대에 대한 최종판정 조치를 내렸고, 확정된 수입쿼터 물량은 '19년 547,500톤, '20년 573,906톤, '21년 596,508톤, '22년 620,044톤, '23년 661,586톤이다.

2023년 9월 기준, 멕시코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4건으로 2건은 철강금속제품(냉연강판, 무계목강관)이며, 2건은 화학제품(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전,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총 800여개의 NOM이 운영되고 있다.⁹⁹⁾ 그러나,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인증 취득 애로 완화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증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며,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멕시코의 국가인증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4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REGLAS-ANEXO241PDFok-REGLAS_2020516-20220516.4.1.pdf

중남미 대표 시험인증(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관을 거치지 않고 멕시코 안전인증인 NOM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이 가능하게 된 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250여개사이며¹⁰⁰⁾,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 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 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50-60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100) <https://app.powerbi.com/view?r=eyJrJoiMDUxNmZmYmMtNmY0Yi00MjAxLTk1NjktOWEzYjZlNzgyYWE4liwidCI6IjRmYTc0NjJILTQ0OWQtNDVhZi1hYjEwLTZhMzAyNTg1YmMwNyIsImMiOiR9&pageName=ReportSection2946d9a27301b17e3c93>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a), 년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만약 제출서류상 하자가 있을 시 미비점을 적시, 반송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420 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에게,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 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해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한편 2019년 10월 멕시코 하원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음료 제품에 대해 전면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하는 일반건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칼로리 혹은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식음료 제품 포장 전면에 경고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 1일부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대한 수정조치가 적용된다.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하며,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체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언더 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년 9월 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 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

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 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 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멕시코와의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으므로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공공입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 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2020년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서, NAFTA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 미국법 수준에 맞춰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특허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으며, 기타 자료 및 디자인 등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상표와 지리적 표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는 총 13개 분야로 그 중 10개 분야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3개 분야는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만 투자가 허용된다. 그 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49%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보험 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멕시코 시티 신공항 등)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전력산업법 개정 및 에너지분야 헌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과의 기존 계약 및 허가 등을 소급하여 전면 재검토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2004년 8월 통신교통부는 2021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가 성명을 발표해 2015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2015년 12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2018년 12월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는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 병원,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 공공시설 무료 인터넷 사용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0년 7월 2일 2020-2024 통신 및 운송부문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현 정부는 디지털 통합 및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 방송서비스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멕시코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분야 개혁

에너지 자립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1년 전력 및 탄화수소에 중점을 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력 개혁안의 목표는 연방전력청(CFE)에 전력시장의 54 % 점유율을 보장하여 공정한 가격 책정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리튬 및 기타 전략 광물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보호하고자 한다. 멕시코 정부는 2023년 4월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멕시코 광업에 대한 보호초지를 골자로 하는 광업법(Ley Minera)개정하였다. 이는 멕시코의 광업 관련 제반활동을 관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였다. 그 외에도 멕시코는 광업법 세부규정, 광물 관련 공공서비스 매뉴얼, 외국인 투자법, LGEEP등을 통해 양허 및 채굴을 제한하고 있다.¹⁾

탄화수소 개혁안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산업을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만 한정하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허가 기관에서 명시적이고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며, 인허가 기관에 기존 허가면허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18년부터 2032년까지 태양 에너지에 총 119억 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58.5GW까지 확대하는 등 최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됨에 따라 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길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길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역내 부품사용비율(RVC)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역내에서 제선·제강을 거친 제품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계산시에 인정되어 멕시코 진출 우리 관련업체가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20년 10월 기준 4.25%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킬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킬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0.12일부로 멕시코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발효하였다. 기업의 생산 및 수출 분야가 10개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2023.10.12.일부터 2024.12.31일 까지 이루어진 신규 투자에 한하여 투자자산 종류에 따라 투자액의 56%~89%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즉시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¹⁰¹⁾.

* 10개 분야 : ❶ 사람 및 동물 관련 식품 ❷비료 및 농화학 제품 ❸제약 관련 원자재 및 제조장비 ❹반도체, 변압기, 축전기등과 같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전화 부자재 ❺의료기기(시계, 측량, 조정, 항법, 제어, 전자의료기기) ❻배터리, 축전기, 전지, 전자 케이블, 퓨즈등 전기 부품 ❼자동차 엔진 ❸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부품 ❹항공기용 내연기관 및 변속기 ❺비전자 의료 장비 및 기기

101) 멕시코 연방 관보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04676&fecha=11/10/2023#gsc.tab=0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품목명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멕시코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복미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의 수혜지이자 경쟁력있는 제조업 임금을 보유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및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현지 생산공장 구축을 통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활용하고, OEM수요 선제파악을 통한 맞춤 공급 및 전기자동차 부품위주로 품목군 구성하여 차세대 수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전기차 충전기	멕시코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현재 독일 기업 제품의 수요가 높지만 가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며, 유일하게 멕시코에서 충전기를 생산 중인 기업은 중국 기업 Xignux사이나 품질이 낮아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 우리 기업은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전기차 시장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를 포착할 필요 있음.
화장품	멕시코의 화장품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함.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시장으로 스킨미멀리즘과 컨서스뷰티 유행으로 올인원 제품과 비건 화장품 수요 증가 중. 2022년 수입액 기준 9위(HS CODE 3304)로 점유율이 10%이상인 기업이 2개뿐. 한국화장품 전문 취급 유통사 및 한인마트 등 진출장벽이 낮은 유통망을 활용해 초기 진출을 고려하거나, 비건친환경, 유기농 등 컨서스 뷰티에 관심있는 소비자나 올인원 제품을 통해 스킨미멀리즘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음.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것도 중요함.
한국식품	한류의 인기로 현지인들의 한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류 팬들 위주로만 소비되고 있어 주류 시장으로 확대 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대폭 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사에서 K푸드 코너를 마련해 한류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에게도 한국 식품 경험을 제공하는것도 중요함.라면, 즉석밥, 커피믹스 등 품목으로 성장 중인 간편식 시장 수요 공략할 필요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용품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멕시코는 해당분야의 발전 초기단계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있는 분야. 만성질환자 증가로 지속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결책으로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음. 멕시코 소득수준을 고려해 가성비 좋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으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고 정부 및 미간의 고사양 장비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원격 의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할 필요성 대두됨

자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미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수입정책상의 장벽

2022년 World Tariff Profil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의 평균 실행관세율(MFN applied)은 3.4%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47.3%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의 비중은 7.2%로 비교적 높은데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였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 (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 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협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 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 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 9천만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 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 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 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 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 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및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해양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로 분류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해당 수산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 관리대상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수입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930년부터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 금지되었으나, 예외조항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집행되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이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청장은 수입물품이 강제노동으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것으로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억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표할 수 있다. 억류명령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해석과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2018년 3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수출물량의 70%(263만 1,012톤) 쿼터를 부과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었다. 한편 2018년 2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동 조치는 일정 수입량(쿼터)을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TRQ)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 또는 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수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IV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④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험을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¹⁰²⁾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102)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 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년 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품

FDA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사료, 방사선 방출 제품 등이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부(HHS) 소속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21st Century Cures Act, FDA Reauthorization Act (FDAR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FDAMA), Prescription Drug Marketing Ac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등이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 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 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다.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 있다.

(1) 제주산 감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한편, 한국 식약처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의 미국내 기준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 환경보호청(EPA)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mm)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8년 4월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연방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국은 PRA 진행 후, 2020년 6월에 당근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은 2017년 9월 규정이 개정되어 수입이 허용되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년 3월 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년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6월 18일), 수출증명서 합의(6월 23일)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7월 24일)를 완료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타조류), 중국(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 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뉴캐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약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지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 물질(방법)을 유지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서 양국의 항생제 사용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한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가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 허용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14일(10월 16일 발효)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전에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국내 고시 제정, 현지 실사 및 수출농장 승인(2개소)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이 미국(플로리다)으로 첫 수출되었다.

(6)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 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역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7)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 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이 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 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설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신규 규정을 2013년 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의 식품 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년 10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그리고 문제 발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9)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 (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 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하였다.

(10)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년 5월 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냉동 수산 패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년 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년 2월 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써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2003년 10월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2020년 초 예정되어 있던 FDA의 우리나라 지정해역 현장실사는 COVID-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고, 2023년까지 양해각서의 효력이 연장된 상황이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 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년 5월 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 하고 2개 이상의 사후 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

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 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23년 12월 기준 총 36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품목 중 대부분이 철강금속제품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국 철강업체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품은 철강금속제품(알루미늄 압출재)1건이다. 한편 미국은 202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대형구경강관,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 등 총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제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¹⁰³⁾(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¹⁰⁴⁾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조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5월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절차를 구체화하고, PMS 적용 등 그간의 관행을 성문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등,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전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가격·물량 약속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103)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104)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가용 정보(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같은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이 유발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품에도 동시제 적용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및 인증 제도

많은 국가에서는 단일 표준화기구(주로 정부기관)가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주도로 표준 사용자(산업계, 소비자, 정부 규제기관)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정부 기관인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국가대표표준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민간 기관을 지정하여 미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했는지 시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인증기관은 NRTL 지정 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 성적서를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자 안전 개선법(CPSIA)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 납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 제3자 시험

기관 시험 및 인증, 추적 라벨(tracking labelling) 및 만·형사상 처벌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운 납 함량 기준이 적용되, 단계적으로 납함량 기준이 강화되었다. 당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6종 물질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 4월 위해성 검토를 통해 규제 대상 물질을 8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린이 용품에는 제조자, 제품명, 생산일자 등 기본적인 제품 정보에 한하여 영구 표기(permanent marks)를 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12세이하 어린이제품은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지정한 제3자 시험기관(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는 9개 시험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지정 시험기관 목록은 CPSC 홈페이지(www.cpsc.gov)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내 어린이 제품 요구 사항

- Sec.101 : 납함량 기준
- Sec.102 : 제3자 시험 (최초, 부품시험, 자재변경, 정기시험)
- Sec.103 : 추적 라벨
- Sec.104 : 내구성 유아제품
- Sec.105 : 광고 라벨
- Sec.106 : 완구기준(ASTM F 963)
- Sec.107 : 소수민족어린이 요구사항
- Sec.108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종) 함량 기준
- 어린이제품 확인 :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 (2020.01)

한·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였으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부로 동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응을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인종평등 도모와 더불어 4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은 2021년 2월 19일부로 공식적으로 당사국으로 복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2021.1.20.), 대통령 메모랜덤(2021.1.27.)을 통해 규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예로 2021년 1월 20일 행정명령 13990을 통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부지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한편 차량의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기준(SAFE)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2021년 1월 27일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국가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각 부처·청의 기후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전면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주최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계기에 2005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50~52% 감축한다는 미국의 신규 강화된 감축공약(NDC)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2017년 10월 10일 미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 (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EPA는 기존 CPP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각 주가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었던 반면, ACE는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서 각 주가 각자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CE 규칙은 ①석탄화력발전소의 CO₂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시스템(BSER)을 정의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토대로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②각 주가 발전소 운영 기준 수립 및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 기술(candidate technologies) 목록을 제시, ③기존 발전소 효율을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EPA의 검토프로그램(NSR, New Source Review)을 개선, ④ 각 주의 배출량 관련 지침 및 계획 발표를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제111(d)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청정전원 공급능력 확대 및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청정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예로 2021년 3월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3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건물·제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여 프로그램, 태양광·지열·에너지 저장 등 관련 실증(demonstration) 프로젝트 등을 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연장 여부 등 관련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정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 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완화된 기준(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모델의 연비를 32.2mpg 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연비 상향 비율도 1.5%로 하향조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보다도 강화된 수준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청(EPA)은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에 의거하여 소형·중형 차량에 대해 2027-2030년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원(multi-pollutant) 배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다. 동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승용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해 2027-2030년 새로운 연비기준 개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부는 대형 픽업트럭에 대해 2028-2030년 연비기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2021년 8월 2023-2026년 제조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연비·배기가스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조 모델은 2022년 모델에 비해 연비 기준이 10% 상향되어 38.2mpg가 상향되고, 이후 2024-2026년 모델은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기준(2023년 모델 36.8mpg)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환경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규 기준이 적용될 경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0억 톤 가량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경트럭 신규 판매의 50%를 BEV(배터리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EV(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무배출차량(ZEV)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5년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그리고 2019년 5월 15일 제3차 회의를 다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 달러로 연방정부 지출액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기준 강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 상향 등을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14005)을 발표하였다.

동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미국산 부품 인정기준을 상향, ② 미국산에 적용되는 가격 특혜 기준 상향, ③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조치의 이행을 위한 담당기관 신설, ④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미국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⑥ 미국산 우대조치의 예외적용에 대한 공지 및 보고의무 절차 마련 등 바이 아메리칸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¹⁰⁵⁾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내 Made in America office는 관련 연방조달규정 개정안을 공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말, 연방조달규제위원회(FAR Council)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달 기준을 상향하였다. 2021년 1월부터 원재료 등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아 연방정부 조달 대상으로 허용되도록 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 아메리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Made-in-America'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조달 관련한 바이 아메리칸 규정 준수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05) U.S. Federal Register(2021), "A Presidential Document by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n 01/28/2021" 참고.

※ 이 기준은 2024~28년 65%, 2029년 75% 상향 예정

또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던 ‘가격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정하여 강화하였다. 미국산 제품에 주는 가격특혜 비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국방 조달의 경우 약 50% 가격특혜를 설정해 놓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의 제안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20%(대기업) 또는 30%(소기업) 인상하게 되는 구조이다.

특히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 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미 FTA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신기술 등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서의 장점을 산업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를 통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ITC 제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337조 조사는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할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ITC 절차는 1년 정도에 완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추세이다.

선출원주의 도입을 위한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전국 이래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즉,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은 지재산 출원의 증가와 국제적 조화를 위해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법에 의하여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 전환되었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 관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및 우선심판을 실시하였다. 2023년 2월부터는 암질환 대응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허권 보호 및 품질을 강조하였고, ICT, 의료 및 바이오 분야 특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성 특허변호사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재산 분야에서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와 USPTO는 산업계, 학계, 비영리 단체 및 정부의 대표와 함께 USPTO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혁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NPE(Non Practicing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NPE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엔테믹 이후 전체 특허소송의 제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NPE들이 제기한 특허소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60% 수준의 특허소송을 NPE가 제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다수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주요 원고는 Cedar Lane Technologies, Patent Armory, WSOU Investments 등의 NPE였다.

미국 정부는 2013년 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NPE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¹⁰⁶⁾를 발표하였고 미국 내 소송남용을 억제하는 의회 입법,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정부기관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방 법원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IPR(Inter Partes Review; 무효심판) 제도를 특허심판원(PTAB)에 도입한 이후 NPEs에 의한 소송이 감소하였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IPR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였지만, 2021년에는 IPR 절차에서 특허심판관의 심결에 대하여 USPTO 청장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정한 특허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의원들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 있고, 특허괴물의 피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106) 5개의 executive action은 i)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ii) 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iii) 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iv) 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v) 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 수행

위한 특허개혁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원고인 특허피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피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피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은 유럽, 중국, 일본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지역)(IP5; Intellectual Property 5)을 이루고 있다. IP5는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양자간 지재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9년 1월 29일부터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예를 들어 미국)에서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 1월 29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2011년 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 받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최초 심사의견서 발송 기한을 기존의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개선 정책이 실시되었다.

2023년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약 18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활용하면 USPTO에서 약 1~3개월 정도이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 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미 특허청간 보다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가 2015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한·미 특허청이 함께 선행기술 조사를 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0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23년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정책, 심사관 역량 강화, 전문가 인력교환, 지식재산 분야에의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발명의 심사 정책 및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미 특허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혁신활동의 촉진·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한·미 FTA에서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의 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이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근거하여 설립된 범부처 기관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의 안보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를 승인 또는 불허할 수 있다. CFIUS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불허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투자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8월 13일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의 일부로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1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FIRRM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 발표(2020년 1월 13일) 등을 거친 후 정식 발효(2020년 2월 13일)되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지분 취득으로 미 사업체를 통제(control)하는 거래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법 시행으로 CFIUS 심사 대상은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민감한 지역 인근 부동산 취득,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및 중요 기술(critical technology) 관련 업체, △미국인 개인정보 소유·수집 업체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 14083)」은 국방생산법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CFIUS가 심사 시 고려하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영향, △미 기술 리더십에 관한 영향, △과거 거래의 맥락상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 트렌드 △ 사이버 보안 위협,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에 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느 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달러(중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중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중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서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높이고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 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3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 공급 입찰에서 2005년~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8,20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1억 5,400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를 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2개 정유사들이 7,460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5,208만 달러의 민사배상금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유죄인정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약 총 14.3억 달러이다.

이와 같이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가 확정된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는 2019년 7월 11일 반독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즉, 종래에는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사건의 처벌 수준을 정하는 단계(sentencing stage)에서만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고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소검토(charging stage)에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을 발표하였다.¹⁰⁷⁾

이는 법무부 반독점국이 반독점 형사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 프로그램(leniency)에 변화를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종래 제1순위 자진신고자만이 형사기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가담자는 유죄인정합의(guilty plea)와 벌금부과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아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를 경우 제1순위 자진신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강력한 자율준수 프로그램(robust compliance program)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종래 어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이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107) <https://www.justice.gov/opa/pr/antitrust-division-announces-new-policy-incentivize-corporate-compliance>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협조에 의한 감경가능성을 인정해 온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¹⁰⁸⁾

이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새로 발표한 바 있으며¹⁰⁹⁾, 사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침상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범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성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마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고액의 형사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당하거나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까지도 실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카르텔 예방 설명회는 국내에서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한편,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하여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개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수평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 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6월에는 수직결합심사지침(Vertical Merger Guide-

108)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remarks-new-york-university-school-l-0>

109)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81891/download>

lines)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수직합병에서 잠재적인 반독점적 효과에 대한 기술, 반독점적 피해의 잠재적인 요인으로서 봉쇄(foreclosure)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과 경쟁상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봉쇄 및 경쟁자의 비용 상승의 잠재적인 경쟁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기술, 이중마진화(double-marginalization)의 제거가 수직결합의 반경쟁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수직결합 특유의 합병 효율성(cognizable merger efficiency), 수직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분석 방법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다수의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Hart-Scott-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거래가 HSR법에 의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업적 거래기준(commerce test), 거래규모 검증기준(size of transaction test) 및 사업자규모 검증기준(size of pers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 즉, 어떠한 기업거래가 상업적인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의무가 결정된다.

HSR법상 2019년도 의무적 사전신고 기준 요지 ¹¹⁰⁾		
(단위: 백만 달러)		
거래규모 기준	사업자규모 검증기준	의무적 사전신고 대상 여부
90 이하	적용 없음	비대상
거래규모가 90초과~359.9미만	한 당사자의 순 매출(net sales) 또는 총 자산(total assets)이 180이상이고, 다른 당사자의 연간 순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80 이상인 경우	대 상
359.9 이상	적용 없음	예외 사유 없는 한 대상

이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110)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04/pdf/2019-03396.pdf>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우선 30일간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동안 1차 심사(initial review)를 거치게 된다. 경쟁당국에서 1차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 ET)를 부여한다. 반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1차 심사 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추가정보요구(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request)를 하게 되고, 심사 기간은 당사회사와 경쟁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42,5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2019년 기준).¹¹¹⁾

기업결합 심사청구 시에는 심사비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하여야 하고, 심사비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규모(백만 \$)	신고비용(filing fee)
90 이상-180 미만	\$45,000
180 이상-899.8 미만	\$125,000
899.8이상	\$280,000

소비자보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딧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111)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3/ftc-publishes-inflation-adjusted-civil-penalty-amounts>

한·미 FTA 등 협력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워싱턴, 2016년 싱가포르, 2017년 뭍바이 등)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각급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2017년 1월 20일 이루어졌으나 경쟁당국 고위급 주요 인사 임명은 지연되었다. 즉,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임명은 행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말(Makan Delrahim, 9월 27일 상원 인준 완료)에 이루어졌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Joseph Simons 및 4인의 상임위원 임명은 2018년 5월에 이루어졌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경우 신임 Makan Delrahim 차관보의 지도하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합병심사에 있어서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았던 수직 합병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입증함으로써 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예: AT&T-Time Warner Cable 건). 또한 카르텔 법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서, 특히 2019년 11월에는 각 검찰 및 FBI와 합동으로 조달 담합 기동타격대(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를 새로 출범시킴으로서 미 정부의 조달과 관련한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¹¹²⁾

112)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delivers->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특별한 정책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나 현재의 미국 경쟁법이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총 20회의 공청회를 통하여 미 경쟁법의 전반에 걸친 진단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의 제도 및 법률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의회, 학계 및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독과점화 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 모색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각기 시장상황 및 경쟁당국 법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에서는 이들 대규모 기술기업의 사업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합병심사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¹¹³⁾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2020년 10월 전격적으로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휴대폰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웹브라우저개발자 등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고 자사 프로그램이 경쟁자들에 비해 특혜적 혜택을 받아온 점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글이 온라인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는 등이다. 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른바 빅4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미 경쟁당국의 조사 및 조치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

remarks-procurement-collusion-strike

113) ①(하원)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judiciary-committee-launches-bipartisan-investigation-competition-digital>

②(상원) <https://www.judiciary.senate.gov/meetings/09/17/2019/07/23/2019/oversight-of-the-enforcement-of-the-antitrust-laws>

③(FTC)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09/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oversight-federal-antitrust> 및 ④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2019/11/prepared-statement-federal-trade-commission-house-judiciary-subcommittee>

⑤(DOJ) <https://www.justice.gov/opa/speech/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testifies-house-judiciary-subcommittee> 및 ⑥ <https://www.justice.gov/opa/speech/statement-assistant-attorney-general-makan-delrahim-us-senate-subcommittee-antitrust>

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 경쟁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쟁당국의 설립 및 법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 사건 처리의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적절한 방어권의 보장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 법집행에서의 규범을 다자간 규범으로 정립하기 위한 미 법무부 주도의 노력의 결과 2019년 5월 ICN CAP (Competition Agency Procedure)를 마련하게 되어, 각 당국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¹¹⁴⁾ 그간 경쟁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법제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논의도 미국 주도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114) <https://www.justice.gov/opa/p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adopts-framework-competition-agency-procedures-and>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 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 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에 따르면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¹¹⁵⁾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115)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2022년 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라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폭등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를 확보하기 어려워하던 미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제정되었다. 주로 제기되었던 이슈인 체선·체화료(demurrage and detention) 부과, 운송거부, 보복행위 등에 대해 해운업체에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광범위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처벌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련 규제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노동챕터(제19장)에 의한 노동협의를 거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제22장에 의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었고, 이는 2019년 1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동일하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 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기본 노동권(Fundamental Labor Rights)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단, ILO 핵심협약 가입 의무화는 아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한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이외에도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자에게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사법 절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양 당사국 중 어느 접촉선(Contact Point, 우리측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미측은 미 노동부 Office of Trade and Labor Affairs,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에라도 시정 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 상대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당사국의 노동부 및 적절한 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구성하여 노동챗터의 이행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중의견제출 등을 통해 한미간 노동관련 이견이 발생하여 타방 당사국 접촉선에 서면 협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양 당사국은 사안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협의회 등을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 요청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등 한미간 FTA 제22장에 따른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노동 챗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노력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즉, 그런 경우에는 문제제기 당사국은 한미 FTA 제22.7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에 따라 양국의 통상장관이 의장인 공동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하여 패널 판정을 거쳐 금전적 보상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정책을 바탕으로 수입용 외환을 우선 분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므로, 이 밖의 방식을 통한 수입 규제는 다른 중남미에 비해 덜 엄격한 편이었으나, 정부재정 부족을 관세로 충당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4.5% : 원자재 및 자본재
- 9%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3.5% : 각종 공산품
- 13.5~18%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18~25.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1.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6%,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품목과 일부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 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 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 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와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 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외환제도는 과거 3가지 공식 환율을 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부터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된 이후 2019년부터 공식환율 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경제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민간 거래소에서 형성된 환율을 중앙은행에 통보하면 중앙은행은 익일 14:00까지 공식환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

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조하면서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외환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éc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년 12월)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RCAMER)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시험 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여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면서 동 의무화 추진은 백지화되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 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차베스-마두로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대신 발주처의 사전 내부검토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 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년 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현지화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외환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현지인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항공권을 판매하여도 해당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공식 환율이나 은행거래환율로 달러화 환전이 되지 않아, 일부 항공사는 노선취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남은 항공사들 역시 편수를 줄이거나 비행좌석을 줄이고, 볼리바르화 판매를 최소화하는 대신 달러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해외 통신업체에 대한 접속료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부터 가입자들의 국제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 틀을 갖추고 있다. 2017년 12월 승인된 〈외국인 투자법〉은 베네수엘라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칙,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석유·천연가스, 광업, 통신 및 소셜 미디어 등 전통적으로 국가이익과 관련되었다고 규정된 분야는 토지법, 화석연료법 해당 영역을 규제하는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0월 〈국가 발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반(反)봉쇄법〉을 제정하여 국외의 주체(미국의 제재로 인한)에 의한 피해 보상과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 시에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문서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자와의 비밀 계약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높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통신조직법〉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 개정과 2006년 석유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5월 제정된 <화석연료법>에 따르면 PDVSA와 외국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시 PDVSA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PDVSA, 외국과의 합작 회사 또는 Orinoco 석유 벨트 협회 계약에 따른 석유 기업은 모두 유정에서 추출된 석유 배럴당 33.33%의 동일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수출 가격의 0.1%에 대한 수출등록세가 부과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법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 연간 총소득 대비 34%
- 부가가치세 : 연간 총소득 대비 16%
- 사회보장세 : 기업위험도에 따라 연간 총소득 대비 9 ~ 11%
- 과학기술개발기여금 : 경제활동 분야에 따라 0.5~ 2%
- 실업기금 : 직원 급여의 2%
- 주택의무 저축기금 : 직원 종합 급여의 2%
- 국가마약방지기금(FONA) : 연간 수익의 1%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20-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8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간합동기구인 투자진흥위원회(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동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노동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 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 조정되지만, 마두로 정부 취임 후 2022.3.15일 130볼리바르로 인상된 이래 (2023.2월 기준 3.6미분) 동결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2022년 초 미국 제재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퇴직자, 연금 수급자들에게 <경제전쟁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2024.2.1.부터 경제전쟁보너스를 월 60달러로 조정하고 식량 보너스는 40달러로 유지하여 월 최저 종합 소득을 100달러로 인상하였다.

베네수엘라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월 최저 종합 소득은 ‘최저임금 + 전쟁보너스 + 식량보너스’로 구성되는데 2024.2월부터 인상되는 금액은 최저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조금이 인상된 것으로서 기초생계를 영위하기 어려

은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주는 기업의 연간 소득의 15%를 1~4개월치 월급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해야 한다.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퇴직금은 3개월에 15일치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며, 자진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만큼의 위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후 2년 동안은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며,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익의 최대 100%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특별한 경제 상황의 경우 베네수엘라 행정부는 이 비율을 60%~80%로 조정할 수 있다. 청산의 경우에는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100%까지 송금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2003년 이후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강력한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만%에 달할 만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마두로 정부는 2018.8월 <불법 환전대응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여 외환통제를 완화하고, 정부 공시환율을 비공식 환율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2019.10월 화폐 액면가를 100,000:1로 절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2021.1월 베네수엘라 은행 내 달러 계좌 개설 및 달러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및 자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없어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은행 내 달러 계좌를 주계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내기업과 제3국기업 간 거래에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및 송금의 원활을 위해 제3국의 은행을 이용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외환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3년 300%대로 떨어졌으나 달러 거래 비중은 50% 이상에 이르렀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달러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2022.3월 볼리바르 사용 활성화 및 세수 증액을 위한 목적으로 新금융거래세법(IGTF)을 도입하여 법인 및 자연인의 외화거래에 대해 3%의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IGTF세는 베네수엘라 총 세수의 13%를 차지하며, 볼리바르 사용율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12-18%의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베네수엘라는 한 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 위기로 다국적기업의 철수, 국내 기업 운영 규모 축소, 인프라 노후화 등 다수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 정상화 및 국제 유가 반등 등 외적 환경 호전될 경우, 오리노코 지역 초중질유 개발 및 풍부한 지하자원(금 등) 개발 등은 유력한 투자 진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마두로 대통령도 재임 시기 국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Pro-competencia의 활동 영역은 축소되고 있었으나,

2019.10월 반봉쇄법(La ley antibloqueo)을 마련한 이후, 주재국 경제를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수정, 수출입 확대독려 및 민간투자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및 장기간의 낙후된 투자환경으로 단기간내에 경제상황 변화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 이후 마두로 정부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예컨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제 수치고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9.10월 반봉쇄법을 마련한 이후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자유경제시장시장을 천명하고 가격통제 등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기업에 가했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로 주재국 시장에 부족한 물품공급 및 외화증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년 12월 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 진출

베네수엘라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볼리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① 일반관세법(1999.7.28) ② 일반관세법 이행을 위한 최고 법령(최고법령 제29349호(2007.11.21.), 최고법령 제1272호(2012.6.27), 최고법령 제2795호(2016.6.8.) 등)을 통해 관세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0%, 40%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발간한 '2023년 세계관세현황(World Tariff Profiles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볼리비아 평균 관세율(최혜국대우-MFN 적용)은 11.7%이며, ①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3.5%, ②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1.4% 이다.

주요 수입품별 평균·최대 관세율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동물 관련 제품	39.7	40	12.8	20
유제품	40	40	18.5	30
과일, 야채, 식물	40	40	14.7	40
커피, 차	40	40	17.4	40
곡물 및 곡물 조제품	40	40	11.0	30
유지류	40	40	12.1	20

	최종양허세율 (Final bound duties)		최혜국대우 (MFN applied duties)	
	평균	최대	평균	최대
설탕, 과자류	40	40	14.8	30
주류, 담배	40	40	23.8	40
면직물	40	40	11.0	15
기타 농산물	40	40	9.4	20
어패류 및 관련 제품	40	40	17.2	20
광산물 및 금속제품	40	40	9.1	40
석유제품	40	40	9.8	15
화학제품	40	40	6.2	20
나무, 지제품	40	40	14.9	40
섬유	40	40	17.9	40
의류	40	40	38.7	40
가죽, 신발류 등	40	40	15.9	40
비전자 기계류	39.8	40	4.1	30
전자 기계류	40	40	7.8	20
수송 장비류	39.9	40	7.0	30
제조품	40	40	11.5	40

자료: WTO-2023 세계관세현황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의류, 섬유, 커피, 차, 유제품 등)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일반관세법 2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일례로 볼리비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최고 법령 제4211호(2020.4.8.)를 공포하여 ‘밀’ 수입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또한, 최고법령 제 4579호(2021. 9. 2.)를 공포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수입 대체 정책 장려를 위해 주재국의 농축산업과 제조업 분야 자본재, 건설 및 광산 중장비, 냉동차량을 포함한 대형 화물차, 제조플랜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국가 가운데, 멕시코·칠레의 경우 볼-멕시코 경제보완협정 66조(2010.5.15.), 볼-칠 경제보완협정 22조(1993.4.6.)에 의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쿠바의 경우, 볼-베 경제보완협정(2011.3.31.), 볼-쿠바 경제보완협정 47조(2000.5.8.)에 따라 100%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관세법 28조 및 133조에 따라 △국제 협약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사무소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볼리비아 내 국제 박람회 참여 물품, △군사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항공산업 목적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2006~17년간 액화가스 또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정책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바 있다.

◉ 2023년 기준,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5~40
광산품	0~15
화학제품	0~20
플라스틱/고무제품	0~20
가죽제품	5~40
종이 및 지제품	0~20
섬유제품	5~40
가방 및 신발, 기타 악세서리류	5~40
금속제품	5~20
전자가전제품	0~20
수송기계류	0~15
광학제품	0~20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어패류 포함)	0~20
식물, 야채 및 종자	0~20
과실류	5~30
커피 및 차	5~40
곡식류	5~15
음료 및 주류	10~40

출처: 볼리비아 재정경제부.

<https://www.economiayfinanzas.gob.bo/viceministerio-de-politica-tributaria.html>

수입부과금

볼리비아 정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탄화수소특별세(IEHD: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개혁법 제843호(1986.5.20.)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세율은 14.94%이다. 아울러, 동 법에 따라, 담배류, 주류 등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가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Resolución No.102200000031) 담배류에 대해서는 ICE 가격의 5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1.82~15.40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한편, 최고법령 제27190호(2003.9.30)에 따라, 볼리비아 내 탄화수소 관련 제품 상업화를 위해서는 탄화수소특별세(IEHD: Impuesto Especial a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가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Resolución No.102200000027), 품목에 따라 최대 리터당 8.22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이밖에 일반물품에 대한 창고 사용료는 첫 5일간은 무료이나, 이후 15일마다 톤당 1.2 USD가 부과되고,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후 15일마다 톤당 1.5 USD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관세법 117조는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유기물품(abandono tacito)으로 분류된다. 상기 물품은 일반관세법 154조에 따라, 유기물품통지서 발급 이후 20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관세청 통관절차 지침서(Guía básica de Importación y Exportación)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사업자 등록(el Padrón de Operadores de Comercio Exterior)을 하면서 개시되고, ② 통관절차정보시스템(SIDUNEA++)에 수입신고서(Declaración Única de Importación (DUI)) 등록, ③ 수입신고번호 부여, ④ 기타 관계서류 제출, ⑤ 수입신고서 승인 후 3일내 관세 납부, ⑥ 시스템상 심사 채널 배정, ⑦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⑧ 출고 및 심사 완료 후 2일 내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 심사 채널 배정 결과 녹색(Verde)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황색(Amarill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통상적으로 24시간내 통관 절차 완료), 적색(Rojo)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인보이스(invoice)와 대조·검사하게 된다(통관까지 최대 48시간 소요).

통관을 위해서는 일반관세법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 세관은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해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 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 세관이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관세법 148조에 따라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반관세법 85조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상품이나, ② 국가의 안보 및 ③ 재정경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①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유해한 상품(질병에 감염된 동식물, 방사성폐기물, 오존파괴물질 등), ②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e Inocuidad Alimentaria)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농식품, ③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④ 볼리비아의 안보 및 재정경제시스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품(해외복권, 무기, 탄약, 폭발물, 중금속 의류 및 약제사리 등), ⑤ 여타 규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의 경우 볼리비아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고로 손상된 차량, △1년 이상 경과된 중금속 승용차(HS 87.03) 및 오토바이(HS 87.06), △3년 이상 경과된 10인 이상 탑승 가능한 중금속차(HS 87.02) 및 화물차(HS 87.04), △LPG 사용 차량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¹¹⁶⁾

또한, 최고법령 제572호(2010.7.14.)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위한 사전 허가(autorización) 혹은 인증(certificación)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광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류, 무기류 등이 있다.

수입품별 사전 허가 및 인증 담당 기관

- 1)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동·식물성 오일, 가공식품, 동물용 의약품, 비료, 살균제·제초제·살충제, 목재가구 등
- 2)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야채 추출물, 유제품, 유기 화합물질, 의약품, 향수, 화장품, 비누, 세정제, X-ray 필름, 기저귀·패드, 주사 바늘 등
- 3) 내무부(Ministerio de Gobierno)- 산성 물질, 산화제, 용매 등
- 4)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동전·지폐, 우표, 여권, 신분증, 세금 관련 서류, 주식 관련 서류 등
- 5)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총기, 탄약, 폭발물, 화학 무기 등
- 6) 기획개발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오존층

116) 출처: 볼리비아 관세청- <https://www.aduana.gob.bo/aduana7/faq-page/1292#t1292n90185>

파괴물질 등

- 7) 농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Rural y Tierras)- 메틸 브로마이드 등
- 8) 환경부(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Agua)- 석면,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등
- 9) 원자력 과학기술연구소(Instituto Boliviano de Ciencia y Tecnología Nuclear)-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물질 등
- 10) 정부오존위원회(Comisión Gubernamental del Ozono)- 인체·환경 위해물질, 오존 파괴물질 등
- 11) 국립탄화수소청(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 및 관련 제품
- 12)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차량 매연) 포함 제품, 천연가스 자동차 및 액화석유가스용 압축 가스 강철 용기, 측정 기기 등
- 13) 통신 및 운송 규제·감독원(Autoridad de Regulación y Fiscalizació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송출장치, 무선·원격 장치 등
- 14)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Servicios y Vivienda)- 항공기 및 차량 등

담배류 수입을 위해서는 국립농식품검역청(SENASAG)과 보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구체 요건은 최고법령 제29376호(2007.12.12.)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의약품 관련 법률 제1737호(1996.12.17.), 필수약품 관련 최고법령 제25235호(1998.11.30.) 및 제3376호(2017.10.2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허가는 동 품목이 볼리비아 영토에 도착하는 시점에 유효하여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최고법령 제4069호(2019.10.30.)를 통해 △1947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1994년 GATT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칙들을 마련하였다.

상기 불공정무역관행 심의는 재정경제부 세무정책담당차관실(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 a través del Viceministerio de Política Tributaria)에서 관할한다.

2012년에는 감자류에 대하여 90일간 예외적으로 임시세이프가드 조치가 작동된 바 있으며, 동 조치는 2012년 6월 20일 동 품목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이 달성되었다는 판단 이후 해제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상품 경쟁력 및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최고법령 제 24498호(1997.2.17.)을 통해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istema Boliviano de Normalización Metrología, Acreditación y Certificación, SNMAC)을 설립하였으며, 동 조직은 △국립표준계량원(Instituto Boliviano de Metrologia, IBMETRO), △품질표준원(Instituto Boliviano de Normalizacion y Calidad, IBNORCA), △승인인증청(DTA : Direccion Tecnica de Acreditac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표준원은 볼리비아 표준 수립, 볼리비아 표준 부합여부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표준계량원은 볼리비아의 표준계량체계 전반을 총괄하며 계량역량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은 생산 발전부(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y Economia Plural)가 총괄한다.

최고법령 제26510호(2002.2.21.)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2016.1.8)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성분 중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의 비율에 따라 라벨 내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고법령 제2452호(2015.7.15.)는 유전자변형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사항(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내용을 세모 모양의 표시 안에 GMO 문구 기재)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법률 제3467호(2006.9.12) 및 최고법령 제28963호(2006.12.6)에 따라, 3년 이상된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방출량 및 오존 파괴 물질 여부에 대한 환경평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게 되며, IBMETRO가 동 측정결과 검토 후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법률 제15629호(1978.7.18.)에 따라,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된다.

일반관세법 26조는 헌법에 따라 비준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부가 관련 최고법령에 의거하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권리, 반덤핑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며, 최고법령 제181호(2009.6.28.)에 의해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 법령 2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국내시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 상품 및 수입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는 WIPO 회원국으로서 1993년 이래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당사국이다. 일반관세법 86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cuerdo relativo a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relacionados con el comercio)’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27938호(2004.12.20)에 의해 설립된 지적재산권보호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생산발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리비아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신현법(2009.2.7.), △국내법령

(상표권에 관한 법률(1918.1.15.), 영상물 관련 법률 제1302호(1991.12.20.), 저작권법(1992.4.13.) 등) 및 △안데스공동체 위원회 결정(제486호, 제351호)에 의해 규율되며, 산업재산권은 안데스공동체위원회 결정 제486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또한, 발명 및 실용모델은 특허로서 보호되며, 통합회로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등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반면, 저작권은 안데스 공동체위원회 결정 제351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의 GATS 관련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에서 정기적인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subsidiaries)를 설립해야 하며, 볼 정부가 구체적인 양허 조건을 결정한다. 외국인은 국경 50km 이내에 있는 토지 소유가 불가하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관리자(managers), 경영진(executives), 전문가(specialists)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및 내국인 대우 보장 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동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unbound). 볼리비아 주재 외국기업 자회사의 직원 중 외국인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 15%는 고위직, 관리자, 경영자 및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서비스

금융서비스법 제393호(2013.8.21.)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향상 및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CEF : Consejo de Estabilidad Financiera), 재정경제부, 기획개발부, 중앙은행, 금융체제감독기관(ASFI : Autoridad de Supervision del Sistema Financiero)이 금융정책 관련 제언을 하고 결정된 정책을 이행한다.

통신 서비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는 ① 법의 적용범위를 우편서비스까지 확대, ② 방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③ 소비자보호 조항 포함, ④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신설된 공공사업부 내 통신담당차관실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통신교통규제감독기관(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이 설립되어 동 분야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민영화되었던 국영통신공사(ENTEL)는 2008년 다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볼리비아는 GATS 협정상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일부 자유화를 위한 공약을 하였으나, 데이터송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볼리비아 내 상업적 주재 요구, 장거리서비스 공급 제한 등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볼리비아 신헌법(2009.2.7)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20조는 ① 내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우선하며, ② 모든 외국인 투자는 볼리비아 사법관할권 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중재법 제129조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볼리비아법에 의하여 볼리비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신헌법은 볼리비아 국민들이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불가분하며 절대적인 소유권을 향유하는바, 이의 관리는 국가에 귀속되며, 따라서 이의 탐사, 채굴, 산업화, 수송 및 상업화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5월 1일 세계은행(World Bank)측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 탈퇴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이로부터 6개월 후 탈퇴가

공식 발효하였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는 Quiborax 및 Euro Telecom과의 소송에 대한 ICSID 판결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Euro Telecom에 1억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5월 ICSID는 칠레 광물 회사인 Quiborax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볼리비아 정부가 동 회사에 48.6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최종적으로 2018년 7월에 42.6백만 달러를 Quiborax에 지급한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촉진법 제516호(2014.4.4)을 공포하였다. 동 법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이익 보장,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11조는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① 볼리비아 근로자 또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② 투자 분야 관련 대학이나 기술학교에 장비나 용품을 기증하거나, ③ 투자 분야 관련하여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 내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총 근로자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은 1996년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18년 12월 4일 볼리비아 정부가 동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2019년 6월 4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되었다.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동 협정에 따른 보호가 보장된다.

법인·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볼리비아 상업등록 전자관보(Gaceta electrónica del registro de comercio de Bolivia)에 고시해야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NIT)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약 85달러(584.50Bs)이다.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2천 달러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 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만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현금 반출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반출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5만달러 이하의 현금 반출시, 2020.10.1.부터 어플(AN Viajero)로 신고가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볼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25%의 법인세율(Impuestos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IUE)을 적용받는다. 또한 광물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우에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광물법 제 535호(2014.5.28.)에 따라, 광물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물로열티(Regalia Minera)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최고법령 제28037호(2005.3.7.)에 따라,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10년 동안 법인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체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법률 제2685호(2004.5.13.)에 따라,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 혹은 기존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IUE)가 면제(최고법령 제2685호)된다.

볼리비아는 경쟁정책에 관한 일반법(경쟁법)이 부재하나, △신헌법(2009.2.7.), △최고법령 제29519호(2008.4.16.),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1994.10.28.)에서 자유경쟁체제 보장 및 독·과점 행위 규제 등 경쟁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헌법 314조는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및 상품의 유통·생산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협약 등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316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의 필요에 필수적인 생산 및 상업 활동의 경우 국가가 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법령 제29519호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부문별 규제 시스템 관련 법 제1600호 15조는 통신, 전력, 교통 등 특정분야의 자유경쟁 체제를 보장하고 업무상 방해·왜곡·제한 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

디지털 무역 장벽(전자상거래)

최근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볼리비아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적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제164호(2011.8.8.)는 전자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법안으로, 4장(85조~88조)에서 ‘전자상거래(Comercio Electrónico)’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동 법안 85조는 디지털을 통한 재화·서비스 판매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일반 상법시행령(código de comercio)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86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88조는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서가 법적판단의 근거가 되며 계약서 미작성시 볼리비아 행정 당국의 처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일반법 이행을 위한 지침(Reglamento para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 (2013. 11.13.)) 56조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개인정보 사용시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 활용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혹은 사법당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취급(처리)주체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변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등.

상기 지침 9조에 따르면, 공공사업부, 기획개발부, 언론 담당 차관실, 교육부, 볼리비아정보사회개발청(ADSIB: Agencia para el Desarrollo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en Bolivia) 대표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위원회(COPLUTIC: Comité Pluri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y Comunicación)는 볼리비아의 정보 보안, 기술 주권, 개방형 표준기반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및 국민들의 기술정보 접근권 향상 관련 원칙 및 정책을 수립 한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을 위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 가운데 ‘상용목적비자’를 발급 (30일 체류,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증명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동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므로,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볼리비아에서도 유효하나, 한국에서 발급된 일반 운전 면허증은 볼리비아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다. 볼리비아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볼리비아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는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관

브라질 경제

세계 5위의 인구, 세계 5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과거 수입대체산업화와 보호무역주의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아직까지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상품 가격의 강세로 브라질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과 함께 취약한 산업경쟁력, 재정적자 심화의 대내 요인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이너스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6년 9월 Dilma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Temer 정부는 정부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산업통상서비스부, 기획부, 재정부를 통합하여 슈퍼 부처인 경제부를 신설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2019.6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메르코수르-EU FTA를 타결하였다. 2017년 1월에 협상을 시작한 EFTA와는 2019. 8월, 싱가포르와도 2022.7월

타결하였다. 2019년 3월 발효된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협정에 버스 및 트럭, 관련부품이 추가되었다. 당초 2020년 7월부터 버스 및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양국은 관세 철폐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2023년 100%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2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3선에 성공했다. 2023년 1월 출범한 룰라 신정부는 신재정준칙을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개선, 세제 개혁, 新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아마존 펀드 운영 재개 등 기후변화 대응, 열악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新성장추진프로그램(Novo PAC) 등을 추진하고 있다. Petrobras 등 공기업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메르코수르-EU FTA 재협상 추진 등 브라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대외 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도한 정부지출, 사회적 격리로 인해 위축된 소비·생산 등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으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2021년 4.99%, 2022년 2.9% 성장했다. 2023년에는 광물·농산물 등 원자재 수출 호조와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6%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브라질 교역 현황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 2016년 79억 달러)하였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

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79억불을 기점으로 한-브라질 교역은 침체에서 벗어난 브라질 경제에 힘입어 2017년 92억 달러, 2018년 88억 달러, 2019년 91억 달러, 2020년 82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한-브라질 교역은 전년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양국간 교역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11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원자재 수입 증가로 129.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하였다.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액이 수출액을 능가하면서 2020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20.97%), 자동차부품(14.73%), 농약 및 의약품(9.08%), 합성수지(7.75%), 원동기 및 펌프(6.18%), 철강판(5.05%), 전자응용기기(3.00%)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26.05%), 식물성물질(24.58%), 철광(16.36%), 육류(6.71%), 기호식품(6.04%), 곡식류(5.76%), 합금철선철및고철(3.95%) 등 1차 산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9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	5,495	-38.4	4,059	-17.3	1,436	9,554
2017	4,457	-18.9	3,445	-15.1	1,012	7,902
2017	5,505	23.5	3,702	7.5	1,803	9,207
2018	4,884	-11.3	3,908	5.6	976	8,792
2019	4,809	-1.5	4,296	9.9	513	9,105
2020	3,944	-18.0	4,237	-1.4	-294	8,231
2021	4,666	18.3	6,622	56.3	-1,956	11,288
2022	4,976	6.6	7,930	19.8	-2,954	12,906
2023	3,623	-15.6	5,841	-11.7	-2,218	9,464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022년은 1~10월 누적 수치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는 2018.5월 서울에서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양측은 2021년 8월 7차 협상이후 8차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이, 메르코수르는 농산물, 광물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브라질 투자 현황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80~2023년 사이 한국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 신고 누적액은 99억 6,6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누적 투자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브라질 투자액은 6억 5,400만 달러, 2022년 1억 600만 달러, 2023년 1-6월 기준 투자액은 5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9-2023년6월) 한국의 대 브라질 제조업 투자는 14억 7,900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84.3%에 이르며, 도매 및 소매업(4.0%), 운수 및 창고업(3.0%) 등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2~2023년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누적금액은 11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기업도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제약 및 의류기기 분야 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의 수출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 부과,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 등 교역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와 진행 중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년 한국의 대 브라질 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
투자금액	767	742	460	394	222	272	654	106	500

* 자료: 수출입은행

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한 바도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대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발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 등 자국 내에서 주요산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Lula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수출진흥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 수입규제 강화,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11년 출범한 Dilma 정부로 이어져 「더 큰 브라질(Brasil Maior, 2011년 8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2016년 Temer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경제회복과 더불어 대외교역도 증가했다. 2018년 취임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전 Temer 정부의 정책을 이어 받아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 경제부처가 통합된 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19.6월 지난 20여년간 협상을 진행해왔던 메르코수르-EU FTA를 타결하였다. 그러나 EU의회가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기

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 무역협정이 비준되지 못하였다.

2023년 1월 룰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EU가 산림전용 방지 규정을 담은 별도 부속서한을 메르코수르에 제안하면서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재개되었다. 룰라 정부와 EU는 빠른 타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산림전용규정, 정부조달, 지재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FTA,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은 거의 타결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자 역내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공동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바, 현재 평균 13.6%인 공동관세를 점차 인하하여 현재의 절반 수준인 6.4%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개방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대외정치 변수 및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브라질 산업계의 입장 등은 내부변수가 브라질 개방정책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브라질 정부는 2021년 11월 5일 물가 억제를 위해 전체 수입 품목의 87%에 대해 관세(메르코수르 공통관세)를 10% 내리는 한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수입 제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동 조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브라질 정부는 대외무역, 투자, 무역구제 등 대외통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우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으로 대외통상위원회(CAMEX)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 통상전략위원회(Commercial Strategy Council)는 의장인 부총리과 대통령비서실장,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외교부, 재무부, 농업축산부, 기획부, 공공혁신서비스부, 국방부, 광업에너지부 등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개최된다. CAMEX에는 최고 심의기구인 통상전략위원회 이외에도 차관급 회의체인 고위관리위원회

(GECEX: MDIC 장관 주재), 사무국, Conex(민간자문위원회), Cofig(수출금융보장위원회), CAT(관세율조정위원회), Confac(무역원활화위원회), Coninv(국가투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DIC내 대외무역국(SECEX)을 두고 브라질 대외통상 정책제정, 보호무역, 통상협상 등 대외통상 기본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서 관세청(SRF)은 수출입 허가, 통관,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국가통화위원회(CMN)는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된 국가정책(금융거래, 신용, 예산, 회계, 외환 등 국가 채무 정책)을 총괄하며, 재무부장관 및 브라질중앙은행장이 구성원이다, 브라질중앙은행(Banco do Brasil)이 동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는 2022년 기준, 약 15,000 여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정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 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데 합의하였다.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로 하였으나, 몇 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현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동 제도의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브라질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자(또는 판매자 등)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IPI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IPI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부과금액은 각각 CIF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CIF+관세+IPI+사회보장세가 적용된 가격(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 부과되는데,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간단한 계산방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서 (1-세율)을 나눈 다음 유통세율을 곱하면 정확한 유통세가 산출된다. ICMS

는 IPI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12~18%이다.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아래의 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8	%
공업세 (IPI)	22	%
유통세 (ICMS)	18	%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8.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CIF*수입관세율)	18.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가격	118.00	USD
공업세 (IPI)	22.00	%
공업세 산정가격: (CIF+I.I)*공업세율	25.96	USD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CIF*PIS율	3.52	USD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CIF*COFINS율	17.48	USD

CIF 가격	100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가격	164.96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 가격(CIF+I.I+IPI+PIS+COFINS)/1-유통세율} *유통세율	36.21	USD
최종가격((CIF+I.I+IPI+PIS+COFINS+ICMS)	201.17	USD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30년간 조세 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인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보장세), 주 세금인 ICMS(유통세), 시 세금인 ISS(서비스세)를 2가지 부가가치세인 CBS(연방세)와 IBS(지방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조세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2023년에 확정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SECEX는 1997년 1월부터 동 SISCOMEX를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1년부터는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 수입 절차가 단축되고 관련 비용이 자동 산정되는 등 SISCOMEX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수입절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금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출업자가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정품목 또는 일반품목인지 사전 확인
- 2)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 3)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 (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
- 5) 화물 도착 (운송사는 브라질 세관에게 화물 도착 알림)
- 6)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 7) 화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method)를 통해 4개 채널(녹색, 황색, 붉은색, 회색)로 분류
- 8) 화물 통관: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 1) 녹색 :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 2) 황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 3) 적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 브라질 수입건수 및 통관 소요 시간

년도	수입신고 건수	24시간 이내 통관	통관 평균 소요시간
2016	2,057,321	86.02%	34.15시간
2017	2,261,440	92.97%	23.33시간
2018	2,368,283	92.73%	23.88시간
2019	2,390,285	92.86%	19.53 시간

24시간 이내 통관은 녹색 채널에 의한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부터 국세청 통관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성화 등 위험평가방법 향상과 다수 내부 규정(ICMS 유통세 신고, 지불 및 증명 방법 단순화, 추후 수입신고서 수입자가 직접 작성, 수입절차 표준화 등) 변경 등을 통하여 통관 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성실무역업체(AEC)에 가입된 기업에게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Customs Clearance over Water)을 확대 실시하여 일부 해상화물 통관 절차의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 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 중 73위로서, 수입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파울루 지역 기준 약 30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375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8.5시간, 98.1달러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0.9% 해당하는 481건이 반덤핑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8건, 미국 49건, 인도 30건, 독일 20건, 멕시코 20건, 한국 19건, 대만 18건, 태국 15건, 러시아 15건, 남아공 15건, EU 12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① 플라스틱 및 고무

(22.7%), ② 화학제품 (21.6%) ③ 금속제품(21.4%) ④ 섬유(7.4%), ⑤ 시멘트·유리·세라믹 (6.2%) 순이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1년 16건, 2012년 14건, 2013년 43건, 2014년 39건, 2015년 35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가 지속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대폭 감소되면서 2016년 수입규제 조치는 28건, 2017년 17건, 2018년 18건으로 감소되었다가 2019년의 경우 33건, 2020년 18건, 2021년 39건, 2022년 23건의 수입 규제조치가 내려져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브라질은 33개국에 80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76건이 반덤핑 조치이며 4건은 보조금 관련 조치이다.¹¹⁷⁾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MDIC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압연실리콘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 등 우리 수출품목 중 6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판압연제품(후판) 및 압연실리콘철강, 나일론사는 재심을 통하여 5년간 반덤핑관세부과가 연장되었다. 승용차용타이어의 경우, 반덤핑 조치 기한이 2025년 1월 16일까지이나 현재 Art 109에 의해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117) 브라질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반덤핑'과 '보조금'으로 구분.

○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S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14.8), 일몰재심 조사(19.8), 2020.8 종료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 2016.6 종료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압연실리콘철강	2012.4	2013.6, 덤핑, 일몰재심(19.7)
	13	철강	평판압연제품(후판)	2012.5	2013.10 덤핑, 일몰재심(19.10)
	14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일몰재심조사(19.12)
	15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일몰재심조사(20.1)
2013년	16	화학	액상애피크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7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일몰재심조사(19.8) 2020.12 종료
	18	화학	버스트력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일몰재심조사 (19.11)
2014년	19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0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015년	21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2016.6 덤핑 판정
2017년	22	화학	니트릴 고무	2017.6	2018.8 덤핑 판정, 일몰재심조사 (23.8)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년 12월 브라질 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2012년 12월 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증장기(2013~ 2017년)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프로그램)을 도입,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 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IPI를 공제 받도록 하였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동 정책은 WTO 규정 위배 판결을 받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신자동차 정책 ‘Rota 2030’가 발표됐다.

Rota 2030는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 제고 등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Rota 2030 정책은 2018년 말 공식 발효되었다.

한편, 브라질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수출 증진을 위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등 태평양 동맹(PA)국가와도 개별적으로 자동차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대수 및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설정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

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 ① 카테고리 I: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 ② 카테고리 II: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 ③ 카테고리 III: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 장비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1938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법령737호) 하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점차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은 일명 플렉스(flex) 연료의 바이오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1993년 22%, 그리고 2023년에는 27%이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

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 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년 5월 도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한국식품연구원,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해알화 강제로 타격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

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 기업 외에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문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류, 안경, 전자제품, 신발 및 가방, 장난감, 시계, 컴퓨터 프로그램, 담배, 향수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은 2019년 상표의 국제 등록 관련 협정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했다.

2017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5,664건으로 외국인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INPI가 발급한 특허건수는 2010년 3,617건, 2015년 3,895건, 2018년 11,090건, 2021년 27,644건, 2022년 22,704건으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INPI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EBRAE(중소기업진흥청)과 INPI는 2016년부터 영세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특허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서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 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

(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1962년)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으며,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고, 하위법으로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으며 각 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며 시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투자 제한은 2015년 대폭 완화되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 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 (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 (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분 야	내 용	기 타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	2015년 연방법 13.097에 의해 M&A를 통한 외국인의 보건분야 투자가 허가됨.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9%(2021)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져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공급이 어려워 유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현지화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현지 부품 및 인력 사용의무가 여전히 우리기업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II)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순이익에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 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에콰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2022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7억 7,100만 달러, 수입은 약 2억 1,000만 달러로서 교역량은 9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9억 6,896만 달러)과 비교하여 약 1.2% 증가하였다. 2023년은 8월까지 약 5억 4,000만 달러를 기록 중에 있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년 9월 에콰도르 코레아 前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양국 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히 큰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에콰도르로부터의 원유수입 재개로 인해 비대칭적 구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으나 원유수입 중단으로 수입액이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對에콰도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콰도르가 2014년 말부터 국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입쿼터제, 셰이프가드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2017년 6월에 셰이프가드와 수입자동차 쿼터제가 철폐되면서 수출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바나나, 동괴 및 알루미늄 스크랩 등의 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동괴 및 알루미늄 스크랩 수입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이 4억 6,800만 달러로 급감했으나 2021년엔 9억 6,896만 달러로 1년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자동차 부품, 압연강판, 엔진부품 의료품(백신)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새우,

동괴 및 스크랩, 바나나 등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중단되면서 같은 해 전체 수입액도 9,4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9년 6월에 스팟성으로 수입 재개되었고, 2021년 8,600만불, 2022년 1억 1,200만불이 수입되었다.

무역수지 면에서는 비대칭적 구조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우리 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한국의 對에콰도르 교역 현황(2016년~2023년 8월)

(단위 : 천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월기준)
수 출	434,241	608,864	781,873	479,394	377,358	761,502	770,722	363,221
수 입	94,246	127,802	116,893	250,479	90,561	207,462	210,303	177,157
무역수지	299,267	481,061	664,980	228,915	286,797	554,040	560,419	186,164
교역규모	528,487	736,666	898,766	729,873	467,919	968,964	981,025	540,378

ㅇ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21년-2022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정제유	359,299	206.9	380,223	5.8
2	승용차	65,473	79.1	68,317	4.3
3	자동차부품	41,751	58.5	47,795	14.5
4	압연강판	25,704	92.6	4,959	-80.7
5	엔진 부품	15,979	5.5	19,959	24.9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21년-2022년)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21		2022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원유	86,289	0.0	112,510	30.4
2	새우	74,842	44.1	57,636	-23.0
3	동괴 및 스크랩	23,206	65.1	18,954	-18.3
4	바나나 등 과실류	13,806	-10.9	11,189	-17.8
5	냉동 생선	2,825	17.0	3,676	30.1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 천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80~) 누계
신고금액 (건수)	257 (9)	6,043 (5)	55 (1)	146 (3)	0 (0)	0 (0)	1,218 (6)	132,995 (217)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인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년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무역협정은 2014년 7월 17일 협상 타결

되어 2016년 11월 11일 서명되었다. 2017년 1월 1일 발효 이후 에콰도르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 참치, 새우 등 농수산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EU로부터는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등이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 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 미 상원은 GSP를 2022년부터 연장기로 하였다(2021년은 소급 적용).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 속광물 제품과 화훼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GSP 하 3-18% 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 꼬레아 정부 시절 에콰도르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09년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 갱신 불허 및 2012년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로 수배를 받고 있는 Julian Assange의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관 망명 허용 등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2017년 5월 모레노 대통령 취임 이후 꼬레아 前 정부 10년간 소원했던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중도보수 성향 라소 정부는 개방적 대외경제정책 아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해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경제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3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 대통령 정부는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부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코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 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7월 EU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제중재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국가주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7.5월 동 내용이 포함된 기존 통상협정들을 일괄 무효화하는 등 국가주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모레노 정부(2017.5월~2021.5월)는 미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무역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주요경제블록 가입과 관심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2017년 11월 에콰도르 정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무역 증진 및 향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MOU를 맺었으며, 2018년 6월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20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모레노 정부 뒤를 이은 라소 정부(2021.5월~2023.11월)는 적극적인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조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여 코스타리카, 중국, 한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멕시코, 캐나다, 도미니카(공)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야당의 탄핵 공세 등에 시달리던 라소 대통령의 전격적인 정부 및 국회해산 결정(2023.5월) 및 이로 인한 조기대선(2023년 8월 및 10월(결선))으로 2023년 11월 출범한 노보아 정부(2025년 5월까지 임기)는 대외개방경제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라소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인계받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 간 FTA(공식명칭 :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경우 지난 2015년 8월 25일, 코레아 정부 시절 서울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한 이후 2016년 1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협

상을 진행해오다 양국의 정치 일정과 무역협정 협상의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해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출범한 모레노 정부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대외 개방을 기치로 2021.5월 출범한 라소 정부가 직전 모레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2021.7월 한국에 협상재개를 제안하여 2022년 3월 2일 양국은 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4차례 공식 협상 및 양국 통상 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마침내 2023.11월 협상 타결에 성공하였다.

2018년 7월 에콰도르 정부는 제13차 태평양 동맹(PA : Pacific Alliance)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에콰도르의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2019년 7월 제14차 정상회의에 모레노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상국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PA 가입의 선결적 조건인 칠레, 멕시코와 높은 수준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해 왔고 칠레와는 2020년 8월 13일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22년 1월 콜롬비아 개최 제16차 PA 정상회의 계기 정회원국 가입 협상 준비를 발표하였으나 새우, 바나나 등 농수산물을 둘러싼 이견으로 멕시코와의 FTA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에콰도르는 2021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도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가입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 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안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에 폐지하였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함.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품, 건설 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

다고 발표하였으며,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에콰도르 세관(SENAE)은 고시 115호를 통해 신규 관세안의 세부 적용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본 조치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수입물품의 무게에 따라 1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밀수방지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 전반적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 신규 조치에 대해 안데스공동체(CAN)는 공동체와 WTO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6월 에콰도르 정부는 안데스공동체(CAN) 결의안에 따라 신규 관세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7월 6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590개 품목의 관세를 제거하였고, 30개 품목은 5%로, 20개 품목은 10%로, 나머지 21개 품목은 15%, 25%로 각각 축소하였다.

SECA로 에콰도르 측은 전체 수출가능 품목 중 92.8%의 관세를 철폐기로 한 바, 대표적인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품목인 한국산 승용차 및 화물차는 현재 35-40%의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철폐되고 현재 관세가 20%인 가전제품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화장품 및 라면 등 식품류, 건강음료 등 수출 유망품목들도 2-30% 수준인 현재 관세가 7-10년 내 철폐되는 등 SECA 협상 타결로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유망품목의 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같은 해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년 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양국 간 SECA에는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SECA를 통해 양측이 WTO 기준을 상회하는 규범(세이프가드 조치 시 보상체계 마련, 1년 후 점진적 자유화, 잠정조치(200일) 등)을 도입하여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한국 수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 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 2011년 8월 26일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년 9월 1일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년 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양국은 SECA를 통해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대부분 통관 절차의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결과회신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동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48시간 내 화물반출,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국은 SECA를 통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EU FTA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 확보,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도로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등 원산지 절차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 및 섬유 제품의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 연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자동차 및 부품, 중고 의류 등 약 130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 2010년 제정된 생산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 실행을 위한 규제시행조치 등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SECA 협정문에 따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야에서도 가격약속(Undertakings), 필수 정보 공개, 공공이익 고려 등 WTO를 상회하는 규범을 도입하였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횡수 제한(4×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횡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횡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년 10월 9일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친시장적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라소 정부는 2021년 6월 15일 42불 수수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였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U와 통상협정은 2017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으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對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양국 간 SECA 협상 타결로 이러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 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스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스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스 공동체(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년 8월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년 8월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년 10월 23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년 10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년 9월 10일 몇 가지 사항이 수정·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INEN에서는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되고,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INEN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라벨링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SECA를 통해 이러한 기술관련 규제에 대한 한국수출기업의 애로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술규정 개정 시 60일간 의견수렴 및 채택 후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적용, 기술규정 영문본 제공 등을 규정하여 수출기업의 원활한 기술 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적용 의무화 규정을 우리 FTA 최초로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불확실성의 대폭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TBT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
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국은 SECA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협) 미가입국인 에콰도르의 정부조
달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
은 에너지 다변화, 도로 등 공공인프라 재건, 스마트시티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이 높은 분야에서 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정부 및 공기업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공공 프로젝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에콰도
르 진출기업의 현지 거주요건 완화 노력 조항을 양국 FTA 최초 포함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조달 시장 진
출 시 차별 금지, 낙찰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 및 기술이전, 현지투자 요건 부과
금지 등을 명시하여 에콰도르의 자국기업 및 자국산 우선 관행을 개선하고 우
리 기업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위해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분쟁사건을 민사 혹은 형사 재판으로 넘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2013년에 68%에 달했으며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 가치는 총 1억 3천만 달러이다.

SECA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도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에콰도르 내 K-컨텐츠 및 제품이 소비 트렌드로 정착되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상표도 유명상표로 보호 가능, 非동일, 非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명상표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유명상표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한류 콘텐츠 지재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장치(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 침해시 집행규범(민현상 절차, 통관보류 등) 등)을 마련하였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12월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대외무역투자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로 명칭을 바꾸고(2019년 1월 ‘생산·통상·투자·수산부’로 변경), 부처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를 신설하여 투자유치기능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사업(BOT 등)은 모두 대외무역투자부가 공식 정부채널로 활동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시 세제 인센티브제공과 투자자보호도 투자유치전략위원회(CEI)로부터 투자계약 승인을 통해 제공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 및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 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 그리고 유생 동물을 재료로 하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국가 어업진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어업 활동은 에콰도르 어민에 국한되어 있으며, 새우 및 랍스터 어업선 역시 에콰도르인 소유여야 한다. 외국기업에 의한 어업 활동은 그 생산품이 에콰도르에서 가공될 것임을 보장한 뒤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광산 채굴권 및 화석연료 분야 역시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데, 화석연료의 수송은 에콰도르 국내 운송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권은 개인의 경우 에콰도르 태생에게만 주어지며, 법적 주체 역시 에콰도르 국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년 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년 6월 12일) 등으로 투자 외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라소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6월 ICSID 재가입에 서명하였고, 9월부터 발효되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 감면 등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야차이(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 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차이 프로젝트는 2018년 하반기 현재 신도시 건설 자체가 무기 연기된 상태이다.

에콰도르는 기본적으로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및 민관협력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법(Public Private Alliance Act)을 제정한 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해외투자유치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노보아 신정부는 전 라소 정부에서 번번히 추진이 좌절되었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Zona Franca) 설립법 등을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세계상의 제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산 및 투자 기본법’에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세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해외유출세를 2009년 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동 해외유출세를 5%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5월에 2021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경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경제법의 주요 조정 사항 중 하나가 해외송금세(ISD) 단계적 철폐이다. 2019년 2월 에콰도르 정부는 향후 4년 간 해외송금세(ISD)를 올해부터 1.25포인트씩 인하하여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LED 램프, 전기차(대중교통, 승용차), 서면임대주택 건설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면제하는 방안도 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년 10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 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GDP(십억 달러)	107.4	107.4	96.6	106.1	115.0
실질GDP 성장률(%)	1.3%	0.1%	-7.5%	4.2%	2.9%
인플레이션(%)	0.27	0.3	-0.3	0.1	3.74%
인구(백만 명)	17	17	17	17	18
수출(백만 달러)	21,606	22,329	20,227	26,280	32,655
수입(백만 달러)	23,019	22,393	17,781	25,725	33,048
무역수지(백만 달러)	-1,413	-63	2,446	555	-393
외환보유(백만 달러)	2,158	3,397	7,195	5,900	9353
외채(십억 달러)	36.8	58.5	63.1	46.5	48.1
1인당 GDP(달러)	6,318	6,260	5,520	5,978	6,412
실업률(%)	3.7	3.8	5.3	4.2	4.0

출처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에콰도르 재정부, 에콰도르 통계청, 국제통화기금(IMF)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석유 및 1차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

부문이 GDP의 14~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에서도 새우, 바나나, 커피 등의 수출 비율이 높아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88억 3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위 매장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원지역의 유전 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3년 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 개발을 통해 일 원유 생산량의 10% 이상을 생산해 왔으나 2023년 8월 국민투표로 동 유전의 영구 폐쇄가 결정되어 이로 인한 원유 생산량 및 국가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 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2019년 10월,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정책 및 수입창출 정책 시행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2020년부터 1일 원유 생산량을 59만 배럴까지 증산시키고 석유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일일평균 생산량은 52만 배럴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9월 기준 일일평균 45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5월 출범한 라소 정부는 석유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카카오,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 달러 수출로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3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

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으로 새우 수출이 급증하여 2017년 바나나를 제치고 석유에 이은 농수산물 최대 수출품으로 올라섰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년 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에콰도르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차지 비중이 2022년 기준 13%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칠레, 파나마가 잇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국이다. 2022년 기준 에콰도르 1위 수입국 역시 미국으로, 전체 수입액 대비 차지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수입액도 지속 상승 중에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5위 수입국이다.

◦ 수출 : 326억 달러(2022년 기준)

- 주요 수출품 : 원유, 새우,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 수출 상대국 : 미국, 중국,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 수입 : 330억 달러(2022년 기준)

- 주요 수입품 : 정제유, 석유부산물, 자동차, 의약품, 통신기기
- 수입 상대국 : 미국,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한국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에과도르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편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포함 자료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분증(Cedula) 번호만 있으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만 알면 차량 등록 정보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 간에도 이와 관련, 2019년 9월 정보통신부(MINTEL)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또는 교류는 본 법률 또는 관련 특별 법규에 따라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

65조.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판단 기준 :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행정명령을 발하는데, 동 행정명령은 다음 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1. 기본권과 자유권 이행을 증진·보장하는 법규의 존부
2. 개인정보 보호권의 실제적 보호를 보장·증진하는 독립적 국가 당국의 존부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정 법규의 존부
4. 개인정보 이전·교류의 처리에 관한 의무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개인의 원(原) 국가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여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비준된 국제 조약의 가입 여부
5. 국가 안전 및 방위 관점에서, 공공 당국의 시민 개인정보 접근시 통제 및 확인의 메커니즘을 정립한 특정 법률의 존부

66조. 적절한 보호 수준으로 판단된 국가에 개인정보 이전 및 교류 : 이전 조항에 정립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개

인 정보를 일반적 원칙에 의해 이전 또는 교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디지털 산업 및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법규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 국가 사례 참고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법령 제정 및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SECA에는 디지털 관련 내용도 비중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DEPA(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수준의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영화 및 드라마, 음악 등 K-컨텐츠 및 온라인 게임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영구적 무관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했고, 양국간 데이터 이전 허용으로 우리 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업 중 수집한 정보를 한국 서버로 이전하여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아울러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제품 판매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엘살바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 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미-도미니카공화국 FTA(2001), 중미-칠레 FTA(2002), 중미-파나마 FTA (2003), 미국-중미 FTA(CAFTA-DR)(2006),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중미 북부 3개국)-콜롬비아 FTA(2010), 중미-멕시코 FTA(2012), 중미-EU 제휴협정(2013), 엘-쿠바 부분무역협정(PSA)(2012), 엘-에콰도르 PSA(2017),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 중미-영국 FTA(2021년 1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엘살바도르간 한-중미 FTA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아울러 중미-영국 제휴협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0년초 예고되었던 전자 영수증 도입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왔으나 2022.8월 단행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세금문서(Documentos Tributarios Electrónicos, DTE)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엘살바도르 재정부는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2024.7월 모든 사업장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무역 및 투자 정책 2020-2050을 통해, 북미 및 중미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엘살바도르 기업이 합류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개척 수출 및 해외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기술 콘텐츠를 강화해 산업생산 및 서비스

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물리적, 디지털, 법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엘살바도르의 전체 수출규모는 71.15억 달러, 수입은 171.08억 달러를 기록,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락 후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여타 중미국가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정체되었다가 2021년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1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반등하였다가 2022년 감소하였다. 2021~2022년 양국간 총 무역액은 각각 3.52억 달러, 2.77억 달러로, 2022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2.08억 달러, 수입은 0.6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1.3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5개, 누적 투자액 45,37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한국과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95.1%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2020년 1월1일 FTA 발효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품목의 89.5%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승용차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가 기존에 미국, EU에 제공(10년 비선형철폐)한 것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고,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 등), 화물차, 승합차, 축전기 등에 대해 관세는 즉시철폐하며, 타이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 등에 대해서는 3~5년 철폐를 양허하였다.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화물 도착 전 통관 수속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하며,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특송화물은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11월 비상업적온라인구매촉진법을 제정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약물의 전구체 화학 물질 등 제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매가격이 미화 3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중미 FTA에서는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분 원사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금

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서도 엘살바도르는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수 비중 12.2%) 상품에 대해 양허제외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년 1월 12일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 2016년 2월 11일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중미 지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며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의 기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무역구제 내용은 엘살바도르 무역구제법과 일치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펙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년을 경과한 경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2022년 8월 △중고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제한 연식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신규 배터리 탑재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신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수입할 경우 10년간 부가가치세(IVA)를 100% 면제하고, 중고차는 25% 면제한다는 내용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 교통수단의 사용·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되어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이다. 엘살바도르는 2023.1월 국가조달시스템(SINAC), 공공기관 구매부서(UCP) 신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도입 등이 담긴 신규 공공조달법(Ley de Compra Publica)을 제정하고 기존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을 폐지하는 한편, 조달규제기관인 '국가조달국(DINAC) 신설법' 등이 2023년 3월 발효하는 등 조달관련 법령들을 재정비 하였다. 기존 전자조달시스템(COMPRASAL)과 공급업체등록부(RUPES)을 유지하고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 상황, 지자체사업국(DOM)의 전략 프로젝트 및 조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법령은 계약 방법으로 a)경쟁 입찰, b)가격 비교, c)직접 구매, d)소액 등으로 구분하고, 경쟁 입찰 하한선(threshold)은 87,600달러(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이며, 동 금액 이하의 경우 최소 3개 공급업체의 가격 비교를 적용할 수 있다.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수의계약(contratacion directa) 이 가능하다.

한-중미 FTA 발효와 함께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GPA 미가입국인 엘살바도르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엘살바도르 측은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양허하한선과 대상기관을 설정한 바, 8개 중앙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13만 SDR,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 및 21개 지방정부기관(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35.5만 SDR, 건설서비스는 15백만 SDR)이 적용 대상이다. 엘살바도르 측은 공공사업교통부, 보건부, 교육부, 공항항만청, 전력청 등의 중앙정부기관과 각 주의 최대도시 등 지방정부를 개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증진보호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항공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요양 복지시설, 원격의료, 영화, 양식업, 동물 사료 제조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엘살바도르는 2016년 4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효, 2021년 2월 「전자상거래법(Ley d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는 2022년 117위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엘살바도르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88위, 2016년 104위, 2018년 100위, 2020년 107위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 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482배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민관 파트너십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 파트너십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4년 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 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23년 5월 혁신기술제조 분야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의 투자자에게 15년간 세액공제(소득/지방세, 자산이득세 및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술혁신 및 제조 촉진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달러에서 2008년에 2,000달러로 대폭 축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 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2년 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경제부는 2023년 3월 투자자의 수속 절차를 용이토록 하는 절차간소화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하고 수속절차를 기존 31개에서 10개로, 응답 시간은 25% 감소시켰고, 모든 절차를 100% 디지털화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연인 또는 법인은 웹사이트 <https://inversionista.economia.gob.sv>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에

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세제상의 제한 :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1) 투자거주비자

월 최저임금의 4,000배(2021년 최저임금 상공업 및 서비스 부문 기준 월 \$365 → \$1,46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등록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2) 일반장기체류비자

취업비자, 종교비자 등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운전면허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공증한 사본, 공증한 번역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54.43달러이다. 2017년 추가된 항목으로는 ⑦심리검사(\$5.65), ⑧혈액검사, ⑨아포스티유를 받은 한국운전면허증(원본 및 사본)이다. 1년 기한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 언어문제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2019년부터 조건없이 한국 면허증을 엘살바도르 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온두라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하고 있다. 중미-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년 10월 1일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 (2017년 1월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에 더해, 우리나라와 한-중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온두라스간 한-중미 FTA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GDP 대비 수출 비중(41.9%, 2022년 세계은행)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서, 온두라스 정부는 그간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해 왔다.

온두라스는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커피, 바나나, 팜유, 새우, 설탕, 담배 등 농수산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마킬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전선, 자동차 부품 등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2023년 기준 160개국 중 66위(2018년 대비 27단계 상승)를 기록하였다.

◦ LPI 실적 (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23년)

구분	2018(점수)	2023(점수)
LPI 점수	2.60	2.90
통관	2.24	2.80
인프라	2.47	2.70
운송비 책정	2.66	3.00
물류업체 수준	2.72	2.70
화물추적	2.68	2.60
적시성	2.83	3.20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최저 0%에서 최고 20%의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예외 대상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2019년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온두라스는 한국산 공산품의 97.9%(5,5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6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구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업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끼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맥주, 브랜드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 반입시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중미통합세관신고서(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 DUC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관세청(Administración Aduanera de Honduras) 웹사이트(www.aduanas.gob.hn)에 접속하거나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sarah.dara.gob.hn)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ón Manifiesto de Carga)를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C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C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 제출 뒤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C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á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실(Sub-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세이프가드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de Salvaguardia)」 및 「중미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등이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 한국, 영국)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규제상 예외를 적용하는 품목들이 많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 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되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물/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자연자원 환경부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 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 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표

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수의학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SAO, Sustancias Agotadoras de la Capa de Ozono)인 염화불화탄소(CFC, Clorofluorocarbonos)와 메틸브로마이드(Brumoro de Metilo)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TOH, 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MI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법(Ley General de Ambiente)」,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 「수자원법(Ley General de Agua)」, 수자원법(Ley General de Agua)」 등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000), 공사는 200만 렘피라(약 USD 83,000)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온두라스 정부는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여타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 www.honducompras.gob.hn)를 통해 실시하는 부분적인 전자조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입찰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하더라도 자국 출신 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으며, 「국가조달법」의 경우 2023년 국회에 각종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기술장벽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으로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la Calidad)」이 있는데,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 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de Medidas de Normalizacion, Metrologia y Procedimientos de Autorizacion)」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 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을 구축하여 전자서명 등 디지털 문서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로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Zoosanitaria)」, 「씨종자법(Ley de Semillas)」,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y Procedimiento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위생시설에 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Servicios y Establecimientos de Interes Sanitario)」, 「농수산물 검역 규정(Reglamento de Cuarentena Agropecuaria: Acuerdo C.D. SENASA 001-2023)」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13년 12월에 발효된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2012년 5월에 발효된 「식물품종보호법(Ley para la Proteccion de Obtenciones de Vegetales)」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재산청(Instituto de la Propiedad: IP) 산하 지적재산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소관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며 특허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5년에서 20년(산업디자인 특허 5년, 상표권 10년, 실용신안 15년, 발명특허 20년)까지이다. 유명상

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가입 등을 기점으로 온두라스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파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피해 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접 특허 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ion Internacional para la Proteccio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UPOV)」에 따라 2012년 5월 식물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 내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초보전 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등의 경우 온두라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온두라스 정부는 2014년 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2022년 동 법안의 상당수 내용이 개정되면서 효력이 다수 제한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온두라스는 2013년 12월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 발효,

2015년 3월 「전자상거래법(Ley sobre Comercio Electronico)」 발효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일부 구축하였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온두라스는 2022년 155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도별 온두라스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114위, 2016년 127위, 2018년 123위, 2020년 138위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ó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ó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ó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투자위원회(Consejo Nacional de Inversion), 온두라스 민간 경제인 연합회(COHEP) 및 각종 지역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 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주도의 관리 하에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정부는 민간 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국과의 「조세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2011년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발효에 따라 윈스톱 서비스(Ventanilla única de Inversiones: VUI) 개시에 착수하는 등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SRL)와 주식회사(SA)¹¹⁸⁾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피라(약 202 달러)와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피라(약 1,011 달

118)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기업이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2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과 상공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경제개발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지역 상공회의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5.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6. 회계장부 구입
7.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
8.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9.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0. 온두라스 사회보장청(IHSS)에 등록
11. 온두라스 국립직업훈련원(INFOP)에 등록
12. 온두라스 주택민간지원제도(RAP)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a Inversió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 40km 이내 해안지역 및 내륙토지는 구입이 제한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된 관광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세제상의 제한(세율상의 차별)

주요 세금은 판매세(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거래 월 평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연간소득 Lps. 199,039.48 - Lps. 303,499.90), 20% (연간소득 Lps. 303,499.91 - Lps. 705,813.76), 25%(연간소득 Lps. 705,813.77 이상);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25%), 투자소득세(10%) 등이 적용되며, 외국 기업이 온두라스 내 체인점, 대표 법인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과세한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 또는 Permisos especiales de perman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반드시 온두라스 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밟아야 한다. 체류자격(사업가, 고용인, 일반 거주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 서류)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국적국, 최종 거주국가 및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온두라스 경찰수사국(DPI)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증명사진(6cm×5cm)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온두라스 이민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혼인증명서
- 소득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재정 증명 서류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기타 서류)

- 사업 목적 거주 의 경우 : 회사 법인 설립 증서, 운영 허가 증서, 공인회계사가 승인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 취업 목적 거주 의 경우 :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고용주의 신원보증서, 고용된 회사의 법인 설립 증서 및 운영 허가증서 등

※ 세부 자격별 요건은 온두라스 이민청 홈페이지(inm.gob.hn/residencias.html)에서 확인

디지털 무역 장벽

온두라스에는 국내산업 보호, 사이버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상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우루과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¹¹⁹⁾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내 타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받으며,¹²⁰⁾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¹²¹⁾ 우루과이가 중남미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¹²²⁾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고, 주요 수입 품은 펄프, 냉동 쇠고기, 제재목, 양모 등이다.

119) WTO, Trade Policy Review, URUGUAY (WT/TPR/S/263/Rev.1)

120) 칠레(1996), 볼리비아(1996),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2004), 페루(2005), 쿠바(2006)

121) 이스라엘(2007), 인도(2004), SACU(2008), 이집트(2010), 팔레스타인(2011, 미발효), 싱가포르(2023)

122) 멕시코(2003), 칠레(2016)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¹²³⁾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신발이나 설탕, 자동차용품 등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16~35%의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2029.12.31. 까지 225개의 CET 예외 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MERCOSUR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123) 베네수엘라라는 MERCOSUR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다. 2017년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되었다. MERCOSUR 원회원국들은 회원국 지위 정지가 출입국과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MERCOSUR 특혜관세가 베네수엘라에게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수입부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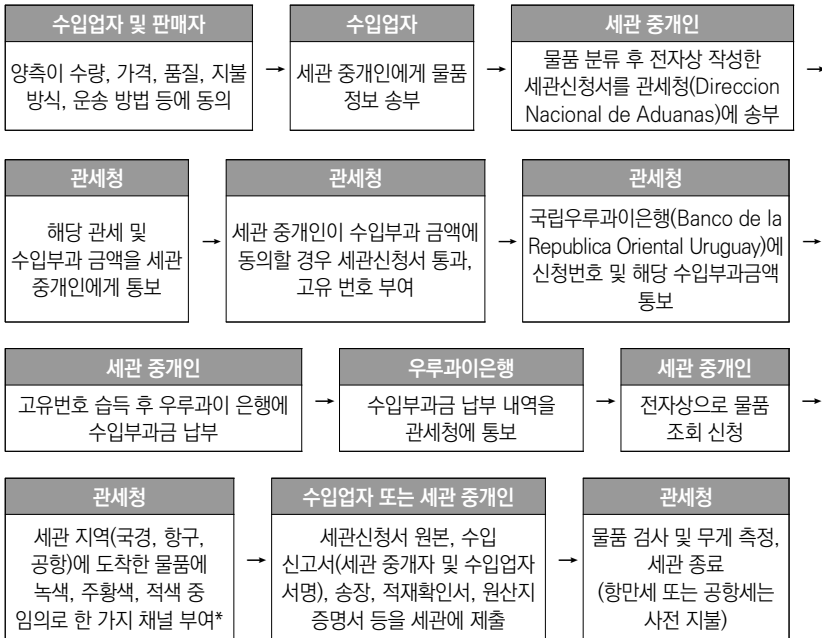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계가 관세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로 오히려 인상되었다. 반면 공화국은행(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impuesto de valor agregado)
 - 수입시에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의 22%가 부과된다.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 육상 운송수단 및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 수입업자는 통관시에도 선불(advance payment)을 추가로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이고,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3%이다. 선불은 탈세와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이 판매되면 공제를 받는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tasa consular)
 - 수입가(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2%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부터 메르코수르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3%,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5%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5%가 부과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와 원유에는 동 수 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tasa por servicios preferenciales)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specific internal tax: IMESI, impuesto específico interno)

- 소비세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등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3~46%로 세분화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녹색 채널 : 즉시통과

* 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 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 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 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 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í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물질과 화학제품은 120일간(www.gub.uy/tramites/importacion-exportacion-precursores-productos-quimicos)② 유효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 통상세이프가드과에서 관장하며 국내업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조사 신청시 통상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 조사를 통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1월 ~ 2002년 6월 간에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지구(자유항)

우루과이에는 12개의 자유지구가 있다. 자유지구는 소유와 관리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유형,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자유지구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이러한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 조세 및 국가독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제가 적용된다. 자유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자유지구에서 제조된 제품이 주재국 원자재 및 부품을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비면세 지역에 진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지구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메르코수르 블록 내 우루과이 제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지구를 통과해도 관세 특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유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 중 75% 이상이 우루과이인 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유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웨어 제작, 콜센터, 전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월 법령 344/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2월에 제정된 자유지구내의 직·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우루과이 정부는 투명성과 관리통제 측면에서 OECD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2018년 9월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일부 자유지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특히 몬테비데오 반경 40km 외곽의 자유지구 간접사용자의 경우 5년 이상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3년간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하며 몬테비데오 내곽의 자유지역 간접사용자는 최종 2년 안에 10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하거나 5백만 미국달러를 투자하여야 한다.

자유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써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 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산업공단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비용의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최대 100% 면세의 혜택을 받는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 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예상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12일이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 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내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관할하던 환경 업무를 2020년 7월 9일 신설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광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증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년 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소비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 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 2,500대
- 방탄 차량 : 1,200대
- 부품 : 1억 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년 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2020년 12월까지 1,700kg 이상의 벤에 한해 내국소비세(30%) 면제, 2020년까지 △에비 부품 세트 관세 100% 인하 △전기 자동차 충전기 관세 완전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부진한 수출 분야에 한해 특별 세금 환급 혜택, 공화국은행 수출

세금(과세 가격의 0.05%) 폐지, 부진한 수출품목에 대해 메르코수르 특별 관세 제도를 적용해 수입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 제도(간소화된 관세신고 절차, 2,000불 미만의 수출송장일 경우 수출세 면제 등의 혜택)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 및 계약은 조달청(ACCE)이 전담하며 프로젝트의 투명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상기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등록절차도 동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 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루과이 헌법상 정부조달

결과에 항소할 수 있으며 낙찰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인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7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간 GDP 성장률¹²⁴⁾은 평균 6%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4.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4.6%, 2014년 3.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약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7년 2.7%, 2018년 1.6%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2019년에는 경제성장률 0.4%, 2020년에는 -5.9%를 기록하였으며 물가 인상과 실직률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우루과이는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바, 2021년 우루과이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수출 규모는 총 10억불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2022.11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 1회 ‘우루과이 비즈니스 서밋: 테스트 & 인베스트’(Uruguay Business Summit: Test & Invest)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총 44개국에서 약 1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하였다. 동 행사 계기 우루과이는 역내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조건을 발표한 삼아 중남미의 혁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루과이 혁신 허브’(Uruguay Innovation Hub)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124) The World Bank: Data 참조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¹²⁵⁾는 2004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2016~2018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농업수산업, 제조업, 보험 및 금융, 부동산, 정보통신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③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17	-590
2018	-11
2019	2,018
2020	753
2021	1,923
2022	3,675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년 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년 12월 발효되어 양국간

¹²⁵⁾ The World Bank: Data 참조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이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9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2021.11.1.자로 발효되었다.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¹²⁶⁾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126) Uruguay XXI, Set up a company (2022/4) ④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5% 또는 최소 1,254.58달러)
-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정관(bylaws) 승인(달력 기준 30일, 633달러)
-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정관 등록(근무 기준 30일, 59달러)
-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일반 신문에 정관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평균 290달러)
-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단일 절차(설립자 정보 제출, 공증 등, 달력 기준 30일, 비용: 수입인지)
- ⑥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 ⑦ 노동사회보장감독청(Inspeccion General de Trabajaio y Seguridad Social) 등록 절차(노동 장부,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수속 서류 등, 근무 기준 15일, 무료)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업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장공단·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¹²⁷⁾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1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 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127) Uruguay XXI, Tax aspects(2022/4)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엔진 차량	0-115
오토 사이클 엔진 차량	0-16.45
가솔린 엔진 차량	23-46
전기 차량	0
하이브리드 차량	2-34.5
기타 차량	0-46
주류 및 음료	10.50-80
향수 ⑤	20
담배류 ⑥	최대 70%
유흥세	35(항공운은 5)
연료 및 석유 파생물	5.26~100
전력	10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 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 내 부동산 및 보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약 2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100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매년 정부 고시액 변경).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에 비례해 3~12%의 세금을,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월간 소득의 0~36%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38 페소/미달러)	누진세 비율(%)
0~13,654 미만	0
13,654 ~ 19,506	10
19,506~29,259	15
29,259~58,518	24
58,518~97,373	25
97,373~146,297	27
146,297~224,322	31
224,322 ~	36

출처: elpais 기사 ⑦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5%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금융기관의 경우 2.8%, 개인의 경우 0.7~1.5%의 누진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 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일, 채소,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귀금속, 농기구 및 부속품, 석유 연료, 물,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자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 이자, 저축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치품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년 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점수 1점을 획득한 경우에 20%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세금감면율은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년 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폐기물관리, 교도소, 보건, 교육, 주거 등에 PPP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PPP를 시행하는 우루과이 재정부와 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교통, 교육, 보건, 교정, 주택, 에너지 분야를 PPP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관참여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 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관협력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부기관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업안을 제안한 해당 민간기업에게 입찰 평가시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우루과이 정부는 민간의 PPP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 251/15호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 시점에 민간 주도형 사례는 전무하고 정부기관 주도형만이 검토되거나 실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이 실제로 투입되거나 이행 직전에 있는 사업은 교도소 신축과 일부 도로의 보수가 있다.

2019년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신규 투자자들에게 재산세 면제, 법인세 최대 90% 감면(15개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5년간 제공, 3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8년간 제공, 6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혜택 10년간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청각 분야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건설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이 2007년 7월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법률 18159이 제정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석유 부문도 정부 독점이었으나 2020년부터 석유 수출입 및 정유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허가되어 현재 항공유와 선박유는 DISA와 AXION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자 취득

한·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년 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21,107 페소(약 555미불, 38페소/미불)(출처: 노동사회보장부)⑧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면서 과거 2005년 110,000명과 비교시 약 4배의 가입률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년 9월 제정된 단체교섭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6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우루과이 상공회의소는 직장점거와 단체교섭법이 국제노동규정에 어긋난다며 ILO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ILO는 권고를 내서 노동자가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파업 비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주의 직장 출입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법의 7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는 단체교섭법의 1개 조항만을 수정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ILO의 여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집권한 Lacalle 정부에서 통과된 긴급심의법 398조는 파업 불참자의 작업장 접근 및 노동권, 사용자의 자유로운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며, 불법 직장점거시 노동부 신고, 노동부의 내무부에 해산 요청의 절차를 통해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적인 직장점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일반적 특징

우루과이 금융은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메르코수르 회원국 등 지역 내 국제 금융의 중심 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우루과이 금융의 특징이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하며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기관

우루과이 내 최대 규모인 국영 우루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주택담보은행(BHU), 9개의 상업은행이 있다.(informe del sector financiero, uruguay xxi)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BCU)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몬테비데오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de Montevideo, BVM)와 전자증권거래소(Bolsa Electrónica de Valores S.A., BEVSA)를 운용 중인데 전자증권거래소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관련법의 변화

우루과이는 2017년 금융포용법(Ley de inclusión financiera)을 개정하여 △ 카드 사용 장려, △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 지불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우루과이 내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2%인 부가가치세를 18%로 감세해주는 안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우루과이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혜택은 없다.¹²⁸⁾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지불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수취용 계좌를 무료로 개설해 줄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 금융에 대한 국제적 평가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국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국제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우루과이는 2009년 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128) 관광 장려책의 일환으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하면 레스토랑, 차량 렌트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년 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국제신용등급 평가

기관	평가	평가기준일
Fitch Ratings	BBB	2023.6월 ⑨
DBRS	BBB	2023.11월 ⑩
Moody's	Baa2(positive)	2023.5월 ⑪
R&I	BBB+	2023.12월 ⑫
S&P	BBB+	2023.4월 ⑬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BBB 등급은 투자적격 등급 중에서도 저중(고, 상중, 저중으로 분류)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Fitch Ratings, DBRS, 우루과이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 Moody's는 우루과이 신용 등급 “긍정적”으로 전망함.



자메이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크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카리브지역 내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부상하고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하여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 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년 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년 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이후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2018~2022)간 자메이카 달러는 매년 평균 5.6% 평가 절하되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채 상황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부채상황에 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바, 2022/23 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총 9,120억 JMD(61.6억 USD 정도)의 전체 예산 중 부채상황에 쓰이게 될 예산액이 3,075억 JMD로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품

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메이카 관광업은 이전 대비 70% 위축되어 최근 30년 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자메이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22년 중 자메이카 GDP는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관광업 재개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의 97%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2023/24 회계연도 성장률이 5%대 범위를 유지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IMF 차관 도입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2월 12일(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 등급으로 복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5월 1일(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확대신용자금(Extended Fund Facility)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20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 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상기 IMF측의 신규 재정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이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상기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3년간 총 US 16억 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개선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월 대기성 차관 약정(US 16억 불 지원)을 IMF와 체결하여, 현재 이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3년만인 '19.11월에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 총리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실업률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낮은 기록달성(7.8%), 세금 감면으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율과 대외부채 또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광업 및 건설업 부문 성장 등을 바탕으로 2018/19 회계연도 경제성장이 1.9%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2019.11월 자메이카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IMF측은 향후 몇 년간은 사무실을 자메이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조언하기로 하였다.

2019년 실질GDP는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7년 연속 GDP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메이카 경제에 IMF 집행 이사회는 2020.5월 자메이카에 대한 미화 5.2억불 규모의 신속금융지원(RFI : Rapid Financing Instrument)을 승인하였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메이카 경제는 관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부문의 개선 및 고용창출, 비즈니스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018/19 회계연도 1.9%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바, 이는 회계연도 기준 5년 연속 실제 GDP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2019/20 회계연도에는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표 안정, Alpart 알루미늄 정련소 생산 재개를 통한 채광 부문 활동 강화, 관광 및 건설업 부문 성장 등으로 인해 2-3%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했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영향으로 자메이카 농업과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 부문이 50%이상 격감하였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자메이카 실질 GDP 성장률이 -10.5~-12.5%를 기록했으나, 2021/22 회계연도(2021.4월-2022.3월) GDP 성장률은 8.2%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환경도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선,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바, 2018/19 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7.5%를 달성하였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 96%)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지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주재국내 실업률도 2019.4월 기준 기록적으로 낮은 7.8%를 기록한 바, 이는 2008.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1월 IMF측과 체결한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 프로그램의 경우, 2018.9월 IMF 실무평가단의 4차 평가 관련 조사에서 프로그램상 요구되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목표를 대부분 충족시킨바(인플레이션만 목표 범위 대비 낮은 수치 기록),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거시경제 환경(부채 상황 개선-2018/19 회계연도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6%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재정수지 흑자 달성-2018/19년 기준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7.5% 달성; 외환보유 지속 증대)을 조성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동 평가를 바탕으로 '18.11월에 IMF 이사회 승인이 나는 경우, US 2억2천6백만 불 상당의 특별인출권(SDR)이 자메이카 정부에 양도되었다. (IMF 이사회 승인(2018.11월)을 통해 상기 특별인출권이 양도로 재국 정부에 3년간 지원 예정인 총 US 16억 불 중 총 12억 불이 양도됨)

이러한 노력끝에 자메이카 경제감독위원회는 언론 발표(2019.11월)를 통해, 자메이카 정부가 2019.11월 완료 기준 IMF 측의 차관 제공 프로그램에

서 요구하는 성과 관련,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성장 상승세, 2018/19 회계연도 2%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달성 ▲'19.4월 기준 실업률 7.8%로 최저 기록 ▲'13년 이후 지속적인 빈곤률 하락 ▲자메이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4-6%대로 유지 노력 ▲환율 투명화 노력 ▲2018/2019회계연도 경상수지적자 축소 (2.2%) 및 외환보유고 증가 ▲세계경제 등 관광업이나 외화유출에 미치는 영향 축소 ▲S&P의 신용등급 "B"에서 "B+"로 상향조정 ▲은행의 부실채권의 기록적 감소 (2.4%대), 은행의 자본금 확대 등을 기록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19년 중 자메이카는 경제정책 성공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7.2%의 실업률 달성,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투자심리 안정, ▲인플레이션과 대외부채 감소 등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자메이카 경제의 주축인 관광업이 타격을 입었으며, ▲자메이카 이민사회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자국송금 감소, ▲허리케인 및 폭우 피해, ▲달러 가치 하락 등 여러 악재로 인해 IMF는 2020년도 자메이카 경제성장률을 -8.6%로 전망했다.

그러나 IMF는 △2021/22년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상·하반기 수출·생산 및 경제활동 증가 등을 감안 시, 2022/23 회계연도에 성장률이 2~3%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안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및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외채 관리 노력, △서비스(관광) 산업 재개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 중이다.

주요 경제지표

최근 경제통계

(단위 : US\$ 백만, %)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총생산	14,262	14,030	14,822	15,718	16,458	13,810	13,640	17,100
1인당 GDP(US\$)	5,105	4,868	5,431	5,268	5,582	4,665	4,587	6,047
평균 환율(US\$1 : J\$)	117.31	125.14	128.45	129.72	133.94	144.41	151.62	154.21
물가상승률	3.7	2.3	4.4	3.7	6.2	5.2	5.9	9.4
실업률	13.3	12.7	9.6	8.7	7.2	8.4	7.1	6
외환보유고	2,437	2,719	3,208	3,005	3,163	3,938	4,000.8	3,976.2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부문별 GDP 성장률

(단위 : %)

부문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수산업	13.5	11.1	8.0	6.3	10.9	15.2	8.5	9
광업	70.7	11.7	43.1	37.5	-39.2	-23.3	-22.8	-34.1
제조업	5.0	2.3	8.2	6.5	5	-4.2	3.3	6.3
건설업	13.5	6.5	6.6	9.5	5.3	5	9.5	-2.3
전기 및 수도	8.8	6.0	7.7	7.9	5.3	5	0.87	2.2
도소매업	4.7	3.7	4.1	6.3	5.2	-3.8	7.3	5.7
호텔 및 요식업	7.4	5.8	6.8	5.8	9.1	-44.9	120	48.1
운수창고 및 통신업	2.8	4.9	4.4	5.5	3.5	-15.3	6.2	6.5
금융 및 보험서비스	8.8	8.9	8.7	6.5	7.5	-4.3	1.9	1.1
부동산업	3.3	3.8	3.3	3.8	3.4	0.2	1.5	1.8
정부서비스생산	2.2	5.3	3.1	8.7	3.6	6	0.1	0
기타	5.5	5.4	5.1	4.6	5.9	-19.1	6.0	11.3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무역 수지	수출	1,255	1,188	1,310	1,879	1,586	1,219	1,440	1,901.4
	수입	5,033	4,851	5,820	6,126	6,339	4,712	5,975	7,731.2
	적자	-3,778	-3,663	-4,510	-4,247	-4,753	-3,494	-4,535	-5,830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2) 수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크사이트	123.2	92.0	92.4	100	90	86	71.8	76
알루미나	542.3	444.0	509.4	1,041.7	735	425.7	387.7	224
설탕	53.8	14.8	14.3	13.7	10.2	6.5	6.6	3.6
커피	25.2	27.6	19.4	14.6	12	15.8	17.2	20
럼	35.0	40.0	41.2	45.6	50	54.5	56	56
바나나	0.242	0.358	0.474	0.563	0.577	0.725	0.869	1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3) 수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료품	844	853	842	902	1,026	932	1,122	1,402
음료 및 담배	71	74	82	67	84	54	71	107
석유제품	56	60	70	75	66	73	91	88
광물연료제품	1,177	958	1,423	1,607	1,667	884	1,547	2,379
동식물기름	32	18	47	35	36	36	56	77
화학제품	578	558	665	754	650	571	650	780
공산품	647	585	674	743	774	629	819	992
기계·운송장비	1,027	1,275	1,474	1,410	1,464	1,112	1,196	1,345
기타 제조품	479	447	520	529	570	418	420	556.8
기타	123	22	23	5	130	78	142	117
총수입액	5,034	4,850	5,820	6,126	6,339	4,712	4,975	7,731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 주요국별 수출·수입(2022년 기준)

(단위 : US\$ 백만)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미국	911	47.8	미국	3,194	41.3
네덜란드	243	12.7	중국	572	7.3
러시아	99	5.2	브라질중국	523	6.7
영국	78	4.1	트리니다드토 바고	442	5.7
캐나다	76	3.9	일본	242	3.1

출처 : STATIN,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및 World Bank 웹사이트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치 평가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관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약 들어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로 보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는다.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세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된다.

올해 7월에 개최된 제40차 카리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카리콤 통합 최대 과제인 단일시장(CSME: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입법 및 단일시장 업무

담당 부서 지정 등 각 국가들이 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리콤 정상들은 1989년 '그랑드 앙스(Grande-Anse)'선언과 지역 통합촉진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단일시장을 추진중이다 (현재 상품 95%는 카리콤 회원국내 이동이 자유로우며 서비스 자유화, 관세단일화(관세1회만 부과), 자본 이동 자유화 등을 목표로 추진중)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 1리터
담배	◦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 perfume: 170mℓ, eau de toilette: 340mℓ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식품	◦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 폭약 및 폭발물질 ◦ 무기 및 탄약 ◦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현재 IMF 경 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출처 :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국제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증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0~2012년 기간의 경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US 7억\$에 달하였던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부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세계은행은 2020년 자메이카가 190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고 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자메이카는 북미와 남미간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허브 국가로 기능하기 위해 농업, 제조업 및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중이며,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군소 도시 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중 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연도별 자메이카 FDI 현황

(단위 : US\$ 백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582	925	915	845	775	665	325	319

출처 : 자메이카 중앙은행 웹사이트(www.boj.org.jm)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 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을 밝히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법을 준수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일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 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표 (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가 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 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 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각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 (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 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 (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는 소비세이다.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 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contri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ne.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는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 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2023년 기준 연간 소득이 J\$ 1,500,096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연간 소득이 그 이하인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면제이며, 65세 이상 개인은 첫 소득의 J\$ 80,0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 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의 거래(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된다.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이 제공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업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조세 관련 협약에 대해 협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6개 국가(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카리콤)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을 체결하였고, 6개 국가(덴마크,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남아공)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and Exchange Agreements(TIEAs))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 922-7919	(1876) 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 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9-0006~7	(1876) 922-2876	t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 972-1378	(1876) 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84-3877	(1876) 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 968-2224	(1876) 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 625-5137	(1876) 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 952-6016	(1876) 794-9038	tccmobay@ird.gov.jm

◦ 이메일 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양식을 세무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② 신청서 작성
-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 (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달 방법 결정
- ③ 조달 계획 수립
-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하는지 점검
-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 과학에너지기술부(Ministry of Science, Energy & Technology) ▲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공사업

규제청이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을 허가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에너지기술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기타 장벽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티켓 등)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신청하여 획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톤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로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 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5,000을 지불하여야 하며, 근로허가 발급비용은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42,5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85,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127,5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70,000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J\$ 42,500씩이 추가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범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 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 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J\$ 9,000~13,0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별로 상이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 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재 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 (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현재 자메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늄 공장이 있다.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5.4	1952
알루미늄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100%)	0.45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100%)	1.86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Noble Holdings Jamaica(55%), 자메이카 정부(45%)	0.7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2.0	1969



칠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최근 경제 현황

2022년 3월 출범한 사회주의 성향의 보리치 정부는 출범 직후 시장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신헌법안 국민투표(2022.9.4.) 부결 이후 친시장 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2023년 칠레는 여야합의로 신헌법안 제정을 재추진 중이며, 12월 17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2023년 신헌법안은 헌법위원회의 구성이 우파가 다수로(50명 중 34명) 헌법안이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칠레 경제는 2021년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와 유동성 확대로 11.6% 성장을 이루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은 마이너스 성장(-0.5~0.0%)이 예상된다.

칠레의 2023년 3분기(9월) 기준 누적 교역액은 1,3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하였다. 수입액은 643억 달러로 20.4%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731억 달러로 0.01% 증가를 보이고 있다.

칠레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2.10월부터 '23.7월까지 11.25%로 유지되다가 '23.10월말 현재 9.5%까지 인하되었으며, 연말에는 7%대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칠레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 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인 구	백만 명	18.75	19.11	19.46	19.72	19.92	20.11
명목 GDP	십억 달러	295.15	278.35	252.35	316.77	310.87	347.57
1인당 명목GDP	천 달러	15.74	14.57	12.97	16.07	15.60	17.28
실질성장률	%	4.0	0.8	-6.1	11.7	2.0	-0.5
실 업 률	%	7.4	7.2	10.8	8.9	7.9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2.3	3.0	4.5	11.6	8.7
총수출 FOB	백만 달러	74,838	68,792	74,086	94,677	97,491	96,156
총수입 CIF	"	74,614	69,856	59,212	92,197	104,407	90,467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224	-1,064	14,874	2,480	-6,916	5,68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41.90	703.31	791.72	759.82	872.33	900

자료 : IMF, World Bank, Chile Central Bank, EIU 등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실효관세율이 1% 미만이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 주류세
 - 와인, 샴페인, 과일주, 맥주 : 20.5%
 -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 31.5%
 -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0%

- 사치세(금, 보석, 모피 등) : 15%
- 폭발물(폭죽 등) : 50%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 담배(Cigarette) : 개피당 0.0010304240 UTM + 갑/곽/포장 소비자 가격의 30%
 - 연료세 : 디젤 m³ 1.5 UTM, 휘발류 m³ 6 UTM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2022년 11월 기준, 1 UTM = CLP 60,853 (11.21. 환율 기준 USD 64.46)에 해당

통관절차상의 장벽

1,000달러(FOB 기준) 이상 수입품은 반드시 전문통관사(Agente de Aduanas)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후 반출까지는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은 물품은 ‘유기물(遺棄物)’로 간주한다.

수입규제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 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폰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SAG;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물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물국제협약(www.cite.org)과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비관세장벽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칠레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가격 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덤핑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건이 실시되었는데, 대부분 중국(5건)과 멕시코(2건)산 철강 제품에 대한 것이었으며, 1건은 아르헨티나 밀가루에 대한 조사이다. 이 중 5건은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건은 적용되지 않았다. 1건은 제소자 측의 철회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칠레가 적용하거나 조사 중인 반덤핑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이프가드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철강 제품(선재, 메쉬, 못, 와이어), 1건은 낙농 제품(분유, 고다치즈)이었다. 이 중 1건(선재)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확정 부가세(38.9%)가 부과되었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표준관련 핵심 기관은 '칠레국가표준원(INN)'으로 업무는 크게 (1) 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2) 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으로 나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총 3,3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0MWT 이상의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며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 등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0년 2월 세제개혁으로 환경세가 개정되어, 연간 입상물질 100톤 이상, 이산화탄소 25,000톤을 초과하는 오염 요소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 운영자에게도 환경세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칠레는 2019년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하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세부 전략을 적극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칠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칠레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로 감소
- 2050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2018년 대비 70% 감소
- 2050년 신규 주거·비주거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Zero,0)’ 실현
-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Zero,0)’인 신차 100% 판매
- 2030년까지 2,000MW, 2050년 6,000MW를 국가전력망(Sistema Eléctrico Nacional, SEN)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전력 공급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 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는 면세 효과가 유지된다.

디지털무역장벽

칠레 정부는 2020년 2월 세제개혁을 통해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여, 2020년 6월부터 칠레에서 운영되는 해외기반 디지털서비스(넷플릭스, 에어비엔비 등)에 부가세 19%를 부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2019년 5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3국은 2020년 1월 협정 타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 6월 화상으로 세계 최초 디지털경제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칠레 국내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ID,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22년 10월 가입절차를 개시했으며,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6월 8일 DEPA 가입논의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캐나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하여 2017년 9월 잠정 발효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이 빠진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상을 진행해 2018년 3월 칠레에서 공식 서명하였으며, 캐나다는 5번째로 10월 25일 비준을 완료하였고, 호주가 10월 31일에 6번째로 비준을 완료하여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이외에 중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탐색회의(exploratory discussion)를 2017년 2월, 4월, 7월에 3차례 진행하였다.

2021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CPTPP 발효 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총 41개국 49개 수입 품목에 대해 155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주요 규제 대상국은 중국 49건, 한국 13건, 튀르키예 8건, 베트남 11건, 인도 6건 등이 있으며, 규제 품목 기준으로는 철강 및 금속 135건, 기타 15건, 기계 4건 전기 전가 4건 순으로 기타 분류 품목에는 식품 및 건축재료 등이 있다. 2019년 5월부터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3.9%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1%, 농산품에는 평균 15.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 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KRT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 쿼터 및 WTO 비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년 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데,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 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덤핑 판정이 있었으며, 2011년, 2013년 및 2019년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덤핑 관세는 89%가 부과되고 있다.

2006년 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2011년 4월, 2014년 5월, 2016년 2월, 2019년 1월에 정상가격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27일, 규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규제 지속을 결정 내린 바 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재조사를 개시하여, 2023년 9월에 이를 완료한 바 있다.

2012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2년 10월에 최종 덤핑 판정이 인정되었으며 11월에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CITT의 판정이 있었다. 2014년에 덤핑 수정 판정이 있었고 두 기업이 각각 9.1%, 34.8%의 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기업은 10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되었다. 2017년 7월에 재심이 있었으나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일몰재심 또한 동일한 결과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2월, 수출단가 검토를 개시하였다.

2021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오스트리아, 대만, 한국산 60MVA 이하 전력용 변압기(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고 2021년 11월 최종판정 결과 한국기업에 최고 73.1%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의 조사 불참여로 54.2%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 일몰재심 결과 판정 유지를 결정 내렸다. 또한, 2023년 5월 재조사를 개시하고, 2023년 10월 이를 완료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Copper tub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고, 2015년 1월, 2019년 9월 재심결과, 규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덤핑마진율은 N기업이 5.5%이며 기타 수출자는 82.4%를 적용받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및 5월에 각각 덤핑 판정 및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져서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고 기타 수출업체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9년 5월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과 유정용 강관(OCTG 2)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2014년 12월에 최초로 덤핑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재심을 진행하여, 현재 1개 업체는 13.3%, 나머지 업체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2015년 3월에 덤핑 판정을 받고, 2개 업체는 0%, 1개 업체는 8.8%, 기타 수출자는 37.4%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2020년 3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재심 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유정용 강관은 연례 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의 경우 2015년 4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판정이 났고 2020년 5월 및 2022년 9월, 두 차례의 연례재심결과 판정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9월 예비판정에서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12월 최종 판정에서 최고 88.1%의 관세율 부가가 결정되었다. 2022년 11월, 규제만료검토를 개시하였고 2023년 3월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2018년에는 냉연강재(Cold-rolled steel)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내부식 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각각 5월 25일, 7월 26일 착수되었다. 냉연강재의 경우 2018년 12월 CBSA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으로 64.3%의 관세율 및 1톤당 KRW 86,733의 상계관세가 책정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제재유지 검토를 위한 종료심사를 개시하였다.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의 경우 2018년 7월, 한국산 등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1월 최종판정 결과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심사를 종료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캐나다는 총 41개국,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소형 전력 변압기, 용접탄소강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저가 철강 제품 유입을 우려하여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 중에 있다.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20년 10월말 기준)

품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2003.11	~ 2024.10.15
동제관연결구류	2007.01	~ 2027.09.13
유입식 변압기	2012.10	~ 2023.05.30.(연장예상)
소형 전력 변압기	2021.11	~2026.12.23
용접탄소강관	2012.11	~ 2023.10.14(연장예상)
동관	2013.11	~ 2024.09.24
열연강판	2014.04	~ 2025.03.1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015.01	~ 2025.10.13
유정용 강관	2015.03	~ 2025.12.29
탄소·합금강관	2017.12	~ 2023.01.03(연장예상)
냉연강판	2018.12	~2023.12.20(연장예상)
도금강판	2019.01	~2024.02.20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규제기간 만료 시점에 일몰재심을 진행하여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

세이프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체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년 7월 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월 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년 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체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월 19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월 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기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 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유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온타리오주의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년 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 결정을 얻었으나, 2006년 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를 2019년 5월 10일 발표하였다. 최종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증강판, 스테인리스강선 등 2개이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조치가 진행되었던 7개군 모두 피해없음이 확정되었으며 캐나다와 FTA 체결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 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 별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미 동일한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율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상품명, 순증량, 유통업체의 주소 등을 제품용기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

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증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법, 소비자 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 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식품 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은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육류 수출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삼계탕의 수출이 허가된바 있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

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두,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하여야 한다.

신규 식품안전법 발효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19년 1월 15일부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령은 현존하는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면허 발급, 식품 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부분이다. 먼저 면허는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수출입(수출: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희망하는 캐나다 기업은 의무로 취득해야하는 부분으로 품목에 따라 면허 발급 유예 기간을 각각 두고 있다.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의 경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 트럭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은 의무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인 바이어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출 전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09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WTO로부터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에 대한 제소 승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2008년 8월부터 잠정 시행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에 대해 가공 비용상승에 따른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들에 따라 미국 COOL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5년 12월 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미국의 COOL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억 달러의 과징금 추징 허가 판정 및 21일 추징집행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승인받은 보복조치를 신속히 개시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폐지결정에 대한 신속한 진행 촉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미국간 연목재(softwood lumber) 협정 및 분쟁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다-미국 연목재 무역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의 연목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부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간(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입법계는 미 상무부에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30일 캐나다산 연목재에 평균 20.8%의 예비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12월 7일 27%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목재를 수출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를 노력 중에 있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 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 범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시행하여 탄소 오염 가격 책정,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적응과 기후 탄력성, 깨끗한 기술과 혁신 및 일자리
- 모든 주와 준주에서 엄격한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Federal Benchmark를 설정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6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을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며, 2017년 6월 28일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전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온타리오 주에 1,369MW(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규모의 발전 단지를 2018년 4월 완공하였다.

온타리오 주는 2016년 3월 이 방식 대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력 공급가격, 지역 사회 공헌,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서스캐처원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 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안은 현재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2021~2022년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C\$166억이며, 캐나다 연방정부 공공조달 입찰 공고가 게재되는 홈페이지(buyandsell.gc.ca) 및 지방정부, 기타 기관 입찰공고 홈페이지(merx.com)를 통해 공공조달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 진출 시 자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진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순이익의 50만 캐나다 달러까지 최종 법인세는 15%인 반면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28%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국인 기업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와 실제 내국인이 의사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캐나다 국세청에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한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상기 정부기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79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7년)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379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7년)	상기 정부기관에 허가심사 요청	

◦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투자자산 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산업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자료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2019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국가 안보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조사가 강화되었다. 특히 석유·가스·중요 광물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자원 및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조사를 강화한다. 캐나다는 투자청의 국가 안보 검토 체제에 따라 정부가 투자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외국인의 투자 진행을 금지시키고 사업을 매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동의해야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검토 기간은 평균 255일이다.

한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2005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 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5억 1,200만 달러(2023년 기준)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 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 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 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 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추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 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캐나다 방송시장은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 시간의 5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 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 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해결

캐나다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고 대안으로 UN 국제 상거래 위원회(UNCITRAL) 표준 규정에 의거한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를 따르고 있다. 이는 특정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의 중재규칙에 구속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거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많은 사설 기관들 중 하나를 고용하며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ICC 국제중재법원이나 상설중재기관(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기관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 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째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1998년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2000년 9월), 퀘벡(2000년 10월), 앨버타(2001년 1월), 매니토바(2003년 8월), 사스카추완(2004년 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펀들랜드 라브라도(2007년 11월), 뉴브런즈윅(2008년 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2011년 3월)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 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

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8년 기준 37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1개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 osfi-bsif. gc.ca](http://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I)		37	Bank of Montreal,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Bank of Nova Scotia, Toronto-Dominion Bank(TD Bank)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II)		21	KEB Hana Bank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III)	Full Service	28	Bank of America, N.A., The Bank of New York Mellon, Barclays Bank PLC, Capital One Bank, N.A., Citibank, N.A. 등
	Lending Service	4	Credit Suisse AG, Natixis,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MUFG Union Bank 등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자산 14억 5,00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토론토 본점 이외 4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총자산은 2018년 기준 7억 3,0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이다.



콜롬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 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1) 관세 산출 산식

- 출처: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세율

예시) 증가세: 자동차 부품 중 루프(HS 8708291000)를 콜롬비아로
CIF € 100,000 에 수출하였다면,

◦ 관세

- 기본세율 : $\text{€ } 100,000 \times 5\% = \text{€ } 5,000$
- FTA 특혜 세율 : $\text{€ } 100,000 \times 4.5\% = \text{€ } 4,500$

◦ VAT(부가세)

- 기본세율 적용시 : $(\text{CLP } 100,000 + 5,000) \times 19\% = \text{€ } 28,500$
- FTA 특혜 적용시 : $(\text{CLP } 100,000 + 4,500) \times 19\% = \text{€ } 27,550$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가격 : 수출자가 수출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FOB,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상 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2) 콜롬비아 세율 유형

* 종가세율(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 CAN 특혜관세 : 2006년 5월 콜롬비아 카르파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 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년 7월 24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년 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회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9일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cooperation), 분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년 11월 27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년 5월 8일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년 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년 8월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2011년 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감세협약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년 11월 25일 서명 후, 2011년 승인됨 (다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4년 발효).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년 11월 서명 후, 2011년 8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FTA는 2006년 11월 22일 양국 무역증진 협정(Acuerdo de Promoción Comercial) 및 2007.6.28 개정의정서(Protocolo Modificatorio)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년 10월 21일 미측은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5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년 5월 협상 종료 후, 2012년 6월 협정서 서명을 완료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동 FTA가 국내법에 합치하며 2013년에 개시한 잠정조치를 지속 적용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적용 중.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년 6월 칠레에서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년 6월 17일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년 2월 10일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발효됨.
 - '21년 7월 싱가포르- 태평양동맹 간 자유무역협정 최종 협상 타결, '22년 1월 공동선언문 서명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 시작 후 2013년 2월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됨. 콜롬비아의 경우 2014년 12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년 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5월 22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 6월 16일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콜롬비아 현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2016년 8월 1일 발효됨.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9월 30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양국 비준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11일 발효됨.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 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 국가인증기구인 ONAC (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 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 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년 12월 26일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장벽

2012년 법 제1581호(Ley 1581 de 2012) 및 2013년 법령 제1377호(Ley 1377 de 2013)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 및 법령 제24조에서 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년 12월 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통관절차

- 출처 : 콜롬비아 관세청(Colombia Customs)
- URL : <http://www.dian.gov.co>

콜롬비아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 전 준비, 2. 수입 신고, 3. 관세 납부, 4. 물품 검사 및 반출

1. 수입신고 전

개요콜롬비아 수출 전 필요한 인증 획득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통관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 유의사항

인증 :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의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이 필요하며, 1회 인증으로 지속적 수입이 가능함.

ICONTEC : 콜롬비아 표준산업규격(ICONTEC)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iconte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라벨링 규정 :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2. 수입 신고

지정된 콜롬비아 통관사협회(SIA :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콜롬비아 싱글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함.

수입신고 방법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필수적임.

콜롬비아는 대외무역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1,000달러 이상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함.

(※ 1,000달러 미만 수입은 VUCE를 통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함.)

제출서류

- ※ 수입통관 시 필요한 관련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 인증 및 허가증명서(해당품목 수입시)

3. 관세 납부

개요수입신고 후 접수통보를 받으면 입력 내용을 출력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함.

※ 유의 사항

수입관세는 CIF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세관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함.

관세, 부가세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국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4. 물품 검사 및 반출

4.1 물품 검사

개요콜롬비아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전산으로 접수받으면 전산 임의 추출에

의해 물품검사 대상 여부를 통보함.

※ 물품 검사 방법

검사대상 선별 방법은 임의 추출임.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은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여 검사함.

4.2 물품 반출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수입서류를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물품 인도를 요청함.

비검사대상물품인 경우 바로 출고가 허가되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실물검사가 완료되면 물품반출이 허가됨.

※ 유의 사항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 벌금이 부과됨.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일로 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부는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 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 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2015년 12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보 게재함.
- 이후 2017년 9월 재심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3년 간 규제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2월 28일 결의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 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방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무 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 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에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시행령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comunic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ic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 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년 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년 1/4분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년 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장 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 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년 8월 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 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년 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년 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년 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32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10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

(Ley de Inclusion Finan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달

2003년 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에는 FTA 내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테안 규범

안테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테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테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테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
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
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
으로 동등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년 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테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년 1월 안테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 이익 부문)은 다음과 같다.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 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 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 콜롬비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124곳

◦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신규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3년 이내)
농산업	월최저임금의 7.5만배 투자 또는 500명 직·간접 고용
재화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150명 직접 고용
서비스	월최저임금의 1만~4.6만배 투자 및 50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4.6만배~9.2만배 투자 및 35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9.2만배 초과 투자 및 150명 직접고용
보건	투자요구조건은 서비스 분야와 동일 고용의 경우 50%는 직접고용, 50%는 간접고용 가능
항만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20명 직접고용, 50명 간접고용

※ 상세 내용은 2016년 12월 발표된 시행령 2147(Decreto 2147) 참고 가능. 2023년 최저임금은 1,160,000페소(약 290USD, 1USD=4,000COP 가정).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재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립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16년 12월 평화협정 발효로 52년간의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이 종식되어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단,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국민 해방군(ELN)이 지방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정부 무장 세력 이외의 범죄조직도 납치,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 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심화되어 2,512백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감소(11,621백만 달러)로 이어졌다.

2018년 이반 두케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한 투자 시장의 경쟁력 확보로 2019년 콜롬비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10,28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19 영향으로 2020년 6,831백만 달러, 2021년 7,180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 후, 2022년 회복세를 보이며 11,26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對콜롬비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20	2021	2022
금액	6,831	7,180	11,262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 對콜롬비아 주요 투자국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20	2021	2022
미국	1,843	1,732	5,044
스페인	1,708	1,418	2,765
칠레	298	322	889
파나마	598	617	2,241
스위스	582	1,056	1,050
영국	269	407	843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726	240	249
네덜란드	1,098	1,341	461
캐나다	556	277	201
한국	4.7	-0.4	-1.6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임금수준

콜롬비아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1,160,000페소(전년 대비 16% 인상, 23년 만에 가장 높은 명목 임금 인상률)로 설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교통보조금 140,000페소를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는 1,300,000페소(약 325달러, 1달러=4,000페소 가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다.

-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15일의 법정휴가를 보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여금과 별도로 미사용 휴가에 따른 보수로 지급 필요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법정 상여금은 6월, 12월에 각각 월급의 50% 씩 연간 100%이며 지급조건은 연간 260일 이상(주 6일 기준) 또는 연간 210일(주 5일 기준) 이상 근무한 경우임.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 4.125%, 고용주가 12.375%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8.50%씩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시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 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砂礫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 석유 확인 매장량·생산량

연도	확인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5	2,002	100.6
2016	1,665	88.6
2017	1,782	85.4
2018	1,958	86.5
2019	2,036	88.6
2020	1,816	78.1
2021	2,039	73.6
2022	2,074	75.3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연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연간생산량(십억큐빅피트)
2016	4,024	398
2017	3,896	359
2018	3,782	386
2019	3,163	391
2020	2,949	381
2021	3,164	395
2022	2,820	390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 2022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기 준 생 산 량
석 유	20.74억배럴	연간 2.75억배럴
천연가스	2,820기가(십억) 큐빅 피트	390기가(십억) 큐빅 피트
석 탄	45.54억톤	연간 57.5백만톤

출처 :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Promigas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자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22년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45.5억 톤
- 콜롬비아 광물청에 따르면, 세계 12위, 전체 중남미 국가 중에는 1위 생산량
- 무연탄 및 역청탄의 경우 남미 전체 기준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46.6% 보유)로 조사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2022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0.7억 배럴, 일일평균생산량은 75.3만 배럴
- 2022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2,820기가(십억) 큐빅피트, 연간생산량은 390기가(십억) 큐빅피트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
- 2022년 콜롬비아의 연간 총 전력생산량은 76,905 GWh로 이중 수력 발전이 83.66%,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14.6%, 기타 발전원이 1.74%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매스(주로 팥감, 식물의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가축 분뇨, 음식 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원 생산)의 주원료로 사탕수수, 야자수, 쌀 등을 이용
- 2022년 바이오디젤 68.5만톤, 바이오에탄올 4.32억리터 생산

국가기관·법규·정책

2022년 8월 출범한 Petro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전환에 방점을 두고 광물 및 석유 등 지하자원 탐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장단체들이 광산 불법 채굴을 통해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요 관련 법률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í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이 있다.

(1) 광물부문

콜롬비아의 광물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km²(5000 ha)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km²(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 : 생산량의 4% (총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 백금 : 생산량의 5% - 에메랄드 : 생산량의 4% - 석탄 :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 경우 생산량의 5%) - 니켈 :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 기타 :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 20km ²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 20-50km ²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 50-100km ²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 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출처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한편, 동 개정 광업법(2010)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국내법에 따라 현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년 5월 13일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기로 결정하였다.

(2) 석유부문

콜롬비아의 석유, 가스 업무는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며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석유청(ANH: Agencia Naional de Hidrocarburos) : 석유 및 천연 가스와 관련된 천연자원 소유권 보유 및 인허가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GREG) : 전력 분야 관련 규제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치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 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tic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콜롬비아의 전기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transmision)과 배분(distribuc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전·판매업체(2022년 11월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Isagen, Gecelca, Celisa 등 101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Conelca 등 23개 업체
- 배전(Distribuidores) : EPM, Codensa 등 32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Isagen, AES, Ruitoque 등 141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 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 이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법 1715(2014년)」을 통해서도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과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을 작성하여 광물청(ANM)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

- 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설치·채굴 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전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ó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세급환원 보증서(CERT) 발급, 공공 인프라 사업 참여시 로열티 50% 이내 감면, 광산 탐사, 채굴 투자금 감가상각, 내전 피해 지역 공공 인프라사업 참여, 환경보호 투자, 광산업 연구, 기술개발, 혁신 투자시 세금 감면, 근로자 사회보장세 등 공제금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이 존재한다.

(3) 전기 부문

전기부문의 민간참여는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배분에는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송전에는 민간참여가 제한된다(「법 142 및 법 143(1994년)」). 콜롬비아의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다.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a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조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파나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는 내수 시장은 협소(인구 약 438만)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ZLC)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5% 내외로 다소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국제공항 폐쇄, △전 국민 완전 격리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며, -1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 들어 파나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 재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 효과를 거두어 15.3%의 성장을 기록하며 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코로나 이후 정부 수입확대 및 재정적자 규모 축소 노력과 함께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로 2023년 기준 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5%)을 기록했다.

파나마는 중미 지역내 고임금 국가로서 제조업은 취약하며 해산물류, 항공 운송, 금융 등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 만큼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중미 5개국, EFTA,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그 밖에 중국, 콜롬비아 등과도 FTA 체결을 진행 중이다. 한편, 파나마는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촉진협정(TPC) 내 민감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21.3월 발효하였다.

2019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정부는 ‘힘을 합치다(Uniendo Fuerzas)’라는 캠페인 슬로건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공공 조달법 개정, 특혜금리 법 개정, 공공민간협회(APP) 창설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도 무게를 두어왔다. 다만, 이전 바렐라(Varela)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공공부채(259억 불) 및 인프라 공사 미지불 금액 44억 42백만 불 등 3백억 불이 넘는 채무를 안고 국정을 시작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의 불평등, 대규모 비공식 노동력 등은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패와 재정투명성 부족은 자본 유입과 산업 투자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네오파나막스(Neopanamax)급 LNG선 통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양간 에너지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발전, 저장, 운송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본부제도(SEM) 및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 진출 촉진법(EMMA) 등 외국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재정책임법’ 발효를 통한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던 파나마는 비로소 2023년 10월 20일부로 동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금융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다만 가뭄으로 인한 운하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운하 통행량 감소 및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 신규계약법 위헌 판결 및 광산

폐쇄의 영향 등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나마를 통과하여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는 대규모 비정규 이주민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으며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파나마는 2023년 기준 23개의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협력협정이 발효 중이며, 현재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다(Kotra 해외시장뉴스).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는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2001년 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2003~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1987년 이후 원산지규정 등을 포함한 부분특혜무역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콜롬비아, 쿠바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체결하였다. 또한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칠레와는 2008년 3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멕시코와의 FTA를 2015년 7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5년 9월 시작(2015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된 한-중미 FTA에는 2018년 2월 정식 서명하여 2021년 3월 정식 발효되었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2012년 10월 31일에 발효되었다. 캐나다와의 FTA는 2010년 5월 협정에 서명하고, 2013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페루와는 페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2011년 6월에 완료되었고, 2012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2016년 수출의 29.5%와 수입의 11.03%를 차지한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EU 제후협정(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2012년 6월 29일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2013년 7월 3일에 중미 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201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13년 6월 서명된 EFTA FTA는 2014년 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2014년 9월 발효)되었다. 또한, 파나마는 2013년 6월 21일에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파나마는 19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활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여 2013년 9월 서명하였다(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2013년 이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로부터 재수출되는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된 양국간 무역분쟁은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또한 상기 무역 분쟁으로 인해 파나마 의회의 비준 유예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2018년 7월 콜롬비아 신 정부 수립 이래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및 공동선언에 의거, 2018년 9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의가 실시되었다. 2019.6월 당시 코르미소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직전 콜롬비아와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개최에 이어, 2019.11월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였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97개국) 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이 90% 가량 차지하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70%를 넘는다. 2023년 상반기(1~6월) 기준, 對중국, 일본, 한국 등 3대 시장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0%에 달한다(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가 중심이 되고, 관세청(ANA), 식품청(APA), 농축산개발부(MIDA), 경제재정부(MEF)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7.6%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2021년 평균 수입관세는 약 8.25%이며,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중 관세율이 최저 수준이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2010년 7월 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 이외에 특별소비세(ISC;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881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3단계(0%, 0-10%, 10-20%, 20%)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다만 생, 가공, 냉동 닭고기(260%), 우유 등 일부 유제품(155%), 사탕수수(144%), 유장(120%)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 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은 15% 단일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2012.5월 제정 행정명령 No.15), 감소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언급한 총 23개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파나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온라인으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ana.gob.pa>)를 통해 협정 체결국, 협정문 및 양허율표 확인이 가능하다.

한-중미 FTA에 따라 한국제품의 파나마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에서 세번과 국가명을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공용 화폐로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시가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및 다이어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 사전 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의료기기,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Dirección Nacional de Normas para la Importación de Alimentos
 - +507-522-0042
 - normas@aupsa.gob.pa

(2.1) 간소화된 의약품 위생등록 절차

2023년 6월 28일 파나마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MINSA)는 행정 명령 29호를 통해 ‘높은 기준의 규제 당국을 보유한 국가 명단(Paises de Alto Estándar)’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의약품들은 이제 ‘간소화된 의약품 위생등록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다. 통상적인 경우 파나마 내 의약품 위생등록은 의약품관리청에 신청 접수 후 2~6개월이 소요되며, 바이어의 업무 방식에 따라 추가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식물위생과(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 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스페인어로 작성)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 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 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Copia simple u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사본 혹은 원본)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 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0년대 말부터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년 3월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년 8월 발효된 지적소유권법(Law 15) 및 1996년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61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년 10월 10일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아울러 ‘제5차 지식재산권 관련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장관급 회의’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참석 하에 파나마에서 개최(2017년 7월 17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고를 위한 범지역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년 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
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 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
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선적서류(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
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
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 관련 기관

-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Tel: 507-506-6400 / 506-6406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CAP)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90
 - Fax: 507-393-6050
 - Email: uncap@uncap.org.pa

통관 대행법인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El Carmen, urb. Herhnagner, Edif. Buenaventura, Apt. 1B, Panama City
 - Tel 507-229-4210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 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iguel Angel Cuad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우수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파나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의 수가 2022년 179개에서 2023년 12월 기준 19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11억불 이상의 투자유치 및 7천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자유로운 외환 이동 보장, 비자 편의,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공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년 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나마 정부는 2020년 8월 파나마 제조업 부문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를 제정하였으며 기술 전수 및 파나마 인력 양성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과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및 파나마 전 국토 내 회사 설립 허가, 세금부문 면세 혜택 등이 있다. 2022년 5월, AEGIR Marine(네덜란드 선박부품제조업체)업체가 최초로 EMMA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이후, 스위스 기업 ABB 중미 카리브 S.A.(해양 터미널 전기 모터 및 변속 드라이브, 로봇 제조 업체)와 합병하여 총 5,900만 달러의 직접투자를 하였다. 2023년 기준 Pre-Engineered Buildings 사가 추가되어 EMMA 라이선스 취득한 기업은 총 3곳이다. 이외에도 통상산업부(MICI)는 3~4건의 신청서를 검토중에 있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46.5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미 지역 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에도 FDI는 2015년 50.6억 달러, 2016년 59.8억 달러에 이어 2017년 60.65억 달러, 2018년 65.78억 달러를 기록했다(세계은행). 특히 2018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인 칠레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함께 FDI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으로 2021년에 파나마로 유입된 FDI는 17.6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파나마는 2022년에 25.13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며 전년대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CEPAL), 특히 2023년말 꼬브레파나마 구

리광산 신규계약법에 대한 시위 격화 등의 영향으로 주재국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무디스, Baa2에서 Baa3), 이는 투자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2011~2019년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78%였던 반면, 파나마의 경우 평균이 8.81%(세계은행, 2011~2019)에 이르렀었으나, 팬데믹 때 -4.0% 기록한 이후 2021년 기준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3.8%를 보이고 있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2012년 11월 8일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 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나마-중국간 수교(2017. 6월) 이래 중국 기업들의 지사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파나마 통상산업부는 2023년 12월 기준 파나마에 191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만 총 18개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의 초기 직접 투자액이 3,780만 달러에 달함. 이에 더해, 4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미국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음)들의 직접투자 금액은 총 11억 달러를 상회하고 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3M(미국/산업 및 소비재 제조기업)Panama Ports Company (홍콩/항만), Telefonica Movistar (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

환은행이 1969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1978년 삼성전자, 1981년 LG전자 등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포스코대우, 2016년에는 포스코건설, 2017년에는 한라홀딩스가 각각 진출하였다. 진출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법인(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KEB 하나은행 등), 지사/지점(금호타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E&C 등)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당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1억 9천만 달러)을 담당하였다. 포스코E&C는 2016년 미국 AES社의 ‘AES Colon’ 프로젝트 가운데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PC 계약을 수주하여 2018년 8월에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2019년 8월에는 18만㎥ 규모의 LNG 탱크와 준설 및 부두시설(Jetty) 건설 공사를 완공하였다. 아울러 포스코E&C는 가툰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21.12월 착공)를 건설하고 있으며 콜론 LNG 터미널 증설(‘21.12월 착공)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우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재국 최대 공공인프라 사업인 파나마 메트로3호선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총 28억불 규모의 사업으로, 파나마시 Albrook에서 미래의 도시(Ciudad del Futuro) 까지 25km 구간에 14개역이 건설된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동 컨소시엄이 메트로 3호선의 파나마운하 통과구간 하저터널 공사 사업도 추가로 수주하였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 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고, 2010년 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였다. 2019년 꼬르띠소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청 명칭을 Proinvex에서 Propanama로 변경하고 관할도 외교부로 이관하여 파나마의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시장 모니터링, 주재국산 상품 홍보 및 투자 유치 촉진 등 정책에 힘써오다, 2021년 4월에는 Propanama를 청(Autoridad)으로 승격하여 별도 정부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년 7월 22일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7년 기준 한국 포함 22개국과 체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
(법률 28호; 1995년 6월 20일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년 8월 26일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년 2월 1일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년 7월 2일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법률 41호; 2007년 8월 24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32호; 2011년 4월 5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2호’를 국제전화 콜센터 서비스 제공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2011년 7월 18일)
- 다국적기업 위원회 설립 및 다국적기업(SEM)의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에 관한 법(법률 45호; 2012년 8월 10일 제정)
-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법률 80호; 2012년 11월 8일 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을 다국적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13년 4월 9일)
- ‘SEM 라이선스 발급 요건을 명시하는 결의안 20-17호(2017년 9월 11일)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취득요건, 세율 등 개정(법률 57조; 2018년 10월 24일)
- ‘SEM 라이선스 요건을 변경하는 행정명령(2020년 9월 16일) 및 결의안 (2020년 9월 17일)
- 제조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레짐법 (EMMA) 제정(법률 159호; 2021년 8월 31일)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LC) 소재 기업
 - 수입세 면제(재수출을 위한 수입물품)
 - 소득세 면제(파나마운하를 통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세 면제(해외활동에 한함)
 -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세금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가세(ITBMS) 면제
 -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기업별 고용규모에 따라 과세기준소득 인하
 - 배당세 5%
 -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세를 0.5%로 한정
(최소 100달러, 최대 50,000달러)
 - 각종 비자 관련 혜택(ZLC내 영업을 위한 단기 체류 특별 허가증 발급, 외국 인 고용 인력에 대해 2년 비자 발급, ZLC 투자자 비자 발급 등)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다국적기업 운영을 통해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배당세 면제 및 자본세, 운영세, 양도소득세 면제
 - 주재원들이 처음 파나마로 부임시 1회에 한정하여 가구, 가정 용품, 차량 수입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구매시 특별소비세 5% 적용 (통상적으로 15~25% 수준)

- 주재원들에게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 면제(사회보장세 면제)
- 주재원 및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장 가능한 5년의 장기비자 부여(5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고문·연수차 파나마 내 다국적 기업 본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1회 연장 가능한 3개월의 임시비자 부여
- 다국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한도 무제한(외국 국적의 고급인력 채용 허용)
- 다국적 제조업체 투자진출 추진법(EMMA)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과 유사
 -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준하여 제조업, 경공업 및 수리 등 서비스 제공 다국적기업에 특화하여 조세혜택 및 체류비자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상기업은 △ 제품, 기계 및 장비의 제조, 조립, 유지보수 및 수리 등 관련 서비스 △ 신규 제품 연구 및 혁신 업무 △ 제조 서비스 관련 분석, 실험, 테스트 또는 기타 서비스 △ 제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품의 보관, 배치 및 유통 센터 등 관련 물류 서비스 등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 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MEDUCA)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8천대 이상 (전 세계 등록 선박의 18%)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산업부(MICI) 및 투자진흥청(Propanama)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약 42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 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진흥청(Propanama)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등록된 회사의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에도 2012년 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21년 5월 현재 대상국은 총 49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파나마와 우리나라는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파나마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나마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서한 혹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인증 → 한국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인증 서류를 지참하여 파나마 외교부에서 공증 → 장기 비자(혹은 영주권), 여권 및 혈액 검사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SERTRACEN)에 제출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하지만, 반독점청이 이에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 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 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부가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MEF)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등)은 10%, 궤연 및 담배는 15%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 조치를 통해 기존 부가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제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부가세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고, 동 가격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 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용 부동산의 경우 12만 달러까지는 면세, 12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0.5%, 25만 달러 이상은 0.7%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가족용(상업용, 공업용, 두 번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3만 달러까지는 면세, 3만 달러 ~ 25만 달러는 0.6%, 25만 달러 ~ 50만 달러까지는 0.8%, 50만 달러 이상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가족용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면세혜택 부여)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경제재정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00%~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항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경제재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3)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 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및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 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년 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년 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4년 6월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였으나,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각종 제도 확립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을 마련해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기존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무기명 주식 보관법’을 개정(2015)해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들이 예탁기관에 무기명 주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종 수익자 추적에 용이하게 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확립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된다.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벗어나면서 파나마가 손쉬운 자금 세탁 대상국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016년 4월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과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세칭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프랑스의 조세피난처 명단에 재등재되는 등 후속 여파를 겪게 되었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OECD 공통보고기준(CRS)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가입, △금융서

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표,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해외에서 영업하는 파나마 법인들의 회계정보 등록 의무화, △세금계산서 전산화 제도 도입 준비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아직까지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2016년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도 등재(2017년 12월)되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연차 총회에서 파나마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을 지적하며 회색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2020년 5월 EU는 파나마를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 명단에 신규 지정하였다. 이후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4년간의 이행 끝에 2023년 10월 20일부로 ‘회색국가’ 명단에서 다시 제외되었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인프라 부문에서 항만 서비스 효율성 세계 7위,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연간 물동량은 약 831만 TEUs 으로 (Georgia TECH Panama) 전 세계 교역량의 3%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2021년 기준 역내에서 브라질에 이어 화물물동량 순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2021년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대서양에 위치한 콜론(Colon Container Terminal)항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만사니요 국제(MIT,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항이 1위, 발보아(Balboa)항이 3위를 차지하였다.

2) 수출입화물량

2022년 파나마의 수출량은 2,281,703톤이며, 수입량은 6,779,271톤이다.

(2) 해상운송

1)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총 44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사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26개 항구는 연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18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사청 Subdirección de puertos 자료 발췌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항구 물동량 중 95%는 해외수출입, 5%는 연안운송이다.

○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파나마 해사청)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TEUS	7,014,410	7,346,859	7,734,024	8,621,927	8,518,425	8,316,296

○ 2023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파나마해사청)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2,622,256
2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2,312,553
3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1,358,197
4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057,456
5	크리스토팔항(Cristóbal, 대서양)	888,306

2)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Panamá-Coló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s-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팔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인 Panama Ports Company(PPC)가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6월로부로 추가 25년 연장되었다. 총면적은 182,000km²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45%를 담당한다.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마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2023년 물동량은 2,312,553TEU이며, 그중 환적 컨테이너가 89.6% (2,074,262TEU)에 달한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家 및 Heilbron家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동 터미널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마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년 물동량은 2천 6백만 TEU로 그 중 85.7%가 환적화물에 해당한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안을 연결한다.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f)¹²⁹⁾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2023년 물동량은 1,358,197TEU이며 그 중 84.4%이 환적 화물, 11.3%가 국내 수요 화물, 4.3%가 콜론자유무역지대 화물에 해당한다.

라. 크리스토팔항(Cristóbal)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129)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물동량은 888,306TEU로 그 중 환적화물이 95.7%에 해당한다.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총 물동량은 1,057,456TEU이며, 그중 환적 화물이 93.3%에 해당한다.

(3) 육로운송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5,667km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역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é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i
- Transistmica : Panama-Colón
- Corredor Sur
- Corredor Norte

(4) 항공운송

파나마의 운송부문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파나마 GDP의 약 11.9%를 차지했으며, 특히 항공운송은 토쿠멘 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2023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파나마 통계청). 현재 파나마 지역의 국제공항은 총 6개이다.

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PTY),
Aeropuerto Internacional de Bocas del Toro Isla Colon(BOC),
Aeropuerto Internacional de Enrique Malek(DAV),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arcos A. Gelarber(PAC),

Aeropuerto Internacional Panama Pacifico(BLB),
Aeropuerto Internacional Scarlett Martinez(RIH)

토쿠멘(Tocumen) 국제공항은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역내 허브 공항으로서 파나마 국적 항공사인 COPA 항공사의 기항지이다. 또한 토쿠멘 공항은 90개 이상의 항공편 또는 국제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제2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20년 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모든 국제항공노선 운항이 수개월간 중단되었던바 있다. 2023년 12월 현재 31개(15개 화물 항공사 및 16개 여객 항공사)의 항공사가 운항중이며, 이중 여객 항공사는 87개 직항노선을 운영중이다.

□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 수(2023년) : 1,780만명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208,573톤(2023년), 234,925톤(2022년), 202,743톤(2021년), 145,929(2020년), 164,628톤(2019년), 168,574톤(2018년), 176,248톤(2017년), 164,767톤(2016년)
 - 화물기 운항사(2023년) : DHL Panama, Fedex, Amerijet 등 15개 항공사

□ Tocumen 공항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 직항 연결 87곳
- 취항 항공사 : COPA, United, Delta,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16개

지역		취항 도시
북미	캐나다	Toronto, Montreal
	미국	Boston, Chicago, Denver, Fort Lauderdale,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New York, Orlando, San Francisco, Tampa, Washington
중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지역	취항 도시
카 리 브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벨리스	Belize
	아루바	Oranjestad
	바베이도스	Bridgetown
	바하마	Nassau
	쿠바	Cayo Santa Maria
	아이티	Puerto Principe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도미니카공화국	Punta Cana,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생마르탱	Philipsburg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남 미	퀴라소	Willemstad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Mendoza, Rosario
	볼리비아	Santa Cruz de la Sierra
	브라질	Belo horizonte, Brasília, Manaus,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ão Paulo
	칠레	Santiago de Chile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Medellín, Pereira, San Andrés
	에콰도르	Quito, Guayaquil
	가이아나	Georgetown
	파라과이	Asunción
	페루	Arequipa, Chiclayo,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유 럽	네덜란드	Amsterdam
	독일	Frankfurt
	튀르키예	Istanbul
	스페인	Madrid
	프랑스	Paris
	폴란드	Varsovia
아시아	중국	Beijing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파나마 운하(확장 운하 포함) 물동량은 5.1억¹³⁰⁾톤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92억톤), 벌크선(0.74억톤), LPG선(0.64억톤), LNG선(0.37억톤), 화학제품선(0.48억톤) 등이다(파나마 운하청).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으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 및 LNG선의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기준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은 전체 선박의 27.83%를 차지하였다. 2022년 6월까지 운하를 통과한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이 17,000척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8월 중에는 하루에 총 46척의 선박(네오파나막스급 12척, 파나막스급 34척)이 운하를 통항하며 1일 물동량 최고 기록(1,689,268 톤)도 달성하였다. 2023년 기준, 세계 무역의 약 3%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아시아, 미국 동부해안-남미 서부해안, 미국 동부해안-중미서부해안, 유럽-남미 서부해안 등이다. 2023년 기준, 총 180개의 연결 루트를 통해, 전세계 170개국 및 1,920개의 항을 연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파나마 운하 통행 화물 중 71.8%는 미국발 및 미국행이었으며 중국 22.7%, 일본 14.5%순이며, 우리나라는 9.8%로 4위 이용국이며 그 밖에 주요 이용 국가로는 칠레(9.7%), 멕시코(8.2%), 페루(7.0%), 콜롬비아(5.6%), 에콰도르(4.9%) 등이다.

2)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¹³⁰⁾ 범용 선박 톤수 시스템(CP/SUAB, 영어로는 PC/UMS)에 따른 파나마 운하의 톤수 시스템으로 전체 컨테이너선 및 여객선의 톤수를 포함함. 룬톤과는 구분되어야 함.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 기준 약 78만 달러).

한편, 2017년 10월부터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LPG선, LNG선)에 대한 신규 특별 요금제가 시행되어,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이 북쪽 방향(태평양→대서양)으로 운하를 통과한 후 28일 내 다시 귀환 통항을 하는 경우 일정 선박 활용률(70%)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LPG선과 LNG선의 적재 용량이 각각 2%, 10% 인 경우에는 공선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규 특별 요금제 시행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파나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20여일 더 소요)를 선택하는 선박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지속적인 강수량 감소 상황에서 용수 및 식수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Cargo por agua dulce)이 신설되었다. 적용 대상은 선체 길이가 125피트 이상인 선박이며, 기본요금 10,000 달러 및 운하 수위 정도에 따라 운하 통행료 1~10%의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2021년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운하 전체 수익의 0.9%를 차지했으며, 2022년 9월까지 약 4억 570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했다.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운하청의 직접 국고 기여액은 19.4억달러로서(파나마 대통령실) 운하 확장(2016년 6월) 이래 2015 회계연도 10억 달러, 2016 회계연도 10.1억 달러, 2017년도 16.5억 달러, 2018년도 17억 달러, 2019년도 17.8억 달러 등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3) 확장 운하 개통 및 향후 전망

2007년 9월 개시되어 당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 준공 예정이었던 확장 운하는 초과 공사비 분쟁 및 기술적 결함(균열·누수 현상) 보수로 인해 개통시기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6년 6월 26일 확장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총사업비는 53억불 규모로 32억불 규모의 제3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갑문이 새로 가동되면서 선박 적재화물 규모가 약 3배 증가(4,400TEU→14,000TEU) 하였고, 이로 인한 운송비(연료비) 절감 효과 및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LNG 수송선 포함)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네오파나막스급 선박과 LNG 선의 통항이 개시됨으로써 파나마운하의 통항료 수입, 화물 물동량, 통항 선박수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 및 2017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컨테이너선·가스선에 대한 신규 통항 요금제 덕분에 상기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나 2023년 극심한 가뭄에 따른 가툰(Gatun) 호수 수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청은 지난 2월 초부터 선박의 흘수 및 통항 선박 수를 제한해 왔다. 이에 파나마 운하의 수입은 통행 제한과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2024년까지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6) 특수경제구역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파나마의 전체 특수경제구역을 3,500개의 업체가 이용하였으며, 총 3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편, 2023년 기준, 총 2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이 중 13개가 운영중이며, 총 12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1)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on)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 ZLC)는 파나마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

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하는 등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 운하 및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미주대륙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ZLC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벨기에, 홍콩 등이며, 주요 수출국가는 코스타리카, 파나마(통계상 별개의 국가로 취급함), 콜롬비아, 미국 등이다. 주요 교역 품목으로는 의약품, 휴대폰, 신발, 컴퓨터, 농약원료, 주류, TV 등 적기 공급이 중요하고 창고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파나마 태평양 자유 무역지대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되어 있다.

3) 기타 자유 무역지대

기타 자유 무역 지대로는 Corozal 자유 구역(36개 업체 입주), Albrook 자유 구역(24개 업체), Panaexport(18개 업체), Panapark(18개 업체) 자유 무역지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나마시티와 콜론 지역을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업체들이다.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이다. 2023년 기준 파나마에는 총 66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PANAMA50), 중앙은행이 없이 은행감독원의 관리하에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 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 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출하여 금융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2007년 8월 24일 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기준 총 191개의 다국 적기업(SEM)이 파나마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화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2014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 하였으나,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2015년), △의심거래보고 제도 확립 등의 노력 덕분에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6년 4월 파나마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 및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기를 맞았으나, △OECD 공통보고기준(CRS) 2018년부터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MAC) 서명,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2017년) 및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 아직도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 부문에서의 결함으로 회색국가로 재지정되었다.

이후 파나마 경제재정부(MEF)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4년간 이행한 끝에 2023년 10월 20일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당국은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제 금융거래가 원활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관광, 무역이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 조달 조건이 완화되어 민간분야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어 보험 및 증권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은행업 라이선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일반 라이선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선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선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공식 은행 2개(국립은행, 저축기금), 일반 라이선스 은행 40개, 국제 라이선스 은행 14개, 대표 라이선스 은행 10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6
중남미·카리브	32
파나마	16
유럽	7
아시아·중동	4
다국적	1
합계	66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일반 라이선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하여 Banistmo으로 사명 변경

상기 라이선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파나마은행협회(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가 있다.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선스 은행(40개)과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이다.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

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 파나마 ICT시장 통계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동통신 가입자	5,825,677	5,865,130	6,426,848	6,691,911	6,981,815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38.1	137.1	148.2	152.2	156.8
유선라인가입자	649,160	808,967	876,308	843,052	811,488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5.4	18.9	20.2	19.2	18.2
광역통신망 가입자	3,368,621	3,848,642	4,192,785	4,403,064	4,738,271

(단위 : 명)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Datos Abiertos.

(2) 파나마 통신시장 역사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 (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 달러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파나마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 (Movistar)에 매각되었다.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20년의 영업허가 취득). 한편, 2022년 6월 23일 C&W가 2억 달러에 Claro Panama, S.A.를 인수하였다.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사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활동(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사전 지불(Prepaid) 전화 사용자는 590만명, 사후 지불(Postpaid) 전화 사용자는 98만명으로 비율은 약 5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었던 2014년 대비(7대 1) 사후 지불 전화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2023년 기준, 약 700만개의 이동전화 회선수가 활성화 상태이며, 이는 100명당 156.8명에 해당한다. 한편, 전체 이동전화 회선수 중 광대역통신망 회선수 426만개가 활성화되어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2023년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총 수입은 11억 3000만 달러로, 2022년보다 약 450만 달러 증가했다.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년~2022년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현재 100명당 8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3년 기준(예상치)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00명당 18.2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0명당 62.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9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예상치), 인터넷 접속방식은 CABLE MODEM(75.4%), ADSL(0.3%), Wifi(0.5%), Wimax(0.9%), 기타(35.0%)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통계 (단위 :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이용자	1,952,277	2,065,384	2,225,018	2,491,671	2,796,656
100명당 이용자	46.3	48.3	51.3	56.7	62.8
케이블 모뎀	470,213	515,368	518,905	531,168	543,721
ADSL	52,884	26,110	21,782	6,663	2,036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파라과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 수출의 약 절반 정도가 인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총 수출 중 37%), 아르헨티나(19%), 칠레(12%), 러시아(4%)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농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작은 내수시장, 제조업 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한 기후환경,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공급 능력, 인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낮은 법인세 등 다양한 투자진흥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중이다.

파라과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꾸준한 경제회복이 이어지며 2023년 중 남미 최고 수준인 4.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법(연간 GDP를 초과한 재정적자 비율을 1.5% 이내로 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2023년 4.1%, 2024년 2.6%, 2025년 1.9% 이내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하여 2026년에는 1.5%를 달성할 계획이다.(참고로 파라과이의 2022년 기준 정부부채는 36.6%(재무부) 수준)

관세 장벽

2023년 6월 기준 파라과이 평균 실행관세율은 8.9% 수준으로, 전체 상품 10,50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5%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9%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관세 적용 품목은 알루미늄 제품(35%), 원단(26%), 신발류(25%), 철강(22%), 시가(22%) 등이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수입 대부분에 무관세 특혜를 적용하고 있으며, MERCOSUR를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인도, 쿠바,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회원국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으로서 상대 회원국의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 차등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MERCOSUR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 97 중 21개의 섹션을 예외로 설정하여 AEC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국산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를 부과하며,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담배 20%, 위스키 12%, 휘발유 24~38%, 디젤유 18%,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상품 1%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전선, 기저귀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품질증명서 또한 요구된다. 통관절차 및 안내 및 문의는 관세청(DNA, www.aduana.gov.py)을 통해 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조치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중이다.

2017년 WTO 무역정책검토에서는 최근 무역원활화 조치 이외에도, 수입자 등록, 수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수입금지 대상품목 : 아프리카벌,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동물 및 그 부산물, 살아

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메틸-, 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 산나트륨 등), 독성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아동 포르노 등

상기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 등의 수량 제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 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 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다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대 회원국들에게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MERCOSUR 원산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역내산 비율에 대해 60% 충족이 필요하다.

※ 마킬라 산업의 경우는 40% 충족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 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파라과이는 단 3건의 반덤핑 절차*만을 개시하였으며,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전무하다.

* 1999년 아르헨티나산 살충제, 2004년 브라질산 시멘트, 2016년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대한 반덤핑 절차 개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파라과이는 산업통상부(MIC) 산하 기관인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 관보와 홈페이지(www.snin.gov.py)를 통해 모든 기술 규정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자, 면, 화학제품, 서비스공급자, 식품, 육류, 자동차, 신발, 연료, 철강, 대두, 케이블 등에 대해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했다. 파라과이가 채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적합성 평가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 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의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윤활제 등 특정제품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위생검역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MAG)가 위생검역 관련 절차를 관리한다.

위생검역 관련 파라과이의 주요 법령으로는 농업보호 및 식물 위생검역법(법령 627/24), 보건법(법령 836/80), 식물위생 기준 도입(법령 123/91), 종자 보호 및 재배에 관한 규정(법령 385/94) 등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제조업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 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킬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2017년 WTO 무역정책검토는 파라과이가 정부조달 절차의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생산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달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라과이 정부조달절차상 국내 재화 및 서비스 최소 비중은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국내 재화 및 서비스가 40%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 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하였다. 한편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한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i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온라인 장터(Tienda Cirtual),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 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무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는 구속력 있는 해외 차관 도입을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 정치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나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

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지 우수 업체들과 컨소시움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 정책이행 및 규정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지식재산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한다.

파라과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1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 지리적

표시 4923/13)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의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적·행정적 규제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한다. 일례로 휴대전화기 불법복제품 및 비인증제품의 유통이 지속 이슈화됨에 따라 파라과이 검찰청은 2016년 4월 주요 언론과 외교단을 초청하여 복제품 파쇄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속품 수입자 등록과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산티아고 페냐 신임대통령은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유통 근절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부터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운송분야의 경우,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수로(주로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운송의 중요성이 크며, 파라과이 국적선에 운항 우선권이 있다.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Tigo(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의 자회사), Personal (Telecom Argentina사와 ABC Paraguay 합작), Vox(파라과이 국영통신사 COPACO 산하), Claro사(America Movil의 자회사) 4개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한다. 또한 교육 분야는 외국 인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으나 단, 파라과이의 국립 학교장의 경우 파라과이인으로 제한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 전력공사(ANDE)가 독점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환경

내·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로 제한함으로써,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는 소위 ‘10/10/10 정책’을 통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10%로 설정하고 있어,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편이다.

- 개인소득세: 10%(브라질 28%, 아르헨티나 35%)
- 법인세: 10%(브라질 최고 34%, 우루과이 25%)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17%, 아르헨티나 21%, 우루과이 22%)

개인소득세(8-10%)는 2004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이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은 2022년 기준 연간 8천만(약 11,111달러 상당) 과라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며, 2022년 12월 기준 약 206,000명이 납세를 완료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납세 기준선을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국내생산 증진 및 고용촉진을 위해 1990년 도입된 투자진흥법(법령 60/90)에 의한 내·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계획서 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 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15년 도입된 투자보호법(법령 5542/15)은 자본금 및 수익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특히 산업 프로젝트로 1억달러 이상 투자시 최고 20년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23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4개국 중 76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남미 주요국 세계경제자유지수 : 칠레(23위), 우루과이(27위), 페루(45위), 콜롬비아(62위), 파라과이(78위), 브라질(127위), 아르헨티나(144위), 볼리비아(167위)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나 마킬라 제도와 같은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Zona Franca Internacional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3국으로 수출시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단일세(IZF, Impuesto Zona Franca)만을 부과된다. 반면, 국내 판매시에는 매출소득의 최대 10% 세금이 부과되고, 생산에 사용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도 부과된다.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Montevide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가공무역제도인 ‘마킬라 제도(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4/97)’는 1997년 제정된 이후 2001년부터 동 제도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본격 개시되었다.

마킬라 제도는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장려제도이다. 사업규모, 투자자의 국적, 유효기간, 투자지역,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나,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며, 현지 법적 대리인은 파라과이 국적 또는 영주권자여야 가능하다.

마킬라 제도 시행 초기 이를 활용하는 업체는 40~50여개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12월 기준 257개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기준 2만 2천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0억 불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마길라 제도 활용 수출 추이

2018년 5.5억 달러 → 2019년 5.9억 달러 → 2020년 5.4억 달러 → 2021년 8.7억 달러
→ 2022년 10.3 달러

마길라 제도를 활용한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차 부품, 의류 및 신발,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로 MERCOSUR(남미공동시장)로 수출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등지로도 일부 수출된다.

또한,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에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법제 정비

2013년 프로젝트 파이낸싱법(PF)을 개정하고 민관합작투자법(PPP)을 제정해 정부 재원 부족시 외국인 민간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다만, 해외 차관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나 신규 제도에 대한 행정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

구조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달러 현금을 예치할 경우 3~3.5%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 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 SUAC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사항은 후반부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다만,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설립 시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 SUACE) 이용이 가능하다.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s, SUAC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ce.gov.py)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정관을 등록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입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한다.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야

한다.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 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ng Bribery)에는 미가입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 동향(2022년)

CEPAL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의 대파라과이 투자액은 약 4.7억 달러로 전년도 약 2억 달러에서 약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파나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금융중개업, 식물성유지 및 육류 생산, 상업, 운송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남아공(1974), 프랑스(1980), 영국(1992), 스위스(1992), 한국(1993), 네덜란드(1994), 페루(1994), 헝가리(1995), 루마니아(1995), 대만(1996), 스페인(1996), 칠레(1997), 베네주엘라(1997), 독일(1998), 엘살바도르(1998), 오스트리아(1999), 체코(2000), 코스타리카(2001), 포르투갈(2001), 쿠바(2002), 볼리비아(2003), 벨기에, 룩셈부르크(2004), 이탈리아(2013)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파라과이의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으로는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치주의 부재 등이 있다. 또한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

파라과이 노동법은 고용주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종업원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이 없으며 고용, 해고 등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파라과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인구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 인구 610만 명 중 노동 가능 인구(15세~64세)는 67%에 해당하는 약 40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인구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 노동인구, 직업별 노동인구, 산업별 종사자 인구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2,680,373파라니(약 367달러, 2023년 10월 기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구의 약 42%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 환율 1달러=7,300파라니 (2023년 10월 기준)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100%
- 공휴일 노동 : 일급+일급의 100%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치 일급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외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회 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근로자(2022년 총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인구 변동 예상치)의 30.8%(약 89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 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2013년 경쟁보호법(법령 4956/13)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립 경쟁위(CONACOM)를 설치하였다. 경쟁보호법은 민간, 중앙정부기관 및 자치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관행이나 협약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반경쟁 행위를 검토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합병·인수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2022년 기준 생산전력의 약41%를 브라질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여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하고 있다.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광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업무 수행시에는 현지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체류허가연장(Radicación Precaria), 유효기간 1년의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l) 또는 유효기간이 영구적이어서 한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 한국여권,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한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또는 공증) 필수)
- 예치금 :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영주권 절차완료까지 24,554,600 과라니(약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함(영주권 취득 후 환불).

구비서류 제출시 90일 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후 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접수증은 검찰 검문시 불법체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UACE)'을 이용할 수 있다. SUACE 사무실을 방문하면, SUACE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폐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 성격 : 외국인 투자유치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파라과이 범정부기관

- 구성 : 산업통상부, 재무부, 법무부, 이민청, 고용노동부, IPS(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아순시온시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
- 주소 : Cap. Villamayor c/ Del Puerto(아순시온시청 인근)
- 전화(대표) : +595-(0)21-513-531
- 홈페이지 : <http://www.suace.gov.py>
- 근무시간 : 07:00~17:00(월요일~금요일)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1년간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인정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Carnet de Admin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등록증 사본, 혈액형검사서(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 의료기관의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간에는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페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23.11월 기준
국가 일반	인구	(명)	34,049,588
	면적	km ²	1,258,215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5.7	2.2	-11.1	13.2	2.7
	1인당 GDP	US\$	6,947	7,048	6,080	6,635.5	7,125.8
	명목 GDP	US\$십억	225.4	229	203.77	225.43	242.39
	정부부채/GDP	%	25.8	26.8	36.5	36.35	33.8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2.1	2.0	6.43	7.8
	민간소비증가율	%	5.2	5.2	-7.1	11.7	4.4
	실업률	%	6.7	6.68	12.79	10.2	7.8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백만	49,066	47,688	41,669	56,241	66,235
	수입실적	US\$백만	41,870	41,074	36,138	50,843	55,902
	무역수지	US\$백만	7,197	6,615	5,531	5,398	10,333
	민간투자증가율	%	4.2	4	-16.5	21.1	-0.3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년)	US\$백만	6,761	6,241	-417	5,755	11,656
	총외채/GDP	%	8.8	8.5	14.9	20.2	18.9
	외환보유고	US\$백만	60,121	68,316	74,707	75,358	71,883
	이자율	%	2.88	2.38	0.7	2.5	7.5
	환율	US\$	3.29	3.34	3.49	3.9	3.84

자료 : 페루 중앙은행, 페루 경제재정부, 세계경제은행, 페루 통계청, UNCTAD(외국인투자금액은 잔액 기준)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 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우말라 정부에 이어 볼루아르테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23년 현재 수입관세율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피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2년 이상 수령의 중고 자동차로 3.2만 km 이상 주행거리

전체 수입금지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aduanas.html>)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 상품 및 비전통상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

전체 수입제한 품목은 페루 관세청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aduanas.html>)에서 제한금지품목(Mercancías Restringidas y Prohibidas)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에는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22년 11월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일부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한 이후로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규정했다. 페루는 한국산 수입제품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대 10년내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일-페루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페루가 중국과 일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2023년 11월까지 현재 페루 공정위원회에 제소된 품목 중 한국제품은 없다.

디지털 무역 장벽

페루는 법령 27291(2000.6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리실 행정명령 2012-129호를 통해 디지털 무역활동 중 사이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법령 29733(2011.6월)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특이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사전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2016년 12월 16일자 법령 개정(342-2016-EF)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관세율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기준 품목 수(7,790개) 중 71.6%(5,727개)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1,602개)가 6% 관세를, 8.4%(674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0.9%이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22년 기준 2.1%이다.

현행관세율

페루 정부는 법령개정(404-2021-EF)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관세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22년 수입액 (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5,727	71.6%	46,889.7	77.8
6	1,602	20.0%	10,781.4	17.9
11	674	8.4%	2,608.3	4.3
계	8,003	100.0	60,279.4	100.0
명목평균관세율(%)			2.1	
관세율 평균편차(%)			3.6	
실효 관세율(%)			0.7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5	

자료 :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페루 관세청의 세관업무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aduanas.html>)에 접속하여 항목 Aranceles → Tratamiento Arancelario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HS 코드를 입력 시 페루 수입관세율 및 HS 코드별 법규 또는 규제 및 국가별 관세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1)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개방 정책 견지와 이로 인한 관세인하 조치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체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 업체·상업계 및 페루정부는 개방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더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페루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對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루 양허품목 가운데 즉시 철폐 67.9%, 조기(5년 내)철폐 81.3%, 10년 철폐는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한국 양허품목은 즉시 84.5%, 조기(5년 내) 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한국의 경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2)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간 관세제도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는 불완전 관세동맹(Unión Aduanera) 대외공동관세(El Arancel Externo Común)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세구조는 5%, 10%, 15%, 20% 4단계(평균 13.6% 수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5%는 기초원자재와 자본재에 적용되며, 10%는 낮은 수준으로 가공된 기초원자재 및 소모품에, 15%는 중간재 및 일부 소비재에 적용되며, 20%는 최종 소비재에 적용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에 적용되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특별우대를 받고 있다. 페루에 대하여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양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별도의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간 관세제도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는 역내 특혜관세, 역내 포괄협정 및 회원국간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페루 포함 13개국)간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ALADI 회원국에 대하여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 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 (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3	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8월
5	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2월 28일 브뤼셀에서 협상 - 2011년 3월 23일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년 6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3월 1일 발효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6월 1일 스위스, 리히텐슈 타인에 대해서 발효 - 2011년 10월 1일 아이슬란드 발효 - 2012년 6월 1일 노르웨이 발효
11	일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12	한국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1년 5월 25일 협정 체결 - 2012년 5월 1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Alianza del Pacífico 태평양동맹	무역자유화를 위한 경제 블록 결성	출범	- 2012년 6월 출범 (페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2015년 7월 3일 1차 추가의정서 발효 2016년 7월 1일 2차 추가의정서 발효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7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전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전
18	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5년 5월 29일 체결 - 2017년 1월 1일 발효
19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진행중	- 2016년 2월 6일 가입 서명 - 발효 진행 중
20	DDA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중	- 2001년 11월 협상 시작
21	TISA	복수국간 서비스 무역협정	협상중	- 2013년 6월 협상 시작
22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0년 11월 8일 협상 시작
23	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3년 10월 21일 협상 시작
24	인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15년 3월 30일 협상 시작
25	호주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 2017년 3월 24일 협상 시작 - 2018년 2월 12일 타결 - 2020년 2월 11일 발효
26	영국	무역협정	발표	- 2019년 3월 15일 타결 - 2020년 12월 31일 발효
27	CPTT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 2017년 5월 21일 협상 시작 - 2021년 9월 19일 발효
28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21년 5월 11일 협상 시작
29	홍콩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중	- 2022년 11월 16일 협상 시작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 무역 보안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2	멕시코	무역통합협정 (ACE 8)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간 관세 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 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CE. 50)	발효	- 2001년
4	브라질	경제협력확대협정	발효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월 29일 체결 - 발효 진행중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정책도 정비하고 있다. 2023년 현재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이라 불리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 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4,600(1,200달러 상당, 2022년)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스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 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원산지 증명서	안데스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5.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6.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7.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8.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9. 검사 및 감독증명서	필수	Certificado de Inspección o Supervisión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sco 공항, 그리고, 아레키파(Arequipa), 이키토스(Iquitos) 등의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는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Fraport AG, 70%)이 30년 양허(Concession)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지역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까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로 한국에서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까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íta, Chimbote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분기 연간 100~15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Chancay 다목적 항만이 개장될 예정이다. Chancay 다목적 항만은 중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비용

페루 무역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소요시간	48.0	55.3	12.7	60.0	20.0	13.0
수출소요비용(달러)	630.0	516.3	136.8	290.0	400.0	185.0
수입소요시간	72.0	55.6	8.5	54.0	44.0	6.0
수입소요비용(달러)	700.0	628.4	98.1	290.0	450.0	315.0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2019)

주요인증제도

개요

국가품질원(INACAL, Instituto Nacional de Calidad)은 법령 30224호(2014년)에 따라 페루 생산부(Produce)에 설립된 기술기준, 표준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이다. INACAL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제협정 등에 따라 페루 국내는 물론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NACAL의 품질인증업무는 제품 및 서비스별로 공식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OEC)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는 규정된 세부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하여 보건국(DIGESA)이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충전기기, 전선

수산물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 화학약품의 경우 생산부(PRODUCE), 오존품목은 오존기술사무소(Oficina Técnica de Ozono), 배터리품목은 규제국(Dirección de Regulación)에서 각각 인증을 담당하며 2001년 1월부터 실행했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630.69누에보 솔(한화 약 27만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2) SENASA 인증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

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053-85(1985년)과 N°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에서 발급한 SENA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43.20누에보 솔(한화 약 1만 9,000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SENASA 홈페이지¹³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SUCAMEC 인증

SUCAMEC은 무기 및 탄약 수입 허가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며반정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 007-2000-IN에 근거한다. 대상 품목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기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폭발물 수입 등록 절차에는 약 219.9누에보 솔(한화 약 78,000원) 이 소요되며 1달 동안 심사를 거치게 된다.

131) <https://servicios.senasa.gob.pe/consultaRequisitos/consultarRequisitos.action>

4) DIGEMID / DIGESA 인증

페루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위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 및 N°28376이 제정되었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장난감, 식품, 음료 등의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의약품 관리국)과 DIGESA(환경보건국)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장난감,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DIGESA 인증은 식품, 음료 등에 해당된다.

제품별 구체적인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은 구체적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현지 수입 업체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화학·약품 전문가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위생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5년 4월, 페루 정부가 한국을 위생 수준 상위국 리스트에 포함시켜 의약품 등록이 용이해졌으며, 2017년 6월 우리나라 약전이 등록되어 우리 의품을 등록하는데 타 국가 약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됐다.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하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용도, 테스트용등) 허가과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며 인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2022년, 드론에 대한 인증 절차가 의무화되었으며 페루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드론과 조종사 모두 교통통신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등록은 비

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절차는 약 60일간 진행된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년 법령 N°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 수입 30일 전에 샘플과 함께 외교부 문서사무국에 제출하며 통상 7일정도 소요된다. 인증절차 미이행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 주소: <http://consultasenlinea.mincetur.gob.pe/webRT/frnBuscador.aspx>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 (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

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 (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 (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 (CONSUCODE :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 를 대체, 강화하였고,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공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조달시행기관 (법률 제30225호 제3조 참조)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 입법부, 사법부 및 헌법상 독립기관
- 지방정부
- 국공립대학
- 국공영기업
-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재단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조달법 및 시행령 : Ley No. 30225(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019.3월 개정), Ley No. 30225(Reglamento de la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018.12월 개정)
 - 정부 예산법 : Ley No. 28411(General del Sistema Nacional de Presupuesto, 2004)

(2) 조달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페루정부의 인프라 부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감소한 217.2억솔(2019년 349.4억솔)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체 49,208건 중 입찰 후 계약 687.9억솔(19,904건), 직접 계약 46.7억솔(9,354건), 기타(옥션 등) 60.0억솔(5,596건)을 시행했다.

계약방식별로는 공개경쟁입찰이 39.8%(2,135건, 964.4억솔), 국제입찰 2.8%(1,580건, 8.1억솔), 간이입찰 22.3%(19,904건, 67.6억솔) 등으로 나뉘어지며, 계약목적물 금액에 의해서는 물품취득과 서비스 제공이 45.1%, 공사시행은 40.1%이다.

발주주체별로는 중앙정부가 78%, 지방정부(Regional 및 Municipal)가 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Petroperu(석유공사), FONAFE(기업활동기금) 등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요 국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찰 발주가 잦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정부간 계약(G2G) 추진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2019년 : 페루-대한민국 친체로 신공항 사업 PMO
- 2020년 : 페루-영국 엘니뇨 피해 재건사업 PMO, 페루-프랑스 쿠스코 및 리마 병원 건설사업 PMO
- 2021년 : 페루-프랑스 중앙고속도로 사업 PMO, 페루-프랑스 산타로사 고속화도로 사업 PMO

조달 방법 :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계적인 통념상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사전심사 받은 후 모든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항시적인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2017년 4월 3일 이후 RNP 갱신제도 폐지)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s://portal.osce.gob.pe/osce/content/accesos-al-seac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 페루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기업의 대리인 선임제도)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 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 RNP 등록비용

종류	비용	
	국내	국외
자연인 상품(bienes) 등록	50솔	58솔
법인 상품(bienes) 등록	221솔	-
자연인 상품 및 서비스(bienes y servicio) 등록	50솔	58솔
법인 상품 및 서비스 (bienes y servicio) 등록	221솔	-
법인 서비스(servicio)	221솔	58솔
컨설팅(consultoria) 등록	349솔	좌동
법인 시공(ejecutor) 등록	349솔	좌동

출처: <https://portal.osce.gob.pe/osce/sites/default/files/Documentos/Banner/Enlaces/cuadro%20TASAS.pdf>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은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찰 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설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찰 등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 최소 50솔, UIT의 1.86%
- 법인 입찰등록비 : 최소 99솔, UIT의 2.30%
- UIT : 4,950솔(2023년 기준)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신용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BCP)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 콘티넨탈 은행(BBVA-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지점 또는 온라인(<https://pagalo.pe>)
- 페루 조달청(OSCE) 본청 창구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 제도에 등록

RNP 등록은 RNP 홈페이지¹⁾에서 가능하다. 조달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등록비용 지불 포함)하면 3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증명서 인쇄가 가능하다.

- 1) <https://www.gob.pe/410-inscribirte-en-el-registro-nacional-de-proveedores-rnp>
- 2) <https://www.gob.pe/9917> (Consultar el estado de tu trámite에서 3가지 중 택1)

RNP 등록은 거주/비거주 여부로 구분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거주자 절차(사업자고유번호(RUC) 취득 및 페루 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STEP 1: 인가된 은행(Scotiabank, BCP, Banco de la Nacion, BBVA Continental 등)에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후 RNP <http://www.rnp.gob.pe/> 접속 → 'Bandeja de Mensajes' 메뉴 클릭 → RUC 및 등록비납부 영수증 번호 입력 → RNP 비밀번호 취득 RNP 웹사이트 접속 →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 STEP 3: 작성 완료 후 'Datos Completos' 클릭한 후 전자신청서 및 'rotulo de envio(shipping label)' 출력 → 공식절차가이드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OSCE의 Tramite Documentario에 서류 제출 →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y po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to become participant and bidder)에 접속하면 정보입력 가능
 - STEP 4: 서류제출 후 30영업일 내로 평가결과를 통보 → 제출 서류가 승인되면 1영업일 이후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Postor y Contratista에 접속 및 정보 입력 가능 → 조달청 등록 완료, 정부발주사업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가능
- 2) 비거주자 절차(납세자 고유번호(RUC) 및 등록된 운영사무소 없이 법적 대표자만 존재할 경우)
 - STEP 1: 등록희망사업자(공급자)는 법적 대표자 위임장 구비 → 조

달청 본사 방문하여 위임장 제출 및 승인획득 후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이후 조달청 본사 재방문 및 RNP 접속하여 고유번호(Non-resident foreign code 및 RNP password)를 취득 → RN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 STEP 3: 이하 상기 거주자 등록절차와 동일

3) 조달청 규정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공식절차가이드)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비 납부 영수증
- 기술직 직원 학위/경력 증명서 사본
- 기술직 직원이 포함된 급여지급명세(Payroll) 사본
- 급여지급이력이 없는 경우(사업시작 초기단계의 경우) 고용계약서 사본으로 대체가능
- 등록된 운영사무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대표자는 페루 등기소(Registros Publicos del Peru)에 등록된 위임장을 제출(등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위임장은 효력 없음)
- 회사 설립 증명서류(escritura publica de constitucion) 및 최근 자본증식 증명서류
- 최근 5년 시공경험 증명서류
 - 사업계약서
 - 공사규모가 명시된 최종 완공증명서
 - 기타 공사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 부채비율(=자기자본/총부채)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지불(상환)능력(=자기자본/사회자본)

· 매상 총이익(=영업이익/(자기자본+고정부채))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정부조달규정(Reglamento de la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55항에 부합해야 함

※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및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gob.pe/410-inscribirte-en-el-registro-nacional-de-proveedores-rnp>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관보(El Peruano) 및 전국 주요 일간지 신문에 공고되는 입찰광고를 통해 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전자입찰제도 SEACE (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 (<https://prodapp.seace.gob.pe/portal/>)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좌측 상단 카테고리 중 '사업정보접속(Acceso a la informacion sobre los Procedimient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 서비스, 재화 등 선택 가능)', '조달 방법(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할만한 규모 있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금융이 투입되는 양허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프로젝트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청(Proinversion)에서 분야별 사업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

(<https://prodapp2.seace.gob.pe/seacebus-uiwd-pub/buscadorPublico/buscadorPublico.xhtml>) 에 접속

② '검색창(Buscador de Procedimient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효한 조달 정보 검색

③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중 우측 'Acciones' 클릭 후, '전자조달 정보,

일정 등 조회

- ④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제출
- ⑤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조달 제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 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싱 조달 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된 상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식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식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서적을 싼 값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5년 기준 컴퓨터 이용자의 63%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2013년(65%, 2.49억 달러) 대비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남미 평균(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장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이끼끼(Iquique) 자유무역지대를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2022년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4.258로, 전년대비 0.67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서, 여전히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2022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29개국) 중에서 92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21개국) 중에서는 12위에 해당된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률 및 정치 환경 :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 물적재산권 :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설립 되었으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법령 제1033호에 따라,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Dirección de Derechos de Autor)’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Dirección de Invenciones y Nuevas tecnologías)’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증, 외

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 ‘식별기호부(Dirección de Signos Distintivos)’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동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La Sala Especializada en Propiedad Intelectual)은 제1심 중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법(법률822호)에 따르면 INDECOPI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693,000누에보 솔(약 2억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장 임시 폐쇄, 위반 콘텐츠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 The Software Alliance)의 소프트웨어 글로벌 설문조사(Encuesta Global de Software, 2018.6월)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페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2%가 불법(라틴아메리카 평균은 52%)이며, 최근 10년간 10%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페루의 저작권법(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828,000솔(약 2억 9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확산되어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기업은 359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기업은 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용정책을 통해 11%까지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22년 606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

2022년에는 특허출원(Patentes de Invención) 및 실용신안(Modelos de Utilidad) 신청이 606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99%, 2020년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 ‘페루 발명대회(Concurso Nacional de Invenciones)’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 2022년에는 9월 27일까지 제안서를 받았으며, 11월 23일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상, 녹색 특허상, 페루 발명가 상을 통틀어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 일반적으로 10년
 -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 외국 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한다.

투자자	현지 설립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정성- 외환 거래의 자유-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1991년 11월 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 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아르헨티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3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관세 및 수입허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여, 비교적 개방된 경제중 하나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2003년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표방한 페론당의 키르츠네르 대통령에 이어 2007~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12년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내수중심의 보호주의 경제로 회귀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나 정부는 2012년 2월 신규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 2012년 4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및 외환규제 강화 등 극단적인 국가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국가개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2012년 EU, 미국 및 일본 등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주요 협력국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크리스티나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에 패소하여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2015년 12월 집권한 마크리 대통령은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점진적 완화, 헤지펀드와의 채무상환 협상,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 등 개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미국 국제 금리 인상 등이 본격화되며 폐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였으며, 결국 2018년 5월 IMF로부터 약 57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는 등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018년 9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세를 부활시켰으며, 2019년 9월에는 △개인의 외환구매 금액 상한 설정 및 △수출 외화대금의 의무청산 기일 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통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9년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인플레이션, △실업률, △빈곤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출 제한, 외화반출 제한, 생필품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최장기간 락다운을 실시하였으며, -9.9%의 경제성장을 및 36.1%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2021년에는 2020년의 기저효과를 받아 성장률이 10.4%로 반등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국제적인 가격상승에 힘입어 5.2% 성장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IMF와 440억불 규모 구제금융 협상, 파리클럽과 20억불 규모 파리클럽 채무조정협상 등을 타결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2022년말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출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9%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역시 사상 최소치인 200억 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2022년 94.8%, 2023년 10월 기준 142.7%에 달하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정(23.1-10월 간 비공식시장의 페소화 가치는 약 80% 폭락)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양국 교역

한-아르헨티나 양자 교역은 2012년 약 2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아르헨티나

국내경기 불황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다시 對 아르헨티나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우리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부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대두유, 대두박, 리튬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양자 간 교역은 수입 18억달러, 수출 3.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80% 급증하였으며, 2022년 양자 간 교역은 수출 5억 2,800만 달러, 수입 25억 달러로 7,100만 달러로 총 교역량 3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미 종전 최고치인 2012년의 24억 달러를 넘어서 수교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주수입품목인 옥수수 및 대두제품의 수확량이 급감하여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2023.1-9월 현재 양국 교역은 수출 3억 7,800만 달러, 수입 10억 3,000만 달러로서 교역총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약 22억 달러)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1,448	942	1,206	1,226	2,215	3,100
수출	836	536	341	332	390	528
수입	612	406	865	894	1,824	2,571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농수산물 분야에 강점이 있는 등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만큼 양국 교역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하면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타결되면 양국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교역 규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르헨티나 측이 동 무역협정의 주요협상에서 부담을 표명한 상황으로서 향후 협상 경과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관세 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0~20% 이내로 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보통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 제품 대상 독립적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2012년부터 2021년말까지 100개 품목에 대해 최대 35%까지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년 9월 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헨티나 평균관세율은 13.5% 수준이다.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최대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증가세(Ad Valorem)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라 35% 범위 이내에서 중간재의 경우 낮은 관세를, 고부가가치제품 또는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비료 6-10% △플라스틱 2-14% 종이 및 펄프 등 6-16% △도서, 인쇄물 등 0-16% △의류 및 의류부속품 등 35% △유리 제품 2-18% △가구 및 침구류 18-35%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18-35%이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2012년 6월 1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10%와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단, HS CODE 9030.32.00은 관세율이 2%에서 0%로 변경됨). 그 밖에 중고 자본재의 수입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부로 금지되었으나, 대통령령 2646/12를 통해 직접 사용자의 국립산업기술원의 수입자 등록 절차 후 종류 별로 28%, 14%,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핸드폰, 데스크탑, 태블릿, 신발, 동물사료, 타이어, 오토바이, 가구, 세탁기 등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2021년말까지 점차 완화할 예정이었다.

또한 1981년 설립된 중남미통합연합(ALADI) 특혜관세에 따라 회원국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은 역내국가를 저개발/중개발/기타 국가로 분류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 정책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으며 수입 관련 주무부처는 생산부 대외무역차관실이다. 실무 담당기관은 세입청(AFIP: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이며,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세입청(AFIP)은 2005년 제정한 AFIP 훈령(resolution 1907/2005) 및 2009년 개정된 AFIP 훈령(resolution 2730/2009)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발표 및 시행 중이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하고 있다. 현행 수입규제 품목에는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난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훈령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솔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보건부 고시 4430/2009), △백열등(Law 26,473),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훈령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훈령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램 초과)(보건부 훈령 7/2009), 중고 자동차(대통령령 110/1999), 중고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대통령령 509/2007-Anexo X), 위험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물질(훈령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수입허가제

아르헨티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2022.10월 이후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이 수입허가 대상이 되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업별로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외환 구입을 자동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외환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3.1월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체결한 1,3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 중 350억 위안을 무역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할 경우 최소 대기 기간을 180일이 아닌 90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입기업의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 활성화된 위안화가 조기 소진되자 '23.10월 재차 470억 위안을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22.6월에는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80일 이후 외환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수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최소 180일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관세 외에도 통계세, 부가가치세, 추가부가세, 소득세, 영업세 등이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 기준으로 2.5%의 통계세가 부과되나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계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과되며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2.5%))에 대해 21% 또는 10.5% 및 추가 부가가치세 20% 또는 10%를 부과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2009년 가전제품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주요 가전제품에 부여되던 내국세 면제 혜택이 일부 품목(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홈시어터 세트, 내비게이션 장치, 자동응답기, 음향장치, 카메라, 영상재생장치, 라디오, 전기스토브,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및 여타 가정용 전열기)에 대해 폐지되고 20.48%의 내국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1%로 인상되었다. 다만, 2017년 2월 17일 대통령령(Decree 117/2017)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35% 관세 및 가전제품 부품에 대한 12%의 관세는 폐지되었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10월 17일 세관 훈령 91/2008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입물품의 FOB 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과세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유예 및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현금, 은행 담보 및 공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Canal Verde(녹색 채널: 즉시통과), Canal Naranja(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녹색 채널 및 주황색 채널의 경우, 수입 물품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된 후에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 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년 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020년 6월 기준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1개국 101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23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철강, 화학제품 등이 해당된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PET 제품, 에어컨 및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한 결과, 가격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9년 11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아연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년 8월 22일에 종료되었다. 2010년 2월 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2011년 7월 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년 12월 15일은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년 12월 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 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1월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7년 7월부터 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동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에 따라 2019년 1월 2일 반덤핑 조사가 재개되었으며, 2019년 11월 22일부터 5년간 52%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한국산 PET 제품 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의 경우 2012년 4월 에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0월 반덤핑 관세 17.61%가 부과되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에 따라 2018년 10월 24일 재조사에 착수, 2019년 10월 22일부터 3년간 17.61%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17년 4월 한국산 화학 제품(2종: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8년 10월 4일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디옥틸 프탈레이트 제품에 대해서는 5년간 6.73%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2022년 10월에는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재심을 시작하여, 2023년중 재차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년 8월 11일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년 9월 3일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년 1월 20일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년 6월 22일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년 6월 23일~ 2003년 6월 22일)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터 : 46.075%) 적용
- 2001년 5월 31일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달러/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년 6월 2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kg당 8.73 달러 부과 판정
 - 2001년 6월 21일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기로 최종 결정
 - 2002년 12월 5일 일회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년 1월 11일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3년 5월 28일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2년 11월 15일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년 8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년 9월 28일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연장
 - 2008년 4월 2일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년 5월 29일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8월 22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10년 2월 16일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년 12월 15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1년 7월 18일 에어컨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2년 12월 1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 제외
 - 2012년 4월 25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1월 4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9월 10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종료
 - 2014년 9월 24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판정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52% 반덤핑 관세 부과)
 - 2015년 2월 2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기(2년간 부과 유예)
 - 2016년 4월 6일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
 - 2017년 4월 4일 화학제품(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및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7년 7월 17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시작
- 2017년 10월 3일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판정(반덤핑 관세 17.61% 부과)
- 2017년 10월 26일 화학제품(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한국/멕시코산), 디옥틸 프탈레이트(한국/칠레산))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불과, 잠정관세 부과없이 조사 계속 진행할 것으로 통보
- 2018년 10월 4일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
- 2018년 10월 4일 디옥틸 프탈레이트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6.73%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8년 10월 24일 PET제품 반덤핑규제 기간 만료로 재조사 착수 (조사기간에 반덤핑관세 부과)
- 2019년 1월 2일 유입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규제 기간만료 및 재조사 후 2019년 11월 22일부터 5년간 52%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9년 10월 22일 PET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17.61%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22년 10월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절차 시작(재심 종료까지 반덤핑관세 유지)

세이프가드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이래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는 3건으로서, 2004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2006년 CDR (MERCOSUR 지역 제외 전지역), 2007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再개시)가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거쳐 2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04년부터 1년간 컬러 TV, 2007년에는 3년간 CD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 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 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2019. 10.3 개정)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11275호(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제22802호(Commercial Loyalty Act)에 의거하여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은 정부의 표준 인증기관으로서 규격 제정 및 규격에 따른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승인하고 인증하는 표준화 담당 기관이다.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는 표준 인정기관으로서 적합성평가기관(시험소, 인증기관)이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규격을 비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의 규격 및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 지침이 수시로 변하므로 규격 및 안전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생산부 산하 국립산업기술청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NTI는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 자체 검사소 보유, 품목에 따라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물(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1. 3 Phase, 2.4 wires, 50 Cycle, 220/380 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993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aw 24440)은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부착, 품질표시, 안전표시, 보증서의 첨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이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제정된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해결조정에 관한 법률(Law 26993)은 분쟁 발생시 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지역 표준화기구인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AMN은 IS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MERCOSUR 지역 전체 규격을 제정한다. 아르헨티나 표준인증기관인 IRAM도 역시 AMN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MERCOSUR에서 승인된 규제는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 등(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비관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시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양자 협약을 통해 MERCOSUR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당초 MERCOSUR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역내 통합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시장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갈등)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고, 회원국 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2년 11월 및 2003년 5월에 자동차산업 공동정책에 합의, 대외공동관세를 완제품에 대해 35%, 자동차 부품에 대해 14%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경우, 2016년 6월 자동차 교역협정 개정에 서명, 양국 간 자동차 수입과 수출의 비율인 1.5:1(일국의 자동차 수입량의 1.5배 넘지 않도록 규정)을 2019년 7월부터는 1.7:1로, 2020년 7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9년 9월 아르헨티나-브라질 자동차 교역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자동차분야 완전 교역자유화를 2029년 7월로 연기하였다. 다만, 현재 1.7:1인 수입과 수출의 비율을 매 2년 마다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완전자유화 이전에는 3:1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4월 콜롬비아와도 양국 간 비관세 자동차 교역 규모와 관련, 2017~2018년 연간 12,000대에서, 2018~2019년간 21,000대, 2019~2020년간 28,000대, 2020~2021년간 42,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그간 사실상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해온 '고급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를 전면 인하하였다. 인하 조치로 인해 공장도가격(수입차는 관세 포함 가격) 35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특별세를 부과, 8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세를 부과기로 하였다. 특별세는 국내산 차량과 수입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세 대상 차량은 대부분 관세(35%)를 부담하는 수입 차량이며,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차량중에는 토요다 SM4 픽업 차량과 벤츠 Vito 픽업 차량만 해당된다.

자동차 부품

아르헨티나는 2016년 8월 2일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Law 27263)을 발효 하면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사업 부품에 대한 간접세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은 일정 한도의 현지 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tax credit)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생산 부품 20%이상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치의 4%, 30%이상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10%, 40%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15%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국산 차량 요건이 되기 위해서 상용차의 경우 현지 생산 자동차 부품의 30%이상, 경차의 경우 25%이상, 차량엔진의 경우 15%이상을 현지부품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대해, 2016년 11월 6일 및 2017년 9월 22일 개최된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위원회(TRIMs)에서 EU, 미국, 멕시코 등 일부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의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이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수입 대체를 촉진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배함을 지적하였고, 아르헨티나에 국내산 부품비율 지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식품·의료품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농식품 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보조금 지원 제도는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은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 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미약한 수준이며, 2019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Notorious Markets Report)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년 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년 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각종 위조 물품 및 온라인 상영물 등의 불법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 장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 소유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 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對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지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對아르헨티나 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 다국적 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진출제한 분야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투자 금지 산업은 없으나, 방위산업, 공공서비스, 우편 및 전기, 가스, 교통 및 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분야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 제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지사 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에 발효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에 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 승용차 : 30%까지
- 경차 및 트럭 : 25%까지
- 차량 엔진 : 15%

200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업투자의 경우 관련법을 각 주가 규정하는바, 주는 각 투자기업마다 개별 합의를 거쳐 국산의무화 및 국내고용 비율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국산의무화율은 약 70% 내외이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개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제도 변경의 우려가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진흥을 위해 2016년 2월에는 KOTRA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투자청(Agencia Argentina Inversiones y Comercial Internacional)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 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전격적으로 외환거래 통제를 해제하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였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달러화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개인의 달러 구매를 월 200달러로 제한하

고, △수출 외화대금의 경우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선적 허가 후 180일 이내(1차 상품의 경우 15일 이내) 청산 의무 부과, △수입대금 송부 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외환통제 조치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국외투자기업의 영업이익 해외 반출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외화로 수령한 수출대금은 의무적으로 공식환율로 전액 환전되어야 한다. 대두 등 일부 수출품목에 한해서만 특혜제도를 적용하여 20~25%를 외화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간 단기 체류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2018년 11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활동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쟁정책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법률 제25156호와 대통령령Decree 1019/1999가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개인정보보호)

아르헨티나는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5,326호를 제정하여 파일, 데이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공정보접근청(Agencia de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o)을 설치하였다.

동법 12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불가능한 국가 간 또는 다자·초국가기관 간 개인정보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단, △국제사법을 위한 목적, △의료 또는 전염병 연구 목적, △합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금융 거래 목적, △조직범죄·테러·마약밀매 등 범죄 대응 및 방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2023 외국의 통상환경

- 아메리카 -

◆ 인 쇄 | 2023년 12월

◆ 발 행 | 2023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